

2011 간추린 改正稅法

2012

企劃財政部

머 리 말

지난해 우리 경제는 고용·성장 등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서민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유럽재정위기 여파, 물가상승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세법개정은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비전하에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국민의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및 고용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기업간의 산학연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를 서비스분야까지 대폭 확대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용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을 목표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근로장려세제(ELTC)를 대폭 확대하고, 주거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금 대상 총소득기준과 최대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였습니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및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전·월세 가격안정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셋째,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등 공정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였습니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체납 국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징수업무 중 일부를 국세청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법령화하는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절차를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과세하고,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과표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대폭 연장하였습니다.

넷째, “조세체계 합리화” 측면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며,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 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조세조약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각 세법별로 다르게 규정되었던 특수관계인 범위를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1 간추린 개정세법」은 앞에서 설명한 주요 내용이 포함된 개정 법률(2011년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통과)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일반 국민, 기업, 세무사·공인 회계사 및 국세 공무원 등이 새롭게 개정된 세법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2년 7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백은찬

目 次

[소득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I. 총괄 · 사업소득	7
1.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	7
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8
3. 관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	9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10
5. 중간예납 분할납부에 대한 고지서 발급기간 조정	11
6. 신고납부 기한 조정	12
7.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추정근거 마련	13
8.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방법 변경	14
9.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및 발급기한 규정	15
10.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연장	16
11.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 개정	17
12.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범위 조정	18
1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 등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 배제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	19
14.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 제외	20
1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	21
1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통일	22
17.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가액 산정방법 개선	23
18. 추가신고납부 보완	24
II. 근로소득	25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25
2.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	26
3.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27

4.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28
5.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29
6.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	30
7.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	31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32
9.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33
1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	34
11.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35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	36
1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37
14.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금액 명확화	38

Ⅲ. 금융소득 39

1.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39
2. 신주인수권부사채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40
3.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41
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 명확화	42
5.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적용기한 연장	43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44
7.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45
8.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	46
9.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 확대	47
10. 녹색저축 투자관련 선대출·후조달 방식 신설	48

Ⅳ. 퇴직소득 49

1.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49
2.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범위 정비	50
3.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	51
4.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금 환급절차 보완	52

V. 근로장려세제	53
1.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확대	53
2. 일부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54
3.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중 주택요건 완화 및 법정화	55
4.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조정 및 확대	56
5.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차등화	57
6.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거 신설	58
7. 전세금에 대한 재산평가 방법 보완	59

[법인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I. 기업경쟁력 강화	67
가.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67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67
나.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68
1.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	68
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	69
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	70
4.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	71
5.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	72
6.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73
다. 연결납세제도 보완	74
1.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	74
2.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75
3. 연결납세방식 적용 대상 확대	76
4.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강화	77
5. 연결집단의 최저한세 계산방법 명확화	78
6. 연결법인의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보완	79

7.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80
8.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 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방법 신설	81
라.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	82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82
2.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83
3.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	84
4.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85
마. 기업구조조정 지원	86
1.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	86
2.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	87
3.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88
4.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개선	89
5.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주식배정 요건 개선	91
6. 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개선	92
7.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	93
8.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방법 신설	94
9.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명확화	95
10. 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실현 규정 보완	96
11.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명확화	97
12. 적격합병·분할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명확화	98
Ⅱ. 기부금·비영리법인 세제 개선	99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99
2.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	100
3.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01
4.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	102
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조정	103
6.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	104
7.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106

8.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등	107
9.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108
Ⅲ.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원관리 강화	109
1.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	109
2.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110
3. 주주등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 개선 등	111
4.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 개선	112
5.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113
Ⅳ. 기타 제도보완(법인세법 관련)	114
1.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114
2.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	115
3. 개발완료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	116
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	117
5.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118
6.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119
7.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정시 이자상당액 경감	120
8.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	121
9.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	122
10.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123
11.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	124
12. 청산소득 중간신고제도 보완	125
13.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개선	126
14. 특수관계자에 자금대여시 시가인 이자율 계산방법 개선	127
15.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규정 보완	128
16. 분양계약 해제시 손익 귀속시기 명확화	129
17. 청산소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폐지	130

1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조정	131
19. 항만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추가	132
20. 차액결제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133
21.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134
22. 지배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136
23. 정형화된 유가증권 양도의 손익귀속시기 명확화	137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 명확화	138
2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명확화	139
26. 일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명확화	140
27. 추계과세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141
28.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지주회사의 판정시기 명확화	143
29. 농협 구조조정에 따른 조문정리	144

V. 기타 제도보완(조특법 관련) 145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145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제도 절차 보완	146
3.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147
4.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의 사후관리 기간 완화	148
5.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49
6.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지원확대	150
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151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확대	152
9.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폐지	153
10.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 종료	154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155
1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157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I. 일자리 창출 지원	165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165
2.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공제한도 우대 적용	166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167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168
5.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169
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와 순증인원의 계산방법	170
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상당액	172
8.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명확화	173
9.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공제세액 계산방법 보완	174
10.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세제지원	175
11.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관련 사전취업계약 및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176
II. 지속성장 지원	177
1.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177
2.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 · 재위탁 R&D 추가	178
3.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179
4.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 명확화	180
5. 증가분 방식 R&D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181
6. 위탁 · 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	182
7. R&D 세액공제 대상 연구 · 인력개발비 조정	183
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시설 조정	184

9.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185
10.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86
1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 ...	187

III. 지역발전 지원 188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문정리	188
2. R&D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확대	189
3.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지원확대	190
4.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 업종 기준의 법령 명확화	191
5.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등 감면대상 제외업종 중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명확화	192
6.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193
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194
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계산방법 등 규정	195
9. 과밀억제권역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197
10.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	198
11.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급여총액 적용방법 명확화	199
12.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에 대한 규정 명확화	200
13.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01
14.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202

IV. 기타 지원제도 204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204
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205
3.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범위 개선	206
4.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제외	207
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 조정	208
6.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	209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210

8.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211
9.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 특례	212
10. 장학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13
1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214
12.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범위 확대	215
1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는 금전대여의 범위	216

[국제조세분야]

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가. 국제-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1.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제-관세 당국간 상호조정 근거 마련	221
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절차 신설	222
3.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제-관세 당국간 과세정보 교환	224
4. 국제-관세 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마련	225
5.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226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비

1.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227
2.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제도 및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	228
3.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 상향 조정	229
4.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	230
5.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231

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개선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	232
2.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완화	233
3. 특정외국법인 지분 간접 보유시 익금불산입 기간제한 폐지	235

라. 이전가격세제 관련 규정 보완	236
1. 이전가격 관련 신고자료 제출기한 연장허용	236
2.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 관련 반환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 법령화	237
3. 이전가격 관련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규정 명확화	238
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공표	239
바.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240
사.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상황 보고서식 신설	241
아. 금융정보 제공요구 방법 개선 및 조문정리	242
자. 과소자본세제 관련 인정배당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명확화	244
II.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245
1.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245
2.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	246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명확화	248
4. 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252
5.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양도 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253
6. 자료제출 대상 해외현지법인 범위 확대	254
7. 외화표시어음 등의 이자면세 대상 금융기관 명칭변경	255
8. 기타 인용조문정리(법인세법 시행령)	256
9. 기타 인용조문정리(소득세법 시행령)	258
III.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관련	259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일몰연장	259
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	260
3. 증자의 조세감면 개선	262
4. 조세감면 한도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의 합리적 조정	266
5.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등 판정기준 보완	267

[양도소득세분야]

I. 중산·서민층,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273
1.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273
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74
3.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시 비과세제도 보완	275
4.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	276
5.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	277
6.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간(2년) 적용예외 경우 추가	278
7.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과세특례 보완	279
8.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시 재촌·경작 개념 명확화	280
9.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명확화	281
10. 대토농지 경작기간 계산 방법 명확화	282
1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283
12.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84
13.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택지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85
II. 부동산 거래활성화	286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86
2.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287
3.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88
III.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290
1.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290
2.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	291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292
4.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 비과세 의무보유기간 완화	293
5.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294
6.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295
7.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96

IV.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297
1.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대상에서 ‘해외주식’ 제외	297
2. 「특별법」에 의한 수용시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사업용 인정범위 조정	298
3. 농지의 환지처분시, 양도세 감면시 예외규정 신설	299
4.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세제지원	300
5.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의 매수청구·수용시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	301
V. 기타 제도개선	302
1.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	302
2. 환지처분에 입체환지처분 개념 도입	303
3.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기채가액 결정근거 마련	304
4.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	305
5. 자경농지, 농지대토 및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 등의 거주지 요건 명확화	306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1.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제도 신설	311
2. 가업상속공제 확대	316
3.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317
4. 영농상속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범위 합리화	318
5.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319
6.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320
7.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개선	321
8.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개선	322
9.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규정 신설	323

[종합부동산세법]

1. 지방소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폐지	329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330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331
4.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보완	332
5.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확대	333
6.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식 명확화	334
7.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중부세 합산 배제 ...	335
8.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중부세 합산 배제	336
9.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337

[부가가치세 분야]

I. 과·면세 및 영세율 범위 조정	345
1.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345
2.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46
3.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347
4. 채수입 재화 VAT 면세 범위 보완	348
5.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에 사업양수 재화가 포함됨을 명확화	349
6.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면세	350
7.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51
8.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VAT 면제	352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확대	353
10. 장애인용 보장구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354
11. 조달청 민관비축공동사업에 대한 VAT 지원	355
12. VAT 면제되는 금융용역 범위 명확화	357
13. 군 골프연습장 등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358
14.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공동배달사업 면세 종료	359
II.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의 합리화	360
1.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360
2. 예정신고·납부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허용	361

3. 금전외의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 보완	362
4.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363
5.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	364
6. 매출할인액 정의규정 정비	365
7. 2개 과세기간 이상 용역대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규정 명확화 ...	366
8.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 조정	367
III. 농·어민 및 중소기업인 등 지원	368
1.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368
2.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369
3.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371
4.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 ..	372
5.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일몰 삭제	373
6.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374
7.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	375
8.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376
9.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범위 조정 등	377
10.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378
11. 의제매입세액 공제관련 농어민 범위 보완	379
IV.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도 보완	380
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380
2.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381
3.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조정	382
4.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매입세액 공제범위 명확화	383
5. 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적 인정	384
6. 공인인증서 발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제도 보완	385
7. 영수증 발급대상에 주거용 건물 수리업 등 추가	386
8. 영수증 발급 대상(시행령) 업종 보완	387
9. 집단에너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편의 지원	388

V. 납세편의 제고 및 기타 과세제도 보완	389
1. 매입세액 불공제 자동차 범위 조정	389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 범위 조정	390
3.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	391
4.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 관리제도 보완	392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가산세 명확화	393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	394
7.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95
8.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간 연장	396
9. 외화획득용역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정비	397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일몰 연장	398

[개별소비세]

1.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403
2.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404
3.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405
4.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무기준 신설	406
5.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명확화	407
6. 폐업신고, 공제·환급신청기한 조정 및 폐업신고 사유 추가	408
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 확대 및 재경정 사유 신설	409
8. 추계결정사유 명확화	410
9.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감면한도 설정	411
10. 조건부면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기한 조정	412
11.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개선	413
12. 미납세반출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규정 보완	415
13. 저유소의 제조행위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신설	416
14. 저유소에서 발생한 ‘혼유등’에 대해 제조자등이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418
15.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에 대해 2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유예	420

16. 수탁가공의 요건 명확화	421
17.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명확화	422
18.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을 미납세 반출자가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423
19.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25
20. 프로판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	426

[교통·에너지·환경세]

1. 경매·공매·제조폐지 등, 공제·환급신청 등의 기한 조정	431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 확대 및 재경정 사유 신설	432
3. 추계결정사유 명확화	433
4. 조건부면세 반입 후 정해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434
5. 저유소의 제조행위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신설	435
6.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437
7. 바이오디젤 면세 적용기간 종료	438

[주 세]

1. 주류 제조·판매업면허 제도 개선	443
2.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설치허가 정지처분 기준 조정	444
3.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명확화	445
4.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조정	446
5.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대상 확대	447
6. 주류수입업면허 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	448
7.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 조정	449

[농어촌특별세]

1. 연결납세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방법 개선	455
2.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456

3.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457
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458
5. 「지특법」 개정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대상 조정	459
6.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461

[세무사법]

1.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폐지	467
2.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조정	468
3.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	469

[국세기본법]

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475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479
3. 과세권 강화	496

[국세징수법]

I.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511
1.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근거 마련	511
2. 위탁 방법	512
3. 위탁 대상 체납액 범위	513
4. 위탁 수수료	514
II. 기타사항	516
1. 시·군·구 위탁징수 규정 삭제	516
2. 고지 유예 및 징수 유예 신청에 대한 통지 기간·기각 통지 신설	517
3.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권한 신설	518
4. 체납처분 유예 제도 개선	519
5. 결손처분 규정 삭제	520

[교육세]

1.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산정시 파생상품 등의 손익통산범위 개선 525

[조세범처벌절차법]

1. 조세범 처벌 관련 정의 규정 531
2. 조세범척사건의 관할 532
3. 조세범척조사심의위원회 법제화 534
4. 조세범척조사 대상 선정기준 537
5.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539
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 540
7. 조세범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542
8. 기타 개정사항 543

[관 세]

1. 독과점 품목, 서민밀집 품목 등에 대해 기본관세율 인하 549
2. 관세평가시 납세의무자 의견제출기회 부여 550
3. 과세가격 사전심사 관련 가산세 면제 551
4.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개선 552
5.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553
6. 납세자권리현장 교부대상 확대 559
7. 관세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 신설 560
8. 관세청장에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 561
9. 과세전통지에 대한 조기경정 신청 허용 562
10. 관세 부과제척기간 보완 563
11. 관세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신설 564
12. 관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 인하 565
13. 등록 취소 등 불이익처분시 청문 확대 566
14. 수출입신고필증 미보관시 벌칙 완화 567
15. 잠정가격 신고시 가산금 면제 568

16.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정비	569
17.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570
18. 국제대회 관련 수입물품 관세경감 신설	571
19.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조직위에 출품물 무상양도시 관세 면제	572
20.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허용	573
21.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정비	574
22. 해외 입출국시 국제공항 환승 절차 간소화	575
23. 관세 신고납부세액 과부족시 보정제도 개선	576
24. 감면규정 오적용 등으로 과소신고시 이자상당 가산세 부과	577
25.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여	578
26. 미국산 원산지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579
27.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자 긴급관세조치	580
28. 미국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581
29. 관세법 제68조의 특별긴급관세 부과특례	582
30. 원산지 등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	583
31.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화물 특별 통관	584
32. 원산지증명제도 보완	585
3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586
34. 원산지증명서 서식	587
35. 원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범위 확대	588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I. 총괄 · 사업소득

1.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
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3. 관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5. 중간예납 분할납부에 대한 고지서 발급기간 조정
6. 신고납부 기한 조정
7.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추정근거 마련
8.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방법 변경
9.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및 발급기한 규정
10.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연장
11.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 개정
12.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범위 조정
1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 등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 배제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
14.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 제외
1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
1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통일
17.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가액 산정방법 개선
18. 추가신고납부 보완

Ⅱ. 근로소득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2.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
3.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4.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5.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6.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
7.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9.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1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
11.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
1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14.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금액 명확화

Ⅲ. 금융소득

1.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
2. 신주인수권부사채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3.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 명확화
5.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적용기한 연장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7.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8.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

9.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 확대
10. 녹색저축 투자관련 선대출·후조달 방식 신설

IV. 퇴직소득

1.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2.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범위 정비
3.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
4.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금 환급절차 보완

V.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확대
2. 일부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3.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중 주택요건 완화 및 법정화
4.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조정 및 확대
5.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차등화
6.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거 신설
7. 전세금에 대한 재산평가 방법 보완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제11146호(2012.1.1.)
- 대통령령 : 제23588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65호(2012.2.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제11133호(2011.12.31.)
- 대통령령 : 제23590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64호(2012.2.28.)

I. 총괄 · 사업소득

1.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소득세법 §2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세보증금 과세 ○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과세방법) 3억원 초과분 60%의 이자상당액 과세	 ○ 국민주택 규모(85m ²) 이하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13.12.31.까지 한시 적용) ○ (좌 등)

(2) 개정이유

- 전세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를 3년간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2.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령 §9①, 별표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① 농가부업소득 범위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래의 소득 ② 부업 가축 규모 - 소·젖소 30마리 - 돼지 500마리 ③ 부업 소득금액 - ② 이외의 소득으로서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	□ 비과세 범위 확대 ① 어업소득 추가 : 축산·양어 등 → 어로어업 (연근해·내수면 어업) 추가 ② 부업 가축 규모 확대 - 소·젖소 30 → 50마리 - 돼지 500 → 700마리 ③ 부업 소득금액 인상 - 연 1,800 → 연 2,000만원

(2) 개정이유

-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 (비과세 소득 대상 추가)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에 대해 비과세
 - ※ 어업 :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 어업, 원양어업), 양식어업(현재 비과세 대상)
 - (비과세 농가부업 가축 규모) 한·미 FTA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감안,
소·젖소, 돼지의 공제 두수를 확대
 - (비과세 농가부업 소득금액) 현행 비과세 소득금액을 1,8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200만원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관세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소득령 §13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3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15억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등: 7.5억원 <신 설>	(좌 동) ○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기준금액은 7.5억원으로 일원화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통관업 등

(2) 개정이유

-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을 7.5억원으로 일원화
-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 (소득령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득세법 §3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1년 ○ 지정기부금: 5년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법정기부금: 3년 ○ (좌 동)

(2) 개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3년으로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중간예납 분할납부에 대한 고지서 발급기간 조정(소득세법 §65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간예납 분할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급기간 ○ 12.16일 ~ 12.31일	☐ 납세고지서 발급기간 조정 ○ 다음해 1.1일 ~ 1.15일

(2) 개정이유

- 중간예납 분할납부 기한이 45일에서 60일로 연장('09년 개정) 됨에 따라 중간예납 분할납부 세액에 대한 고지서 발급기간을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고지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신고납부 기한 조정(소득세법 §7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2) 개정이유

-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월 중간에 도래하여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될 우려가 있고,
 -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신고기한으로 하고 있으므로('08년 개정*) 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이에 맞추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
 -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증법 §67)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 부터 적용

7.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추정근거 마련 (소득세법 §85의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발생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 ○ 추정(환급세액과 이자 상당액) -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신 설>	- 중소기업이 아닌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2) 개정이유

- 결손금 소급공제로 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업자가 나중에 대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관련 추정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 차단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8.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방법 변경 (소득세법 §160의5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용계좌 변경·추가신고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연간 2회)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신고(연간 1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만 신고 - 과·면세사업자 구분 없이 연간 1회로 통일

(2) 개정이유

- 면세사업자처럼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1년에 한번 사업용계좌 변경·추가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및 발급기한 규정(소득령 §210의3⑩,⑪)

<개정배경(소득법 §162의3⑦)>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이외의 현금거래시 사업자가 자진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제도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 <신 설>	○ (좌 동) ○ 의무 발급 대상 이외의 현금 거래* 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발급 가능 * 전문직사업자, 음식점·장례식장 등 의무발급 업종: 30만원 미만 거래 * 의무 발급 업종 이외의 업종: 모든 현금거래
☐ 사업자는 거래 당일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함	☐ 발급기한 연장 (거래 당일 → 5일 이내)

(2)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사업자의 자진발급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진발급을 유도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사업자가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기한 연장(소득령 §210의3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연장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2)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기회를 확대하고 과표양성화 효과 증대를 위하여 신고기한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사업자가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 개정(소득법 §162의3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및 허위 발급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음	□ 국세청장의 명령사항에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기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추가

(2) 개정이유

- 국세청장의 명령사항에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단속상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 국세청 고시(제2011-9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부터 적용

12.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범위 조정 (조특령 §121의3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범위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함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 결제건수 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함	○ (좌 동) ○ (좌 동) - 가산한 → 가감한

(2)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기준금액(건당 22원)에서 원가변동요인을 감안하여 가산할 수는 있으나,
 - 원가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차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공제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미이행 등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감면
배제시 해당 사업장만 감면 배제 (조특법 §128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특법상 각종 감면 적용 배제 ○ 사업용계좌 미신고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사업자가 발급 거부 및 허위 발급한 경우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만 감면을 배제 한다는 점 명시 (좌 동)

(2) 개정이유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배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불이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 제외
(소득령 §84④)

<법 개정내용(소득법 §35②)>

- ☐ 특정 국외지역 지출,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재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서류 수취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만원 초과 접대비(경조사비 20만원)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 특정 국외지역 지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 (좌 동)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추가 - 송금명세서 제출 의무 부여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

(2) 개정이유

- 농·어민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

1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명확화(소득령 §5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광업권·어업권 등 양도·대여 관련 기타소득: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상여금 등): 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신 설> ○ 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좌 동)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을 대체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 ○ (좌 동)

(2) 개정이유

-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될 경우
 - 수입시기를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로 보는 예규, 심판 결정 등을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동일 (소득법 §163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장현황신고 및 매출·매입 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 다음 연도 2.10일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 ○ 다음 연도 1.31일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 연장 ○ 다음 연도 2.10일

(2) 개정이유

- 지난해 사업장현황신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 연도 1.31일 → 2.10일로 연장한 점을 감안하여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도 이에 맞추어 다음연도 2.10일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7.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가액 산정방법 개선
(소득령 §129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가액 ○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기준시가	○ (좌 동) ○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

(2) 개정이유

- 토지 등 매매차익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취지에 맞게 현행 규정을 보완
-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경정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 (소득세법 §69④)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토지 등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18. 추가신고납부 보완 (소득령 §13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가신고납부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특정사정 발생시 일정기한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확정신고한 것으로 간주 ○ 법인세 관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추후 결정·경정 등을 통해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 가능 <신 설>	○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 판결 등으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신고 납부 가능

(2) 개정이유

- 현재 과세기간 경과 후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가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신고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근거 규정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부터 적용

Ⅱ. 근로소득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소득법 §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1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좌 동)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33%	8,800만원 초과	35%
			3억원 초과	38%

(2) 개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환원(소득법 §47, §5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율 축소('12년부터)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td>500만원 이하</td><td>80%</td></tr> <tr><td>500~1,500만원 이하</td><td>50%</td></tr> <tr><td>1,500~3,000만원 이하</td><td>15%</td></tr> <tr><td>3,000~4,500만원 이하</td><td>10%</td></tr> <tr><td>4,500~8,000만원 이하</td><td>5%</td></tr> <tr><td>8,000~10,000만원 이하('12년부터)</td><td>3%</td></tr> <tr><td>10,000만원 초과('12년부터)</td><td>1%</td></tr> </tbody> </table>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8,000만원 이하	5%	8,000~10,000만원 이하('12년부터)	3%	10,000만원 초과('12년부터)	1%	☐ 공제율 축소 환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td>500만원 이하</td><td>80%</td></tr> <tr><td>500~1,500만원 이하</td><td>50%</td></tr> <tr><td>1,500~3,000만원 이하</td><td>15%</td></tr> <tr><td>3,000~4,500만원 이하</td><td>10%</td></tr> <tr><td>4,500만원 초과</td><td>5%</td></tr> </tbody> </table>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8,000만원 이하	5%																												
8,000~10,000만원 이하('12년부터)	3%																												
10,000만원 초과('12년부터)	1%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공제 한도 : 50만원 * 공제율: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초과) 30% - 공제 한도 축소('12년부터)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th><th>공제 한도</th></tr> </thead> <tbody> <tr><td>8,000만원 이하</td><td>50만원</td></tr> <tr><td>8,000~8,500만원 이하</td><td>40만원</td></tr> <tr><td>8,500~9,000만원 이하</td><td>30만원</td></tr> <tr><td>9,000~9,500만원 이하</td><td>20만원</td></tr> <tr><td>9,500~10,000만원 이하</td><td>10만원</td></tr> <tr><td>10,000만원 초과</td><td>0원</td></tr> </tbody> </table>	총급여	공제 한도	8,000만원 이하	50만원	8,000~8,500만원 이하	40만원	8,500~9,000만원 이하	30만원	9,000~9,500만원 이하	20만원	9,500~10,000만원 이하	10만원	10,000만원 초과	0원	☐ 공제 한도 축소 환원 ○ (좌 동) <삭 제>														
총급여	공제 한도																												
8,000만원 이하	50만원																												
8,000~8,500만원 이하	40만원																												
8,500~9,000만원 이하	30만원																												
9,000~9,500만원 이하	20만원																												
9,500~10,000만원 이하	10만원																												
10,000만원 초과	0원																												

(2) 개정이유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12년부터 35% → 33%) 계획 철회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던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축소방안 환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소득령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활동비 비과세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추 가>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 등	☐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좌 동) -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 담 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좌 동)

(2)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52, 소득령 §112)

(1)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 지급액 및 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무주택자인 근로자 ○ 공제금액 : 월세 지급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 적용대상 확대 ○ 적용요건 - 총급여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삭 제> - (좌 동) - (좌 동) (좌 동)

(2) 개정이유

- 소득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 또는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소득령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외항선원 : 월 150만원	☐ 비과세한도 확대 ☐ 월 150만원 → 200만원

(2)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득령 §11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 대상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 있는 자* *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학생, 외국에서 자녀와 1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 공제한도: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국내와 동일) ○ 대상기관: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에 해당하는 국외소재 교육기관	☐ 적용대상 확대 ○ 대상자 : - 고등학생·대학생 : 유학자격 요건 삭제 - 취학전아동, 초·중등학생 : 현행과 같이 유학자격 있는 자에 한함 ○ (좌 동)

(2) 개정이유

-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되,
 -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학생 등에 대해서는 현행 ‘유학자격’ 요건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소득령 §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업종)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공장·광산 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등 ○ (비과세한도) 연 240만원이하	☐ 적용요건 추가 ○ (적용대상) - (급여) 직전년도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 - (좌 동) ○ (좌 동)

(2) 개정이유

-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 부정기급여 등을 통해 고소득자가 수혜대상으로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용근로자에 대한 적용대상 급여요건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소득법 §52, 소득령 §1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이상 : 연 1,500만원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이상 : · (연 1,500만원) ①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 단, 5년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② 차입금의 70%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 (연 500만원) 기타 대출

(2) 개정이유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서민층의 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소득법 §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 복지 시설 등 <추 가> ○ 공제한도 : 없음	☐ 대상기관 확대 ○ 대상기관 - (좌 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동법 시행(’12.8.5.)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 포함 ○ (좌 동)

(2) 개정이유

- 장애아동 재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조특법 §8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40% 소득공제 - 공제한도: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 공제	○ (좌 동) - 공제한도: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年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2) 개정이유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조특법 §3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현역·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 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의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 - 제외 : 최대출자자와 직계존비속, 임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 ○ 지원내용 : 취업후 근로소득세 3년간 100% 감면* * 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할 필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적용기한 : '13.12.31(2년)

(2) 개정이유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2013.12.31. 취업하는 자에 대해 적용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정(조특법 §12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문턱 : 총급여의 25% ☐ 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 직불(체크)·선불카드: 25% <신 설>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공제문턱을 채움 - 공제문턱 초과액 × 체크카드 사용액/전체사용액 × 공제율 25% - 공제문턱 초과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전체사용액 × 공제율 20% ☐ 적용기한 : '11.12.31.까지	☐ (좌 동) ☐ 공제율 확대 ○ (좌 동) ○ 25% → 30% ○ 전통시장* 사용분: 30% *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은 제외 ☐ (좌 동) ○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 계산방식 변경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 문턱을 채움 ☐ 적용기한 : '14.12.31.까지(3년 연장)

(2) 개정이유

-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경감
 - 공제금액 계산방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 명확화(조특령 §12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 아파트관리비·시청료 등 ○ 고속도로통행료	☐ 제외대상 명확화 ○ (좌 동) ○ 도로통행료

(2) 개정이유

- 고속도로통행료를 포함하여 도로통행료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4.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금액 명확화 (소득법 §52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이월공제 금액 ○ 사업자: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이월가능 기간까지 필요경비 산입 가능 ○ 근로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 (좌 동) ○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다는 점 명시

(2) 개정이유

-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기부금 이월공제와 동일하게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한 당초 법 개정취지('09.)에 맞추어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Ⅲ. 금융소득

1.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소득법 §16·§17, 소득령 §26·§2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 과세 근거 신설 ○ 동일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과세 -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결합: 이자소득 -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결합: 배당소득

(2) 개정이유

-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신주인수권부사채 원천징수방법 명확화 (소득법 §4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 ○ 적용대상 : 채권 등 이자 · 할인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포함	☐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 ○ (좌 동)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이 포함됨을 명확화

(2) 개정이유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 적용을 법령에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 투자 등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16, 조특령 §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투조합 등 소득공제 ○ 공제대상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 출자금액의 1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 30% ○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회수시 추정 ○ 2012.12.31.까지 출자분	☐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 (좌 동) ○ 10% → 2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30% → 40% ○ 5년 → 3년 ○ (좌 동)

(2) 개정이유

-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 명확화

(조특법 §68④, 조특령 §65①·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소득세 과세특례 ☐ 농업소득 배당 : 비과세 ☐ 농업외소득 배당 : 14%분리과세 -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에 한정 (조특령§65①②에서 규정) * 축산업·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 적용기한: '12.12.31까지	☐ 14%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 ☐ (좌 동)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 배당 : 14% 분리과세 } 기타 배당 : 일반 과세 ☐ (좌 동)

(2) 개정이유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87의2·§88의2·§8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대상) 농어민 ○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 (기한) '11.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14.12.31.까지 가입
☐ 생계형저축 비과세 ○ (대상)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 (내용)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기한) '11.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14.12.31.까지 가입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 (대상) 20세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 (내용) 저축원금 1천만원(20세 이상) 또는 3천만원(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이하로 이자·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 (기한) '11.12.31.까지 가입	☐ 3년간 일몰 연장 ○ (좌 동) ○ (좌 동) ○ (기한) '14.12.31.까지 가입

(2) 개정이유

- 취약계층 등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87의6, 조특령 §81의5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 (대상)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Fund),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REITs) ○ (요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주택 ○ (지원) 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혜택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 5%, 1억원 초과 14% 분리과세 ○ (기한) '14.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

(2) 개정이유

-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5.19.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7.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서울 : 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분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 : '11.12.31. 지급분	☐ 적용기한 3년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 '14.12.31. 지급분

(2) 개정이유

- (자원의 해외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역량 제고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민간자금의 적극적인 활용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8.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조특법부칙 §7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 '10.1.1~'11.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 확대 ○ '10.1.1~'12.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2) 개정이유

- 해외주식시장 불황이 지속되면서 과거 해외주식형펀드의 손실분('07.6~'09.12)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상계가능 펀드이익의 범위를 1년간 추가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 확대(조특령§92의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녹색저축 세제지원 ○ (지원대상) 조달한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등에 투자하는 녹색저축 ○ (투자대상) 녹색전문기업 채권,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 녹색사업관련 출자지분 등 ○ (세제지원) 녹색저축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12.12.31.까지 가입	☐ 녹색저축 조달자금의 투자대상 확대 ○ (좌 동) ○ (투자대상) 녹색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직접대출, 녹색전문기업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 포함 ○ (좌 동) ○ (좌 동)

(2) 개정이유

-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해 녹색저축의 조기출시를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6.3. 이후 최초로 투자되는 분부터 적용

10. 녹색저축 투자관련 선대출·후조달 방식 신설(조특규칙 §4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녹색저축 관련 금융기관의 선대출·후조달 신설 ○ 금융회사가 녹색저축을 통한 자금 조성 전에 일반 자금으로 녹색전문기업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녹색산업 관련 투자로 인정

(2) 개정이유

- 금융기관의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8.3. 이후 최초로 투자되는 분부터 적용

IV. 퇴직소득

1.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소득법§22③, 소득영§2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① 퇴직소득의 범위 ①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 ② 명예퇴직수당 ③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④ 국민연금 중 일시금 ⑤ 공적연금에 따른 일시금 ⑥ ①~⑤와 유사한 일시금 ②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①~⑥)의 합계 <단서 신설>	① 퇴직소득의 범위 ① ~ ⑥ (좌 동) ②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좌 동) ○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①의 금액이 ②의 산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임원의 범위: 법인영§20①4 준용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의 범위 퇴직소득금액 - '11.12.31. 퇴직시 퇴직소득 해당금액 ② 임원퇴직소득 한도 $\text{평균급여}^* \times 1/10 \times \text{'12년 이후 근속연수} \times 3$ * 퇴직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2) 개정이유

-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에 비례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도한 퇴직금 적립·지급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2.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소득 범위 정비(소득령 §42의2①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원칙]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소득세 비과세 [특례] 일용근로자에서 상시근로자로 전환시 해당 사업주가 부담한 공제부금은 퇴직 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 과세	(좌 동) <삭 제>

(2) 개정이유

- 2002년 「건설근로자고용법」 제17조가 삭제됨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문정리 사항

3.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소득령 §203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 (소영 §203⑧) ☐ 퇴직소득 환급자는 다음해 3.10일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내역을 제출 ※ 미제출가산세 ⇒ 없음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 삭제
☐ 퇴직소득지급명세서(법§164①) ☐ 퇴직소득 지급자는 다음해 3.10일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내역을 제출 미제출가산세 = 2%(지연제출1%) × 미제출 · 불명분 지급액	☐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 명세서에 통합

(2) 개정이유

-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지급명세서와 통합하여 과세이연명세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달성하고, 제출 서식도 간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4. 퇴직소득 과세이연시 퇴직금 환급절차 보완(소득령 §20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세 환급절차 ○ 퇴직자가 개인퇴직계좌(IRA) 개설 후 환급 신청 -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는 국세청에 환급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

(2) 개정이유

- 개인퇴직계좌(IRA)신고서 제출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절차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 퇴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V.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법§10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수급 신청자 ○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 <신 설>	☐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확대 ○ (좌 동) ○ 18세미만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자

(2) 개정이유

-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대상을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2. 일부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조특법 부칙§45, 조특영§100의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시기 ○ '14.1.1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분부터	☐ 일부사업소득자*에 대해 '12.1.1부터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 ○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소령§137①)의 범위 준용

(2) 개정이유

- 저소득층의 소득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일부사업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조기자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3.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중 주택요건 완화 및 법정화
(조특법 §100의3③, 조특영§100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세제 주택요건 (① 또는 ②) ① 무주택자 ②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1주택자	☐ 근로장려세제 주택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1주택자

(2) 개정이유

- 주택요건을 완화하여 수급대상을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4.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및 지급금액 조정 및 확대(조특법 §10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및 최대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개선		
			① 일반적인 경우 -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	지급금액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	지급금액
1명 이상	1,700만원 미만	120만원	무자녀	1,300만원	70만원
			1인	1,700만원	140만원
			2인	2,100만원	170만원
			3인 이상	2,500만원	200만원
<신 설>			② 일정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근로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 일용·기간제·단시간 등 취약층 근로자 적용 제외		
			$\text{총소득기준} = \text{일반기준} \times (\text{근무월수}/12) \times 130\%$		
			* 근무일이 1월 미만인 월은 1개월로 간주		

(2) 개정이유

- 총소득기준과 최대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근로단가가 높은 고임금 근로자가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총소득기준 환산규정 도입
 - 다만, 일용·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취약층 근로자는 총소득기준 환산규정 적용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반) 2012.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 (소득기준 환산) 2012.1.1. 이후 과세기간 소득 분부터 적용

5.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차등화(조특법 §100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양자녀가 1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 ① 점증구간 : 0 ~ 800 ② 평탄구간 : 800 ~ 1,200 ③ 점감구간 : 1,200 ~ 1,700	☐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적용 ① 점증구간 <table><tr><th>부양자녀수</th><th>점증구간</th><th>점증률</th></tr><tr><td>무자녀</td><td>0 ~ 600</td><td>7/60</td></tr><tr><td>1인</td><td>0 ~ 800</td><td>7/40</td></tr><tr><td>2인</td><td>0 ~ 900</td><td>17/90</td></tr><tr><td>3인 이상</td><td>0 ~ 900</td><td>2/9</td></tr></table> ② 평탄구간 <table><tr><th>부양자녀수</th><th>평탄구간</th><th>최대지급액</th></tr><tr><td>무자녀</td><td>600 ~ 900</td><td>70만원</td></tr><tr><td>1인</td><td>800~1,200</td><td>140만원</td></tr><tr><td>2인</td><td>900~1,200</td><td>170만원</td></tr><tr><td>3인 이상</td><td>900~1,200</td><td>200만원</td></tr></table> ③ 점감구간 <table><tr><th>부양자녀수</th><th>점증구간</th><th>점감률</th></tr><tr><td>무자녀</td><td>900 ~ 1,300</td><td>7/40</td></tr><tr><td>1인</td><td>1,200~1,700</td><td>28/100</td></tr><tr><td>2인</td><td>1,200~2,100</td><td>17/90</td></tr><tr><td>3인 이상</td><td>1,200~2,500</td><td>2/13</td></tr></table>	부양자녀수	점증구간	점증률	무자녀	0 ~ 600	7/60	1인	0 ~ 800	7/40	2인	0 ~ 900	17/90	3인 이상	0 ~ 900	2/9	부양자녀수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무자녀	600 ~ 900	70만원	1인	800~1,200	140만원	2인	900~1,200	170만원	3인 이상	900~1,200	200만원	부양자녀수	점증구간	점감률	무자녀	900 ~ 1,300	7/40	1인	1,200~1,700	28/100	2인	1,200~2,100	17/90	3인 이상	1,200~2,500	2/13
부양자녀수	점증구간	점증률																																												
무자녀	0 ~ 600	7/60																																												
1인	0 ~ 800	7/40																																												
2인	0 ~ 900	17/90																																												
3인 이상	0 ~ 900	2/9																																												
부양자녀수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무자녀	600 ~ 900	70만원																																												
1인	800~1,200	140만원																																												
2인	900~1,200	170만원																																												
3인 이상	900~1,200	200만원																																												
부양자녀수	점증구간	점감률																																												
무자녀	900 ~ 1,300	7/40																																												
1인	1,200~1,700	28/100																																												
2인	1,200~2,100	17/90																																												
3인 이상	1,200~2,500	2/13																																												

(2) 개정이유

- 현행 단일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방법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개로 구분하여 설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6.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거 신설 (조특법§100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의 신청 ① (원칙) 수급자가 근로소득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 ② (기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신 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거 ① · ② (좌 동) ③ (안내)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기 전에 필요한 경우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 가능

(2)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의 복지행정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국세청이 사전에 신청 안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미 집행 중인 사항에 대한 확인적 규정

7. 전세금에 대한 재산평가 방법 보완(조특영§100의4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세금의 평가 방법 ☐ 신청자가 제출하는 전세계약서상의 금액 <신 설>	☐ (좌 동) ☐ 보충적 평가방법 ① 적용사유 - 신청자가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특수관계자*간 임대차계약(무상임대차 포함)의 경우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준용 ② 평가방법 - 재산평가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임대주택 기준시가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 개별 임대주택의 특성*에 따라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평가 *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 주택 유형에 따라 전세가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

(2) 개정이유

- 전세계약서를 미제출하거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임대차 거래의 경우 전세금 확인이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도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된 주요내용】

I. 기업경쟁력 강화

가.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나.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1.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
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
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
4.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
5.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
6.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다. 연결납세제도 보완

1.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
2.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3. 연결납세방식 적용 대상 확대
4.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강화
5. 연결집단의 최저한세 계산방법 명확화
6. 연결법인의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보완
7.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8.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 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방법 신설

라.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2.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3.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
4.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마. 기업구조조정 지원

1.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
2.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
3.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4.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개선
5.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주식배정 요건 개선
6. 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개선
7.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
8.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방법 신설
9.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명확화
10. 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실현 규정 보완
11.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명확화
12. 적격합병·분할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명확화

II. 기부금·비영리법인 세제 개선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2.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
3.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
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조정
6.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
7.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8.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등
9.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Ⅲ.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원관리 강화

1.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
2.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3. 주주등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 개선 등
4.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 개선
5.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Ⅳ. 기타 제도보완(법인세법 관련)

1.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2.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
3. 개발완료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
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
5.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6. 당좌대출이자율 인하
7.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경감
8.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
9.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
10.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11.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
12. 청산소득 중간신고제도 보완
13.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개선
14. 특수관계자에 자금대여시 시가인 이자율 계산방법 개선
15.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규정 보완
16. 분양계약 해제시 손익 귀속시기 명확화
17. 청산소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폐지
1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조정
19. 항만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추가
20. 차액결제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 개선
21.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22. 지배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23. 정형화된 유가증권 양도의 손익귀속시기 명확화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 명확화
2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명확화
26. 일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명확화
27. 추계과세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28.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지주회사의 판정시기 명확화
29. 농협 구조조정에 따른 조문정리

V. 기타 제도보완(조특법 관련)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제도 절차 보완
3.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4.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의 사후관리 기간 완화
5.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6.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지원확대
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확대
9.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폐지
10.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 종료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1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제11128호(2011.12.31. 개정)
- 대통령령 : 제23589호(2012.2.2. 개정)
- 기획재정부령 : 제266호(2012.2.28. 개정)

I. 기업경쟁력 강화

가.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법인법 §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1	'12		
2억원 이하	10%	10%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20%	2~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2) 개정이유

- 유망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재정건전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1.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조특법 §104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 K-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환입액 만큼 익금에서 제외 ☐ 적용대상 : 내국법인 ☐ 기간 및 대상기업 : '11.12.31. 이전에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	☐ 적용대상 확대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추가 ☐ 기간확대 : '13.12.31. 이전에 K-IFRS 적용 기업으로 확대 하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제외 ☐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 익금산입 유예기간 연장(1년) ☐ '13.1.1. 이후 → '14.1.1. 이후

(2)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을 위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2012.1.1. 이후 K-IFRS 도입 법인에도 특례규정 적용
 - 다만, 종전(K-GAAP)과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동일한 일반기업회계 기준 적용 기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법인법 §42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재고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 대상 : K-IFRS 도입*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예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한 기업 *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불인정 ** 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한 기업 ○ 방법 : 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산입 - 재고자산평가차익×해당사업연도월수÷60월 ○ 특례신청기한 : 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2) 개정이유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일시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함에 따른 세부담 증가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법인령 §7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 ○ 원칙 : 매각거래** * 매출채권, 대출금 등 여러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완전히 이전)	○ (좌 동) ○ 예외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거래 인정 *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거래(자산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그대로 보유)

(2) 개정이유

-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법인령 §5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해조사비* 손금산입 ○ 지출시 당기비용처리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금액	○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적립시 손금산입 * 장래 지출될 손해조사비에 대비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 개정이유

- K-IFRS에서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준비금 적립시 손금으로 산입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법인령 §7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 ☐ 통화선도*,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 인식대상 파생상품 추가 ☐ (좌 동) ☐ 일반형 환변동보험* 추가 * 환율변동시 그 변동액 만큼 보험금을 지급(환수)하는 상품

(2) 개정이유

- 헷지거래로 실질적인 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손익만 인식하여 과세되는 문제점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K-IFRS 도입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법인영 §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무형자산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 자산(예: 상표권, 방송권 등) <추 가> * 결산시에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 대상 추가 ☐ (좌 동) ☐ K-IFRS 최초 적용이전에 발생한 영업권

(2) 개정이유

- K-IFRS 도입 이전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을 허용하여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연결납세제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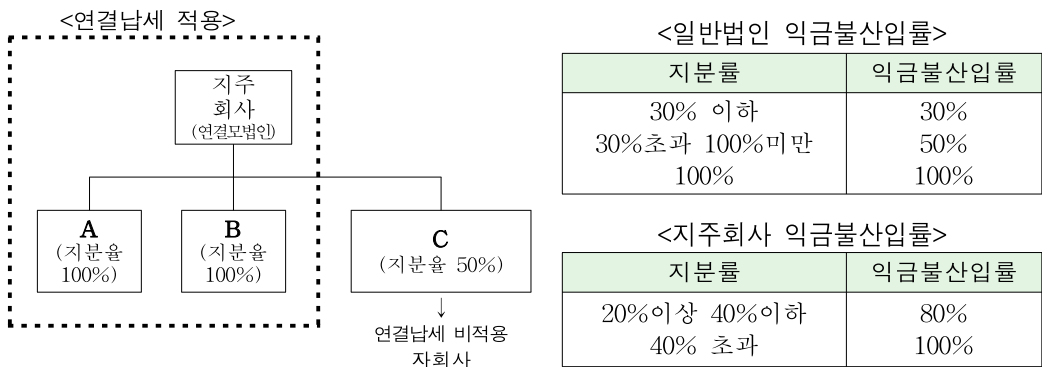
1.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 (법인법 §76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연결납세 적용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100% 익금불산입 ☐ 연결납세 비적용 자회사(지분율 100%미만)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적용	☐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 (좌 동) ☐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2) 개정이유

-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이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지분율 100% 미만)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50%)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법인법 §76의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자법인 해산시 ☐ 해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

(2) 개정이유

- 연결법인간 흡수합병으로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가 계속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흡수합병되는 연결자법인부터 적용

3. 연결납세방식 적용 대상 확대(법인영 §120의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모법인 적용제외 대상 ○ 비영리내국법인 ○ 청산중인 법인 등 ○ 다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	☐ 연결모법인 적용 허용범위 확대 ○ 비영리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모법인 허용

(2) 개정이유

- 모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자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 적용을 허용하여 조세의 중립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연결납세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강화(법인법 §76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 (기준시점) : 완전자법인으로 된 시점 ☐ (제한대상) : 기준시점 이전에 취득한 자산 ☐ (제한기간) : 기준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 기준시점 변경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점

(2) 개정이유

- 결손이 누적된 완전자법인과 연결납세 적용시기를 조절하여 조세회피하는 사례 방지
- 합병·분할 후 5년내 발생하는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처분하는 자산부터 적용

5. 연결집단의 최저한세 계산방법 명확화(법인영 §120의2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집단의 최저한세 적용방법 ○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감면배제액 계산시 연결세율과 감면배제액이 순환하는 문제 발생	○ (좌 동) ○ 감면배제액 계산방법 개선 - 감면후 세액과 최저한세는 일반적 절차에 따라 계산하고, - 감면배제액 계산시에는 최초 감면후 세액계산시의 결손금 배분액과 연결세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액 계산

(2) 개정이유

- 연결납세 적용기업의 최저한세 계산시 감면배제액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연결법인의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보완 (법인영 §120의18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납세 적용기업이 개별세무조정시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	☐ 연결납세 적용시 연결법인의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명확화 ○ 손금불산입 전 대손충당금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채권별로 손금불산입액 배분

(2) 개정이유

- 개별세무조정 단계에서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이 있는 경우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액 배분 방법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영 §120의2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 × 연결세율	☐ 감면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 × 감면율 × 연결세율

(2) 개정이유

-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 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방법 신설
(법인영 §120의2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법인 기부금 한도초과액 배분방법 ☐ 연결법인별 기부금 액수에 비례하도록 한도초과액 배분 <신 설>	☐ (좌 동) ☐ 기부금한도 초과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것부터 손금산입하고, 연결법인별 기부금한도 초과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해당년도 한도미달액에 충당

(2) 개정이유

- 연결납세 적용시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0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대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에게 귀속시켜 과세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추가 * 합자회사와 유사하지만 법인격이 없고, 계약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도 업무 집행이 가능한 점에서 차이 (미국의 Limited Partnership과 유사)

(2) 개정이유

- 새로운 공동사업 형태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4.15.(개정 상법 시행일) 이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인법 §44, 법인령 §8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양도차익 등의 과세이연 요건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대가 中 합병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	☐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도 포함

(2) 개정이유

- 상법에서 삼각합병*을 도입함에 따라 세법에서도 합병과세특례 대상에 삼각합병을 도입
- * 자회사가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합병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4.15.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법인법 §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2) 개정이유

- 개정상법에서 자본준비금 배당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제도를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4.15.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4.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법인법 §17①, §76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 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등의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좌 동) -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을 초과하여 계상하는 금액 ☐ (좌 동) - 단, 무액면주식의 경우 액면금액은 주식발행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 개정이유

- 개정상법에서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4.15. 이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마. 기업구조조정 지원

1.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법인법 §16, 법인령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한 경우 잉여금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잉여금 - 이익잉여금, 토지의 재평가 차액(1%) 등 ○ 자본전입시 면세되는 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등	○ 과세되는 잉여금의 대상 추가 - 적격합병(적격분할)으로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잉여금 중 과세된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 ㉡)중 과세된 것, ㉢은 의제배당 과세 <table border="1"> <thead> <tr> <th>합병차익 구성순서</th><th>의제배당 과세여부</th></tr> </thead> <tbody> <tr> <td>㉠ 자산조정계정</td><td>○(과세)</td></tr> <tr> <td>㉡ 합병(분할)감자차익</td><td>×</td></tr> <tr> <td>㉢ 피합병(분할)법인 자본잉여금</td><td>×(과세되지 않은 것) ○(과세)</td></tr> <tr> <td>㉣ 피합병(분할)법인 이익잉여금</td><td>○(과세)</td></tr> </tbody> </table> - 상기 잉여금을 자본전입시 ㉠, ㉡, ㉢, ㉣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봄	합병차익 구성순서	의제배당 과세여부	㉠ 자산조정계정	○(과세)	㉡ 합병(분할)감자차익	×	㉢ 피합병(분할)법인 자본잉여금	×(과세되지 않은 것) ○(과세)	㉣ 피합병(분할)법인 이익잉여금	○(과세)
합병차익 구성순서	의제배당 과세여부										
㉠ 자산조정계정	○(과세)										
㉡ 합병(분할)감자차익	×										
㉢ 피합병(분할)법인 자본잉여금	×(과세되지 않은 것) ○(과세)										
㉣ 피합병(분할)법인 이익잉여금	○(과세)										

(2) 개정이유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등의 잉여금이 합병 시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법인법 §4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완전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 자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 ○ 별도의 요건* 없이 합병과세 특례를 적용 * 요건: ① 사업목적의 합병 ② 지분의 연속성 ③ 사업의 계속성	☐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추가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3.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법인법 §45, §46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합병후 5년 이내 발생)은 합병 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불가 * 적격분할 포함 <신 설>	○ 합병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 받은 사업에서 공제 불가

(2) 개정이유

- 자산처분손실이 예상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합병법인으로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합병·분할·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개선
(법인영 §80의2③·§82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으로 하되 ○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동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합병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대가에 가산 <산식> $\frac{\text{합병대가 중 주식가액}}{\text{합병대가} + \text{포합주식취득가액}} \geq 80\%$ ☐ 분할 : 합병과 동일한 기준 적용	☐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한 계산방법 조정 ○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교부한 것으로 봄 ○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하더라도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 <산식> ①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경우 $\frac{\text{합병대가 중} - \text{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가액}^*}{\text{합병대가}}$ *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20%를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 포합주식가액은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대가 추산액 ②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frac{\text{합병대가 중} + \text{포합주식가액} - \text{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가액}}{\text{합병대가} + \text{포합주식가액}}$ ☐ (좌 동)

(2) 개정이유

- 포함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충족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점 보완
 - ※ 포함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합병대가 지급 후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합병요건 계산 사례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 150 지급
 - 피합병법인 주주(합병법인 제외) : 100 지급
 - 합병법인(포함주식 보유) : 50* 지급
- * 합병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주식 30, 2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 20

가. 포함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후
$\frac{\text{주식 } 150}{\text{합병대가 } 150 + \text{포함주식 } 30} = 83\% \text{ (적격)}$	$\frac{\text{주식 } 150 - \text{2년이내 포함주식 } 30}{\text{합병대가 } 150} = 80\% \text{ (적격)}$

나. 포함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종 전	개 정 후
$\frac{\text{주식 } 100}{\text{합병대가 } 100 + \text{포함주식 } 30} = 77\% \text{ (비적격)}$	$\frac{\text{주식 } 100 + \text{교부간주 } 50 - \text{2년이내 포함주식 } 30}{\text{합병대가 } 100 + \text{교부간주 } 50} = 80\% \text{ (적격)}$

5. 합병·분할 과세특례 요건 중 주식배정 요건 개선 (법인영 §80의2④·§82의2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과세특례 요건으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으로 지배주주에게는 그 지분을 이상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함 $\text{합병주식 총액} \times \frac{\text{지배주주의 지분합계*}}{\text{피합병법인의 전체지분*}}$ *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지분 제외(재법인-351, '11.4.22) ☐ 분할 : 합병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지분의 연속성 판단 시 포함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지배주주 배정요건 판단 ☐ (좌 동)

(2) 개정이유

- 지배주주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 교부여부에 따라 합병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 보완

* 재법인-351(2011.4.22.)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2010.12.30 개정전의 것) 산식에서 “지배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지배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6. 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개선(법인영 §80의2, §8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분할로 과세이연을 적용받기 위한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 ○ 모든 개별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1/2이상 보유 * 지분율 1% 이상인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완화 ○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 보유 - 지배주주간 주식처분시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봄
☐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 ○ 합병·분할등기일 및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신 설>	☐ 사후관리 기간 완화 ○ 3년 → 2년 ☐ 합병후 지배주주 보유 주식의 처분 순서 ○ 합병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2) 개정이유

- 일부 지배주주가 임의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합병법인의 과세이연이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식보유요건 : 2012.2.2.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기간 및 주식처분순서 : 2012.2.2.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7.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법인법 §47, §4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과세 ○ 분할법인 : 분할시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과세이연 하되 주식처분 시 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 ○ 분할신설법인 : 자산을 장부 가액으로 승계하고 자산 처 분시 양도차익을 과세	☐ 분할법인만 과세 ○ 분할법인의 주식 처분시와 분할 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시 처분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분할법인에 과세 * 주식을 50% 이상 처분시 전액 과세

(2) 개정이유

-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각각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11.12.31. 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12.1.1. 이후 최초로 과세
표준을 신고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물적분할 과세체계

구 분	기 존			개 정		
	장부가액	분할당시시가	양도당시시가	장부가액	분할당시시가	양도당시시가
분 할 법 인	압축기장충당금 ← 양도당시시가 - 장부가액 →			압축기장충당금 ← 양도당시시가 - 장부가액 →		
	주식처분시 과세			주식·자산처분시 과세		
분 할 신 설 법 인	자산조정계정 계상 ← 양도당시시가 - 장부가액 →					
	자산처분시 과세			자산처분시 과세		

8.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방법 신설(법인영 §84·§8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처분시 분할법인의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① 감가상각자산*, ② 토지,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건물 등 유형자산 및 특허권 등 무형자산(유휴설비 포함)
<신 설>	☐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잔액 × [당기 주식처분 비율(A) + 당기 자산처분 비율(B) - A × B] - 당기 주식처분 비율(A) : 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 - 당기 자산처분 비율(B) : 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 분할등기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금액

(2) 개정이유

- 분할신설법인의 처분자산 범위를 사업의 계속성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토지 및 주식·출자지분으로 규정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차익 계산 도해

주식 처분 비율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 자산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 + 자산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상당액 - 중복되는 양도차익 상당액
	자산처분비율	과세하는 양도차익

9.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명확화
(법인영 §72②3의2, 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분할 법인·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특례 적용시 : 장부가액 ○ 그밖의 경우 : 주식의 시가	□ 주식의 취득가액 ○ 물적분할·100% 지분을 취득하며 법인을 신설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 과세특례 적용시 : 장부가액 - 그밖의 경우 : 양도한 순자산의 시가 ○ 기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 과세특례 적용시 : 장부가액 - 그밖의 경우 : 주식의 시가

(2) 개정이유

- 물적분할과 100% 지분을 취득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적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순자산의 시가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합병·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실현 규정 보완(법인영 §80의4⑥·§82의4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 적격분할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감면, 이월세액공제 적용 불가 ○ 자산조정계정은 익금에 산입 ○ 합병매수차손익을 인식 <신 설>	○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을 반대 회계(추인)

(2) 개정이유

-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이 실현됨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명확화(법인영 §8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모두 승계 ○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미승계 * 합병·분할시에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는 총당금으로 봄(법 §33③, 법§34⑥)	□ 세무조정사항 승계 명확화 ○ 이외의 경우에도 비적격합병·분할로 피합병법인(분할법인)으로부터 -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유보를 승계 -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유보를 승계

(2) 개정이유

- 종업원 또는 외상매출금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경우
 -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승계 가능 규정을 두고 있음 (법법 §33③, §34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적격합병·분할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명확화 (법인영 §72②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취득가액 ○ 적격합병·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 ○ 그 밖의 경우 : 자산의 시가	○ 적격합병·인적분할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자산 조정계정*을 감안하여 피합병·분할법인의 장부가액 *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 ○ 그 밖의 경우 : 자산의 시가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포함

(2) 개정이유

- 적격합병등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을 관련 조문*에서는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와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 조정계정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 법영§80의4①, §82의4①, §84④, §84의2④
 - 자산의 취득가액을 일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영§72①3호에서는 “피합병법인등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의 규정방향을 통일
- 물적분할(현물출자 포함) 과세특례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을 시가로 취득하도록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Ⅱ. 기부금·비영리법인 세제 개선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법 §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지정기부금 : 5년	○ (좌 동)
○ 법정기부금 : 1년	○ 연장 : 1년 → 3년

(2) 개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정기부금단체에 공공교육기관 추가(법인법 §24, 법인령 §3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단체인 공공교육기관 ☐ 사립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대구경북,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 <추 가>	☐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 * 개인: 소득금액의 100% 한도내 경비 인정 법인: 소득금액의 50% 한도내 경비 인정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KDI정책대학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 개정이유

- 공공교육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인법 §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래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등 ○ 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학교의 신축·증설, 교육환경 개선 목적	○ (좌 동) ○ 국립·공립·사립학교의 비영리재단법인 -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지급 목적

(2) 개정이유

- 교육·연구·장학 사업을 위한 재원확충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법인령 §3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인정 ○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 -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 부담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 전부 부담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대가 전부 부담 시설	☐ 무료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삭 제>

(2) 개정이유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조정(법인법 §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 * 소득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5년내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미사용시 법인세 추징) ○ 5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 포괄적 이자소득 - 의제, 인정, 외국법인 간주, 출자공동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 소득 ○ 100% 설정 이자 및 배당소득 - 위 50% 설정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제외한 소득	○ 비영업대금이익만 50% 설정 수익사업소득으로 유지 ○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50% 설정 대상 이자·배당소득을 100%로 전환 - 포괄적 이자소득과 출자공동 사업자 및 포괄적 배당소득 등

(2)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강화(법인령 §36·§3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지정기부금단체>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 수입을 공익목적에 사용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 ○ 개설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 정치활동 불가 ○ 지정취소후 5년 경과 등 <신 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요건 ○ 1,000만원 이상 상증세 추정 ○ 공익목적 위반, 지정요건 위반, 이행실적 미제출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 공개 <신 설>	☐ 지정요건 및 의무이행 사항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후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58①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 (좌 동) ○ 연간 지출액(수익사업 관련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6에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단체> ☐ 학교 등 법정기부금 지정단체 의무 이행 사항 ○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 지정취소후 5년 경과 등 <신 설> ☐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요건 ○ 1,000만원 이상 상증세 추정 ○ 공익목적 위반, 지정요건 위반, 의무이행 위반, 요건충족여부 미보고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신 설>	☐ 의무이행 사항 추가 ○ 공공기관 등과 한국학교의 경우 연간 지출액(수익사업 관련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지정취소 요건 추가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6에 위반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
--	---

(2) 개정이유

- 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선거운동금지·공익목적지출 : 2012.2.2. 이후 최초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취소요건 : 2012.2.2.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7.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인영 §56, 상증영§3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은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사용한 것으로 간주	☐ 과다인건비는 비영리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음 ☐ 과다인건비의 개념 - 임직원의 급여 중 연간 8천만원* 초과 금액 - 다만, 인건비 지급기준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지출로 인정 *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 ☐ 대상법인 -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2)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전공대학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등(법인영 §2①, §3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경영사업 <추 가> ☐ 지정기부금 범위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상기 학교·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추 가>	○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

(2) 개정이유

- 전공대학은 전문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과 동일한 고등교육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전문대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수익사업) 2012.2.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지정기부금단체 추가(법인규칙 별표 6의2·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등 <신 설>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추가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
☐ 용도지정기부금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신 설>	☐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2) 개정이유

- 지방문화원·한국문화원연합회,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지정 기부금단체에 추가하여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8.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Ⅲ.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원관리 강화

1.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법인법 §76⑨)

종 전	개 정
☐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 가산세 대상 추가 - 가공 및 위장 계산서 수수 ○ 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 및 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 공급가액의 1%

(2) 개정이유

- 계산서 교부질서 정상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법인법 §76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2%) 부과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 부과기한 폐지

(2) 개정이유

- 다른 세법 규정과 일치시켜 가산세 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주주등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 개선 등 (법인법 §76 , 법인영 §152②, §161⑥, §120①·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	☐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
☐ 가산세 부과되는 불분명하게 작성한 경우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주주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기업의 주식등의 실제소유자 확인부담 완화를 위해 - 기업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법인설립시 주주 등의 명세 제출 ☐ 불이행시 제재규정 없음	☐ 주주 등의 명세 제출의무 강화 ☐ 가산세 신설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한 주주등의 주식 액면가액 × 0.5% - 단순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제외

(2) 개정이유

-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출의무를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등명세서 : 2012.1.1. 이후 설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 개선(법인법 §7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①) - 자기자본(②) ① 잔여재산가액 : 자산 - 부채 ② 자기자본 : 자본금+(잉여금-이월결손금*)+법인세환급액 * 잉여금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	○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 자본 전입한 금액을 잉여금에 포함

(2) 개정이유

- 잉여금을 편법으로 축소시켜 과세대상 청산소득을 줄이는 형태의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해산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인법 §1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원천징수 대상 이자·배당소득 ○ 제출의무 제외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배당소득 - 법인세 비과세·면제 소득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 소득 ○ 제출의무 제외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2)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급명세서를 제출의무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Ⅳ. 기타 제도보완(법인세법 관련)

1.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법인영 §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액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특례 *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손비 인정 ○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 - 다만, 5,000원 이하 물품 제공시 한도 계산에서 제외	☐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 (한도 제외) 5,000원 이하 물품 → 10,000원 이하 물품

(2) 개정이유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법인영 §4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 : 개별 거래의 이익을 수입금액 으로 봄 * 접대비 한도 계산식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 : 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 다만, 순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0으로 봄

(2) 개정이유

- 접대비 지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접대비 한도가 증가되지 않도록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개발완료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법인영 §7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 해당 개발비는 손실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손금산입시기 불명확	☐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 산입시기 명시 ○ 개발을 취소하고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손금산입 (i) 개발비의 자산성 상실* * 해당 개발비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의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ii) 개발비를 결산상 전액 손실로 계상

(2) 개정이유

- 개발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 (법인영 §17의2·1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주식 취득과 관련 있는 차입금의 이자는 차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text{수입배당금} \times \text{익금불산입률}$ $= \text{차입금} \times \frac{\text{이자}}{\text{불산입률}} \times \frac{\text{세무상 주식 장부가액}}{\text{회계상 자산총액}}$	□ 지주회사(A)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다른 지주회사(B)를 설립하는 경우 ○ 신설지주회사(B)가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 차입금 이자 차감 계산식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에 ‘물적분할 전 지주회사(A)의 세무상 주식장부가액’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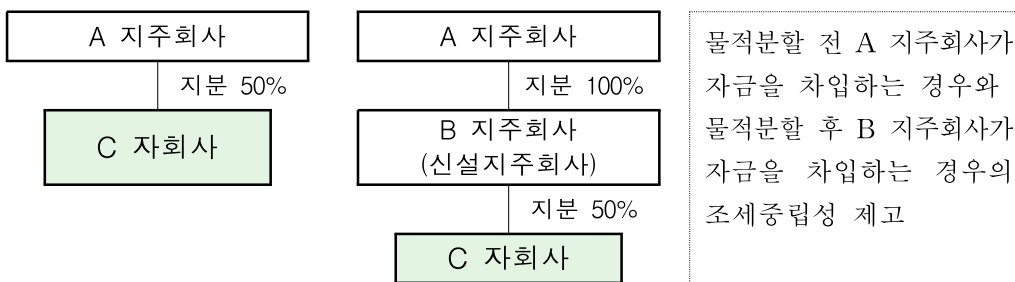
(2) 개정이유

- 지주회사가 물적분할로 다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산이 시가로 승계됨에 따라 신설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감소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물적분할 전> ➡ <물적분할 후>



5.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법인영 §69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용역의 수익인식 ○ 원칙 : 진행기준 ○ 예외 : 인도기준 허용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중소기업의 1년 미만 용역 <추 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예: 예약매출)

(2) 개정이유

-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기업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3)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인규칙 §4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좌대출이자율 ○ 8.5% ('09.3.30~)	☐ 당좌대출이자율 ○ 6.9%

(2) 개정이유

- 예금은행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가 6.9%('10년말) 낮아진 점을 반영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

7.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경감
(법인영 §110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추징시 이자상당액 ○ 환급취소세액 × 추징기간 일수 × 1일 3/10,000(연 10.95%) <신 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상당액 경감 ○ (좌 동)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연 4.0%)을 적용 * 과세관청의 부당한 과세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았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8.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법인영 §6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 일시퇴직기준 × 25%* * 매년 5%씩 인하('16년 폐지)	○ Max [일시퇴직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 × 25%* * 매년 5%씩 인하('16년 폐지)

(2) 개정이유

-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마련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은 전체 근로자의 예상퇴직시기, 임금 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상 퇴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통상 일시퇴직기준에 비해 높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
(법인법 §25② 법인영 §41②, 소득영 §84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허용 ☐ 특정 국외지역 지출 <추 가>	☐ 대상 추가 ☐ (좌 동) ☐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 구입시” - 금융기관 송금만 인정하고 송금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2) 개정이유

- 농·어민 지원 및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법인영 §1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법인 ○ 조합법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 주주등이 공공기관 또는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 사모투자전문회사* *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주식등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9)	<삭 제> (제출대상에 포함)

(2) 개정이유

-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 (법인법§6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 직전사업연도 6개월 법인세액을 해당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8월내 납부 ○ 중간예납의무 면제 - 사립대학법인	☐ 중간예납 대상 추가 ○ 중간예납의무 면제 - 사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2) 개정이유

- 산학협력 사업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2. 청산소득 중간신고제도 보완(법인법 §8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산소득 중간신고 사유 ① 잔여재산가액이 확정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경우 ②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좌 동)
☐ 청산소득 중간신고 면제 ○ ②의 사유 발생시 면제 : 국가가 지분의 1/2이상을 소유하는 법인	☐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①, ②의 사유 발생시 면제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 일정 요건을 갖춘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배당금을 소득 공제함으로써 그 배당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제도

(2) 개정이유

-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을 배당하여 신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개선(법인법 §76⑦, 영§120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과대상 ○ 지급자·소득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 가산세율 : 지급금액의 2%	☐ 가산세 부과대상 축소 ○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미기재 또는 잘못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개정이유

-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더라도 발행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특수관계자에 자금대여시 시가인 이자율 계산방법 개선
(법인영 §89③, 법인규칙 §4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금대여시 시가인 이자율 ○ 원 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예 외 :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의 차입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불분명 사채 등인 경우 ㉢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큰 경우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적용이 곤란한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2. 당좌이자율 선택시	□ 이자율 계산방법 개선 ○ (좌 동) ○ 예 외 : 일정사유 대여금*의 경우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 ㉢) ⇒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적용이 곤란한 경우(㉣) ⇒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2. (좌 동)

(2) 개정이유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규정 보완(법 §117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법인 ☐ 가맹점 의무사항 ○ 현금영수증의 발급 거부 금지 ○ 현금영수증의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 가맹점 제재사항(법 §76⑫) ○ 미가입시 : 미가입기간의 수입 금액 × 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시 :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대규모점포·체육시설*에 입점한 법인은 제외(시행규칙) ○ 사실과 다른 발급 예외 인정 - 대규모점포·체육시설* 운영업자가 동일 점포나 체육시설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에 대해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예외 인정 * 대규모점포·체육시설 운영업자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

(2)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을 통합 발행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분양계약 해제시 손익 귀속시기 명확화(법인영 §69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물 등의 예약매출시 손익 귀속시기 ○ (예약매출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 * 중소기업의 1년미만 건설등의 제공은 인도일 가능 ○ (계약해제시) 규정 없음 * 법인세법 통칙상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하나, 민법상 해제의 효력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 건물 등의 예약매출시 손익 귀속시기 명확화 ○ (좌 동) ○ (계약해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양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

(2) 개정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40-69...4)을 법령으로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7. 청산소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폐지(법인영 §12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산소득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연대납세의무자 : 청산인,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분배한 자산과 분배받은 자산을 한도로 납부	<삭 제>

(2)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상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와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조정(법인영 §163의2①, §164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법인 : 매년 1월 31일 ○ 개인 : 매년 2월 10일* * 2010.12.27. 개정	○ 매년 2월 10일로 「소득세법」과 일치 ○ (좌 동)

(2) 개정이유

- 세법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을 소득세법과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항만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추가(법인영 §24, §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및 내용연수 1. 영업권, 디자인권 등 : 5년 2. 특허권, 어업권 등 : 10년 3. 광업권, 전용측선이용권 등 : 20년 4. 댐사용권 : 50년 5. 개발비 : 20년 이내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사용수익기간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 등록기간	☐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 추가 1. ~ 6. (좌 동) 7. 항만시설관리권을 추가

(2) 개정이유

-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감가상각 근거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차액결제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 개선(법인영 §71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차액결제 파생상품의 만기시 손익귀속시기 ○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 우리부 예규*는 손익이 확정되는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로 해석 * 우리부 예규 재법인-686('09.8.3)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결정된 환율을 기준으로 손익을 확정하고 만기일에 차액만을 결제하는 거래의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회계와 세법의 손익귀속시기 일치 ○ 대금결제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

(2) 개정이유

- 차액결제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를 기업회계와 일치시켜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1.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법인영 §8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② 주주 (1% 이상 출자)와 그 친족 ③ 임원·사용인, 주주의 사용인, 법인 또는 주주의 금전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④ ①~③의 자가 30%이상 출자한 법인 ⑤ ①~③의 자 및 당해 법인이 (i)이사의 과반수 또는 (ii)50%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⑥ ④ 또는 ⑤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⑦ 당해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⑧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신 설>	(현행과 같음) ④ 해당법인이 직접 또는 ①~③의 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⑤ 해당법인이 직접 또는 ①~④의 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 지배적인 영향력의 기준 - 영리법인: ① 30% 이상 출자 또는 ② 사실상 영향력행사 - 비영리법인: 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30% 이상 출연, 1인이 설립자 ⑥ <삭 제> ⑦ 당해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 쌍방관계 규정

(2)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특수관계인 규정방식과 유사하게 규정하면서 지배적인 영향력 판단기준 중 30% 출자·출연기준을 일부 수용
- 최근 대법원에서 명확한 입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쌍방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 2008두150(2011.7.21.) :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의 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법인의 주주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30%이상 출자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존의 국세행정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법상 특수관계는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2. 지배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법인영 §4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배주주는 주식 1%이상 보유 주주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식합계가 최대인 주주 * 지배주주등에게 다른 임원보다 상여금 초과 지급시 손금불산입	☐ (현행과 같음)
☐ 지배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범위 ○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① 친족 ② 사실상 지배법인 ③ 주주와 ①·②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④ 주주와 친족이 (i)이사의 과반수, (ii)50%이상 출자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⑤ ③·④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 현행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와 유사 ○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 1% 이상 출자자 등 모든 특수관계인(임원·사용인 제외)	☐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주주와 친족이 (i)이사의 과반수, (ii)30%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⑤ ③·④의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 (좌 동)

(2)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지배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 판단기준을 일부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정형화된 유가증권 양도의 손익귀속시기 명확화(법인영 §6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익귀속시기 ○ 상품 : 인도일 ○ 상품외 :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인도일 중 빠른날 <신 설> ※ 예규(재법인46012-71, '01.3.28) 정형화된 유가증권의 양도 : 매매계약 체결일	○ 정형화된 유가증권 양도* : 매매계약체결일 *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매도

(2) 개정이유

-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현행 거래체계상 표준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실질적으로 확정
 - 다른 상품을 매수하거나 재매도가 가능한 등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 명확화(법인영 §5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유목적사업 지출한 경우 ○ 고정자산 취득 - 자본적 지출은 불명확 ○ 인건비 등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도 포함됨을 명확화

(2) 개정이유

- 자본적 지출이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자본적 지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명확화(법인영 §6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신용보증기금 등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금액 ○ “신용보증잔액”의 1%와 직전 사업연도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	○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의 1%로 명확화

(2) 개정이유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사업을 신용보증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6. 일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명확화(법인영 §7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개 이상 자산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안분계산 근거가 불명확 ○ 유권해석*으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안분계산 운영 * 재법인-116, 2010.03.02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취득하여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 일괄취득시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 명확화 ○ 2개 이상 자산을 일괄 취득시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

(2) 개정이유

-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일괄 취득자산의 안분계산기준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사업외수익에서 가감하는 항목>

- + 사업외수익
 - ① 사업외수익에 대응되는 비용
 - ②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환입된 금액
 - ③ 부동산임대업의 수입이자 상당액
 - + ④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 = 사업외수익 과세표준
-

①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외수익과 직접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을 차감

② 사업외수익은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을 차감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은 수익에 포함(영§11 7호)

③ 부동산임대 수입의 경우 추계결정시 사업수익에는 간주임대료*가 사업외수익에는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수입이자 포함되므로 중복 계상된 수입이자 상당액을 차감

* 추계결정시 부동산임대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영§11 1호)

④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8.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지주회사의 판정시기
 명확화(법인영 §17의2①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09.2.4 지주회사의 범위를 법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지주회사의 판정시기 삭제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이전촉진법」, 「산학협력촉진법」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 지주회사로 봄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면 지주회사로 봄

(2) 개정이유

- 지주회사의 판정시기를 명확히 하여 법적안정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9. 농협 구조조정에 따른 조문정리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 2% 손금산입 (법인영 §61①3) ○ 농업협동중앙회의 사업 중 상호금융사업¹⁾, 신용사업²⁾,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채권 1) 상호금융사업 :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등 2) 신용사업 :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등의 은행업무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영 §57①1·3) ○ 농업협동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하여 손금 산입	○ 농업협동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과 농협은행(구 신용사업) * 공제사업의 경우 농협생명·손해보험으로 분리되면서 영 §61①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적용 <삭 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음)

(2) 개정이유

- 농협의 구조조정에 따라 관련 조문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농협법 시행일('12.3.2.) 이후부터 적용

V. 기타 제도보완(조특법 관련)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특법 §8의3, 조특령 §7의2 별표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7% 세액공제제도 ○ 목적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금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 지원 - 시험용시설 활용지원, 견본품·부품 구입지원 등 <추 가> ② 인력개발 지원 ③ 생산성 향상 지원 ④ 해외시장 진출 지원 <추 가>	☐ 대상 범위 확대 ○ 목적 :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추가 ○ 기금 사용용도 추가 ① 연구개발 지원 - 대기업 소속 연구개발인력 파견 ② ~ ④ (좌 동) 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술도입 지원 등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제도 절차 보완 (조특령 §7의2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은 과세표준신고시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개정이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관리 절차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시행일('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조특법 §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 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 추가 * 등록 후 3년 이내 출자금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예 :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농림수산 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제조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 양도차익 등이 비과세되는 출자 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추가

(2) 개정이유

-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 지원,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학 재원 확충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농식품투자조합) 201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012.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의 사후관리 기간 완화
(조특영 §35^⑫ · §35의2^⑪ · §35의3^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의 사후관리 기간 ○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물출자 등을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 사후관리 기간 완화 ○ 3년 → 2년

(2) 개정이유

-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시행령의 규정을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으로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시행일('12.1.1.) 이후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현물 출자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5.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46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1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 시설양도후 3년간 제3자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 : '13.12.31.

(2) 개정이유

- 물류기업의 구조개편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지원확대(법§60, 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0) * 수도권과밀억제권·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외·광역시외 ○ 공장 양도차익의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일몰기한 : '11.12.31.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6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본점·주사무소 대지·건물 양도 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일몰기한 : '11.12.31.	□ 과세특례대상 조정 및 일몰 연장 ○ 광역시* →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 일몰기한 : '14.12.31. ○ 일몰 연장 : '14.12.31.

(2) 개정이유

-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6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5년거치 5년분할 과세) ○ 적용기한 : '15.12.31.

(2)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7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익사업 소득의 100%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기한 : '12.12.31.) ○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원격대학운영 비영리법인 등 <신 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 대학교 ○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 금으로 지출하는 공익법인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조직위원회 ○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2) 개정이유

-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용 재원 확충 지원 및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폐지(조특법§7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손금산입한도 : 수익사업소득 금액 × 60% * 일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50%(이자·배당소득은 100%)까지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허용 ○ 적용기한 : '11.12.31.	<일몰 종료>

(2)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 특례제도 정비

10.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 종료
(조특법§104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박람회 참가자가 '11.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 연도까지 참가준비금 적립시 손금산입 ☐ 박람회 참여 관련 비용발생시 상계	☐ 일몰 종료

(2) 개정이유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목적 달성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조특법§121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제1항) 농업중앙회가 '12.6.30.까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 (제2항) 농업금융지주회사가 농업중앙회와 '12.6.30.까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조특법 §38 ① 1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 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주식을 교환·이전 ☐ (제3항) 명칭사용료에 대한 고목준비금 한도 상향 조정 (일몰 : '13.12.31.) ○ 이자·배당소득 : 100% ○ 명칭사용료 : 100%(시행규칙§51의9에 규정) ○ 그 외 수익사업소득 : 50% ☐ (제4항) 농업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을 고유목적 지출 간주(일몰 : '13.12.31.) ☐ (제5항) 농업중앙회가 지급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법인세법」§52)을 적용하지 아니함 (일몰 : '13.12.31.) ☐ (제6·7항) 농업중앙회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공급하는 전산용역 및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일몰 : '13.12.31.) ☐ (제8항) 농업 사업구조 개편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보험계약)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 면제

(2) 개정이유

- 농협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3.2.부터 시행

- (제1항) 2012.3.2.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제2항) 2012.3.2.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
- (제3·4항) 2012.3.2.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제5항) 2012.3.2.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제8항) 2012.3.2.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 §136, 조특령 §13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 일반 접대비 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한도율* <table border="1"> <tr> <th>수입금액</th><th>적용한도율</th></tr> <tr> <td>100억원 이하</td><td>0.2%</td></tr> <tr> <td>100~500억원</td><td>0.1%</td></tr> <tr> <td>500억원 초과</td><td>0.03%</td></tr> </table> ☐ 문화접대비 범위 ○ 문화예술·공연·전시회·박물관·운동경기·관광공연장·박람회 입장권 구입 등 ☐ 적용기한 : '11.12.31.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 : 3% → 1% * 앞으로는 총접대비의 1% 초과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추가 * 예 : 국보, 보물, 사적 등 ☐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2) 개정이유

-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 기준을 낮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접대비 범위에 추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최소기준 하향조정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문화접대비 범위확대 : 2012.2.2.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일몰 연장 : 2012.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한 주요 내용】

I. 일자리 창출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2.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공제한도 우대 적용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5.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와 순증인원의 계산방법
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상당액
8.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명확화
9.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공제세액 계산방법 보완
10.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세제지원
11.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관련 사전취업계약 및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

II. 지속성장 지원

1.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
2.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 · 재위탁 R&D 추가
3.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4.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 명확화
5. 증가분 방식 R&D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6.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
7. R&D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정
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시설 조정
9.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10.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전담요원 제외

Ⅲ. 지역발전 지원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문정리
2. R&D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확대
3.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지원확대
4.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 업종 기준의 법령 명확화
5.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등 감면대상 제외업종 중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명확화
6.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계산방법 등 규정
9. 과밀억제권역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10.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11.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급여총액 적용 방법 명확화
12.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에 대한 규정 명확화
13.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4.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IV. 기타 지원제도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3. 추계과세기 감면배제 범위 개선
4.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제외
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 조정
6.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8.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9.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 특례
10. 장학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12.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범위 확대
1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는 금전대여의 범위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 제11133호(2011.12.31.)
- 대통령령 : 제23590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64호(2012.2.28.)

I. 일자리 창출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법§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 공제율 조정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임시투자	4%	5%	5%	기본공제 ¹ (고용유지조건)	3%	4%	4%
고용창출	1%	1%	1%	추가공제 ²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6%	합 계	5%	6%	7%
○ 일몰 : '11.12.31.				1] 전년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 2]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일몰 : '14.12.31.(3년 연장)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몰 종료			

(2) 개정이유

-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공제한도 우대 적용(법§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공제한도(①+②) <신 설> ① 청년(15~29세) 고용인원 × 1,500만원 ② (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로자수 - 청년근로자 고용 인원) × 1,000만원	☐ 추가공제한도 확대(①+②+③) 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 고용인원 × 2,000만원 *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 하는 학교(산업정보학교 등) ② 청년(15~29세) 고용인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고용 인원 제외) × 1,500만원 ③ (해당연도 근로자수 - 직전연도 근로자수 - 청년·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고용인원) × 1,000만원

(2) 개정이유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대하여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영§23, 영§13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훈련 학교의 범위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등학교 ○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예 : 산업정보학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의 계산 ○ 근로계약일 현재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 하지 않은 사람의 수 - 한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근로계약일 현재 만15~29세 이하인 근로자 수 - 한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근로자 수 계산방법 ○ (좌 동) - 한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서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수를 뺀 수

(2) 개정이유

- 직업교육훈련학교의 범위를 규정하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고용여부 판단시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법§30의3)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적용기한 : '11.12.31.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 '12.12.31.

(2) 개정이유

-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 · 근로자에 대한 지원

5.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법§30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지원대상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세액공제액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i) 청년(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 100% $\frac{\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MIN}$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ii) 청년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 : 50% $\frac{\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 외 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text{해당 과세연도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 \times (\text{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text{㉠}) \times 50\%$ ☐ 적용기한 ○ 2012.1.1. ~ 2013.12.31.(2년)

(2) 개정이유

-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와 순증인원의 계산방법(영§2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시근로자의 범위 다음의 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 *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포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은 대표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신 설>	☐ (현행과 같음)
☐ 상시근로자수와 순증인원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 해당 과세연도 월수 <신 설>	☐ (좌 동) ☐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다만,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적용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 ☐ 청년 상시근로자수 계산 ○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 합계 ÷ 해당 과세연도 월수

종 전	개 정
<신 설>	☐ 청년외 상시근로자수 계산 ○ 상시근로자수 - 청년 상시근로자수
<신 설>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MIN(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계산

(2) 개정이유

-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수와 순증인원의 계산 방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상당액(영§2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청년 상시근로자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사회 보험료율 ○ 청년 외 상시근로자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사회 보험료율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을 적용

(2) 개정이유

-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1인당 평균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당 실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명확화
(법§94, 영§94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 공제(7%) 대상 ○ 무주택 종업원 임대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 보육시설 (1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시설 ○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 공제대상 확대] (좌 동) ○ 종업원용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 ☐ 공제대상 명확화 ○ 종업원을 위한 휴게실, 체력 단련실, 샤워시설, 목욕시설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

(2) 개정이유

-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
 - 고열 작업장 등 특수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업무효율 향상 및 복지 증진을 통한 기업생산성 향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공제세액
계산방법 보완(영§94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원용 임대주택·기숙사와 다른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의 공제세액 계산방법 ○ 주택 등 취득금액 × 7% × (임대주택 등의 총 연면적 ÷ 주택 등의 총연면적)	□ 사원용 임대주택 등 용도로 미분양주택 취득시 공제세액 계산방법 보완 ○ 주택 등 취득금액 × 7% (미분양주택의 경우 10%) × (임대주택 등의 총 연면적 ÷ 주택 등의 총연면적)

(2) 개정이유

- 근로자복지증진시설로 사용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10.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해 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세제지원(법§104의18④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과 사전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산업정보학교 등 고등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학교 ** 산업체맞춤형·취업인턴직업교육훈련계약 등 ○ 공제율 :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준용 ** 대기업 3~6%, 중소기업 25% (당기분 기준) ○ 일몰 : '13.12.31. ※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현행 조특법 §104의18①)에 대해서도 일몰('13.12.31.) 설정

(2) 개정이유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관련 사전취업계약 및 공제대상 비용의 범위(영§104의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전취업계약 등의 범위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 교육훈련계약 또는 취업인턴 직업교육 훈련계약
<신 설>	☐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2) 개정이유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 ‘취업계약 입학제도’, ‘취업인턴제’ 참여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Ⅱ. 지속성장 지원

1.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법§9, 규칙§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의 정의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 과학기술분야에 한정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신 설>	☐ R&D 정의에 서비스 R&D 추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11개 업종) 포함 ☐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 ○ (좌 동) - 단,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비로 한정

(2) 개정이유

-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의 R&D 세액공제를 서비스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단,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R&D 세액공제 대상에 위탁·재위탁 R&D 추가(영§9①,②, 별표 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			□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구 분	일반R&D	신성장·원천기술 R&D	구 분	일반R&D	신성장·원천기술 R&D
자체연구개발	○	○	자체연구개발	○	○
위탁 R&D*	○	×	위탁 R&D*	○	○
재위탁 R&D	×	×	재위탁 R&D	○	○
공동연구개발	○	×	공동연구개발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경우 수탁·재수탁·공동연구하는 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2) 개정이유

-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
 - 다만, 위탁·재위탁·공동연구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수탁 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7·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 신성장동력(10개 분야 46개 기술) -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 원천기술(18개 분야 45개 기술) - 연료전지·2차전지, 원자력, 인공위성, 디스플레이 등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신성장동력(1개분야, 16개 기술 추가) - 풍력·지열에너지, 입체영상, IT융합 추가 ○ 원천기술(3개 기술 추가) - 차세대 신공정 LCD 추가

(2) 개정이유

- 미래 성장동력인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및 3D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산업 육성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6.3.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4.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방식 적용대상 명확화(법§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 증가분 방식 : 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의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의 40%(중소기업 50%) ○ 당기분 방식 : 3~6%(중소기업 25%)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좌 동) - 단, 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

(2) 개정이유

- 과거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부 예규·심판례 등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문제점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증가분 방식 R&D 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영§9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 까지 4년 이상인 경우 : 직전 4년 R&D비용 합계액/4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 까지 4년 미만인 경우 : 4년으로 환산한 금액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합리화 ○ 직전 4년 R&D 비용 합계액 ÷ 직전 4년 중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 수* 합계 * 단, 과세연도의 수가 4이상인 경우 4로 함

(2) 개정이유

- 현행 증가분 방식의 R&D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R&D 비용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기간이 48개월(4년) 이상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비교

연도별 R&D 비용					4년 평균 R&D 비용			
Y-5년	Y-4년	Y-3년	Y-2년	Y-1년	종 전		개 정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8,000/4	2,000	=8,000/4
2,000	0	0	2,000	2,000	1,000	=4,000/4	2,000	=4,000/2
0	0	0	2,000	2,000	2,000	=(4,000÷2×4)/4	2,000	=4,000/2
0	0	2,000	0	2,000	1,333	=(4,000÷3×4)/4	2,000	=4,000/2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영 별표 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 아래 기관과의 위탁·공동연구비용 ①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 ※ 연구분야의 제한 없음 ②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등 ④ 한국디자인진흥원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조정 ○ 아래 기관과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위탁·재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 ③ (좌 동) ※ 서비스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허용 <삭 제>

(2) 개정이유

- 「조특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의 범위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되, 서비스 R&D의 경우 자체연구개발에 대해서만 R&D세액공제를 허용
- 한국디자인진흥원을 R&D 수탁기관에서 제외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 개별 기업으로부터 R&D 또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탁받는 경우
 - 동 규정이 없어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별표 6 제1호 사목)에 해당하여 R&D 세액공제가 가능
 - * 「조특법」 통칙 10-9...1(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R&D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정(영 별표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자체연구개발비 - 인건비 - 전분품, 원재료비 등 ○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소화개발비, 기술지도비용 등 ○ 과학기술 도서·간행물 구입비 ☐ 인력개발비의 범위 ○ 대학·연구기관·직업훈련 기관 등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연구개발비의 범위 조정 ○ 자체연구개발비 - 인건비(퇴직소득·퇴직급여 충당금 제외) -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 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삭 제>

(2) 개정이유

- 통칙에 규정된 인건비 범위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
- 과학도서·간행물,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시설 조정
(법§25의2, 영§22의2, 규칙 별표 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 : '11.12.31. ○ 공제대상 - 에너지절약형 시설 - 중질유 재처리시설 - 절수설비·기기 -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 : '13.12.31.(2년 연장) ○ 공제대상 조정 - 에너지절약형 시설 조정 * (제외)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탈수기 등 22개, * (추가) 고효율 변압기, 고속 터보 블로어 등 18개 <삭 제> - (좌 동) - (좌 동)

(2) 개정 이유

- 에너지 절감,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의 일몰은 연장하되,
 - 기존 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범용화된 시설 등은 제외하고, 에너지 절약 효과를 고려하여 대상시설 재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중질유 재처리시설 : 2012.2.2.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
부터 적용
- 에너지 절약형 시설 : 2012.2.28.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9.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법§104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 ① 또는 ② 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 -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중이 5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 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 : 3%	☐ 세액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 : ① 또는 ② ① (좌 동) -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중이 3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 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 : (좌 동)

(2) 개정이유

- 제3자 물류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 §46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1년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 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사후관리: 시설양도후 3년간 제3자 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 : '13.12.31.

(2) 개정이유

- 물류기업의 구조개편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제외(규칙 §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 주주인 임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신 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좌 동)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Ⅲ. 지역발전 지원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문정리(법§12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 대상기업 - 첨단기술기업(지경부장관 지정) - 연구소기업(승인제) ○ 지원내용 :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 감면업종 : 생명공학 관련 업종 등 ○ 일몰 : '12.12.31.	- 연구소기업(등록제) * 승인제 → 등록제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

(2) 개정이유

- 연구소기업 설립에 관한 근거법률*이 개정('09.12.30.)됨에 따라 조문정리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R&D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확대(영§11의3, 영§116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감면 대상업종 ○ R&D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중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한해 세액감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	☐ 세액감면 대상업종 ○ (좌 동) - 정보통신산업 범위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추가

(2) 개정이유

-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 이전에는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였으나, 동법 개정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세액감면대상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3.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지원확대(법§60, 법§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0) * 수도권과밀억제권·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외·광역시외 ○ 공장 양도차익의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일몰기한 : '11.12.31.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6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본점·주사무소 대지·건물 양도 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 이월 결손금)× 감면대상비율 $\left(\frac{\text{지역이전에 소요된금액*}}{\text{본점 등의 양도가액}} \right)$ *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소재 법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액 또는 임차보증금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본점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액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본점의 이전비용 ○ 일몰기한 : '11.12.31.	☐ 과세특례대상 조정 및 일몰 연장 ○ 광역시* →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 일몰기한 : '14.12.31. ○ 일몰 연장 : '14.12.31.

(2) 개정이유

-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 업종 기준의 법령 명확화
(법§60③, 법§63⑤, 법§63의2⑩, 영§5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 특례 유형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법 §60) ○ 수도권과밀내의 중소기업 공장을 수도권과밀밖으로 이전시 7~10년간 감면(법 §63) ○ 수도권과밀내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7~10년간 감면(법 §63의2)	(현행과 같음)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영§54②)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 ○ 법에 위임규정을 명확히 규정

(2) 개정이유

- 공장을 지방이전시 영위하는 업종의 분류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등 감면대상 제외업종 중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명확화(법§63의2①, 영§60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 업종 에서 제외	○ 소비성서비스업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명확히 규정 - 조특령 §29③의 소비성서비스업

(2) 개정이유

- 지방이전법인의 제외업종인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를 명확히
시행령에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법§63의2①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 · 법인세 세액감면 일몰을 3년 연장 ○ 법인 공장 · 본사의 지방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外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 (7년간 100%,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11.12.31.	○ 일몰연장 : '14.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지방이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을 3년 연장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법§6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시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5년거치 5년 분할 과세) ○ 적용기한 : '15.12.31.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대상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지원내용 :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 '15.12.31.

(2)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① 양도차익 법인세 : 2012.1.1.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② 법인세 감면 : 2012.1.1. 이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계산방법 등 규정
(영§58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① (양도차익 계산방법) §57④~⑥* 준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의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 등 양도가액 ② (사후관리 요건) §57⑦~⑩* 준용 * 다음 요건 위반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익금산입 ⑦ 이전일로부터 2년내 양도, 양도일로부터 3년내 이전 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무소 본사 업무 인원 < 본사업무인원의 50% ⑨ 양도대금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 취득(또는 임차)하거나 1년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 ⑩ 익금산입액 계산방법 ③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 제출방법) §57⑪ 준용* * 법인세 신고시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보고서(또는 이전계획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신 설>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정 ○ 고정자산처분익·유가증권처분익·수입이자·수입배당금·자산수증익

종 전	개 정
<신 설>	☐ 사후추징 요건의 규정 ○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이진후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신 설>	☐ 급여와 임원의 범위 및 사후추징금액 납부방법 등 규정 ○ 급여 :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 ○ 임원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20①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 추징금액 납부방법: 사후추징 요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2) 개정이유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은 공공기관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기존의 지방이전 세제지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규정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① 양도차익 법인세 관련 : 2012.1.1.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② 법인세 감면 관련 : 2012.1.1. 이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9. 과밀억제권역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법§6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외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 (7년간 100%,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11.12.31.	○ 일몰연장 : '14.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지방이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을 3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법§6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 · 법인세 세액감면 ○ 법인 공장 · 본사의 지방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 → 수도권외 ○ 낙후지역으로 이전시 10년간 (7년간 100%, 3년간 50%),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7년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11.12.31.	○ 일몰연장 : '14.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지방이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일몰을 3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시 급여총액 적용방법 명확화(법§63의2②2호나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본사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 감면내용 - 법인세 등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소득 : ①×Min(②,③) ① 당해연도 과세표준 ②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법인 전체인원 급여총액 ③ 이전 후 본사 근무인원/법인 전체 근무인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

(2) 개정이유

- 지방이전법인이 감면대상소득을 계산시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을 근로제공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급여 지급일로
잘못 적용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화
- * 예 : 근로 제공기간 5.1~5.31, 급여 지급일 6.5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에 대한 규정 명확화 (영§56⑤, 영§60⑥, 영§60의2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시행령 §54②에 일괄 규정	(현행과 같음) ○ 조특법상 위임 조문별로 각각* 규정 * 조특법 §60 → 조특영§56⑤ 조특법 §63 → 조특영§60⑥ 조특법 §63의2 → 조특영§60의2⑩

(2) 개정이유

- 당초 조특령 제54조 제2항에 일괄 규정하였던 공장의 지방 이전시 영위업종 기준을 조문별로 각각 규정
- ※ 조특법 §60③, §63⑤, §63의2⑩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3.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법§85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 적용기한 : '11.12.31.	○ 기한연장 : '14.12.31.(3년 연장)

(2) 개정 이유

-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법§121의22, 영§116의27, 규칙§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 ○ 지원대상 : '13년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 '13.12.31. ☐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2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 ☐ 총 세제지원 한도 (①+②) ①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의 50% ② Min(㉠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 투자누계액의 20%) * 투자누계액 산정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 해당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무형 고정자산(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 ☐ 기타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의 사후추징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임원, 최대주주 등 제외 ※ 추징세액 = 고용기준에 따른 감면세액 -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1천만원

(2) 개정이유

-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지원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감면 대상기업을 구체화하고, 여타특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세제 지원 기준 신설
 - 투자금액, 고용유지 등을 지원기준으로 두고 있는 여타 특구(연구개발 특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준 설정
 -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총지원한도·고용인센티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누계액의 범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IV. 기타 지원제도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휴양업·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출판인쇄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39개 업종 ○ (감면율)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하여 5~30% 감면 ○ (일몰기한) '11.12.31.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일몰연장 : '14.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측면에서 일몰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법§104의25, 영§104의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 : 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공급자 ○ 세액공제율 :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 허용 ○ 일몰 : '13.12.31.

(2) 개정이유

-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효과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범위 개선(법§12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 배제 사유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 경정하는 경우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 배제 사유 ☐ (좌 동)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2) 개정이유

- 범칙사건 조사 등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배제하기 어려워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점 감안
- 「국세기본법」 §48의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제외 (법§132, 영§126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 세액공제 범위 ○ 중소기업 : R&D 비용 전액 * R&D 인력 인건비, 원재료비 등 ○ 대기업 :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에서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제외 ○ 중소기업 : (좌 동) <삭 제>

(2) 개정이유

-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지원하고 있는 점,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 조정(규칙 별표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설비, 가공 및 생산 자동화설비, 원료·부품 등 연속·반복 공급 및 이송설비, 자동계측·계량설비, 자동보관설비, 로봇 및 캠(CAM)설비 ○ 전기통신설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조정 <삭 제> * 단, 시설물 안전관리·환경오염관리 등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설비는 세액공제 유지 ○ (좌 동)

(2) 개정이유

- 자동화 시설 등 고용대체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 자동화시설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범용화된 시설에 해당하는 점 고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8.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영§104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간 4만원(법인세·소득세 2만원, 부가가치세 2만원) 세액공제 ○ 세무사·회계사 : 연간 300만원 ○ 세무·회계법인 : 연간 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세무사·회계사 : 연간 400만원 ○ 세무·회계법인 : 연간 1,000만원

(2) 개정이유

-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나,
 - 2005년 이후 전자신고율이 정체된 점, 동 제도를 통해 과세관청의 신고서 입력비용·오류 축소 등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동 세액공제 한도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법§8의3, 영§7의2 별표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7% 세액공제제도 ○ 목적 :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기금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 지원 - 시험용시설 활용지원, 견본품·부품 구입지원 등 <추 가> ② 인력개발 지원 ③ 생산성 향상 지원 ④ 해외시장 진출 지원 <추 가>	□ 대상 범위 확대 ○ 목적 :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추가 ○ 기금 사용용도 추가 ① 연구개발 지원 -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인력 파견 ② ~ ④ (좌 동) 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술도입지원 등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8.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법§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 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 추가 * 등록 후 3년 이내 출자금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예 :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농림수산 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제조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2) 개정이유

-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9.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 특례(법§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투자회사 등이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 양도차익 등이 비과세되는 출자 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

(2) 개정이유

-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학 재원 확충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학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7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학재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상 :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방법 : 수익사업소득의 80% 손금산입 <추 가>	○ 지출액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용시 손금산입한도를 100%로 인상

(2) 개정이유

- 장학사업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용 재원 확충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법§136, 영§13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 일반 접대비 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한도율* <table border="1"> <tr> <th>수입금액</th><th>적용한도율</th></tr> <tr> <td>100억원 이하</td><td>0.2%</td></tr> <tr> <td>100~500억원</td><td>0.1%</td></tr> <tr> <td>500억원 초과</td><td>0.03%</td></tr> </table> ☐ 문화접대비 범위 ☐ 적용기한 : '11.12.31.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최소금액 기준 하향 조정 : 3% → 1% * 앞으로는 총접대비의 1% 초과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등록문화재*의 입장권 구입 추가 * 예 : 국보, 보물, 사적 등 ☐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2) 개정이유

-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 기준을 낮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실효성 제고하고,
-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접대비 범위에 추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 연장 : 2012.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최소기준 하향조정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문화접대비 범위확대 : 2012.2.2.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범위 확대(영§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 표1 (규모기준, 예 : 제조업 300명 미만)의 변경 ○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30% 이상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 <신 설>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추가 (좌 동) ○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회사 기준 변경

(2) 개정이유

- 관계회사제도* 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규모기준 변경,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직·간접 소유기준 변경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예기간을 적용할 필요

*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상시근로자수·매출액·자산총액 등)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는 금전대여의 범위(영§104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외직접투자의 범위 ☐ 외국자회사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10.12.30. 동 시행령 개정전에는 금전대여투자의 요건을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규정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는 금전대여의 범위 ☐ (좌 동) ☐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 공동으로 외국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포함

(2) 개정이유

-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에 대한 금전대여 요건을 지분투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상환 기간 5년 이상'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6.3.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분야

[국제조세분야]

【개정안 주요내용】

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가.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1.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관세 당국간 상호 조정 근거 마련
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절차 신설
3.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관세 당국간 과세 정보 교환
4. 국세-관세 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부과척기간 특례 마련
5.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비

1.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2.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제도 및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
3.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 상향 조정
4.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
5.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개선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
2.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완화
3. 특정외국법인 지분 간접 보유시 익금불산입 기간제한 폐지

라. 이전가격세제 관련 규정 보완

1. 이전가격 관련 신고자료 제출기한 연장허용
2.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 관련 반환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 법령화
3. 이전가격 관련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규정 명확화

- 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공표
- 바.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 사.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상황 보고서식 신설
- 아. 금융정보 제공요구 방법 개선 및 조문정리
- 자. 과소자본세제 관련 인정배당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명확화

Ⅱ.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1.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2.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명확화
4. 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보완
5.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양도 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6. 자료제출 대상 해외현지법인 범위 확대
7. 외화표시어음 등의 이자면세 대상 금융기관 명칭변경
8. 기타 인용조문정리(법인세법 시행령)
9. 기타 인용조문정리(소득세법 시행령)

Ⅲ.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관련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일몰연장
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
3. 증자의 조세감면 개선
4. 조세감면 한도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의 합리적 조정
5.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등 판정기준 보완

【국제조세분야 개정일자】

- 법 료 : 제11126호(2011.12.31.)
- 대통령령 : 제23600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72호(2012.2.28.)

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가.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1.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관세 당국간 상호조정 근거 마련(국조법 §10의2, 국조령 §1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수입시 관세 신고가격에 대한 세관의 경정처분에 따라, 국세(법인세,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있는 경우 ○ 과세당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 ※ 관세법에도 대응조문 신설

(2) 개정이유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최초로 관세를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절차 신설

(국조법 §10의3, 국조령 §17의3, §1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납세의무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당국의 결과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 * 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 ○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 - 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을 받아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내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신 설>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7~10명으로 위원회* 운영 * 민간위원 3명 이상 포함,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권고안 의결
<신 설>	□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신청 및 조정심의 배제 ○ (조정신청방법) 납세의무자의 조정신청서 제출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 - 과세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 - 조정 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의 補正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 요구 ● 보정기간은 조정기간(90일)에 불산입

종 전	개 정
	○ 조정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 신청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정상가격 산출방법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사전승인된 거래인 경우 -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거래인 경우 -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심의가 곤란한 경우

(2) 개정이유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의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부터 시행

3.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관세 당국간 과세정보 교환 (국조법 §11의 2, 국조령 §1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등을 위한 관세의 과세정보 또는 자료 요구 ○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 관세법에도 대응조문 신설

(2) 개정이유

- 과세정보 교환을 통해 국세 및 관세 부과·징수의 원활화와 과세가격조정의 정확성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 이후 최초로 정보를 요구하는 때부터 적용

4. 국제-관세 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마련 (기본법 §2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조세불복청구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 1년간 ○ 후발적 경정청구, 유보소득합산 과세에 따른 간주배당금액의 실제배당시 경정청구 : 2개월 <추 가>	☐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 ○ (좌 동) ○ (좌 동) - 국제-관세 간 과세조정을 위한 경정청구(국조법§10의2), 국제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국조법§10의3) : 2개월

(2) 개정이유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제도 신설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기본법 §5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복청구기간 계산의 특례* * 불복청구기간에 불산입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진행시(국조법§24①) <추 가>	☐ 특례 추가 ○ (좌 동) ○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절차 진행시(국조법§10의3) : 조정신청일~결과통지일

(2) 개정이유

-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절차 진행기간은 불복청구기간에 불산입
하여 납세의무자의 불복청구권 보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
청하는 분부터 적용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정비

1.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국조법 §34, 국조령 §4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의무자 :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 ○ 신고의무 면제(①, ② 모두 충족) ① 국내 거주기간 : 1년 이하 ② 재외국민 : 정의 없음 ※ 신고시기 : 당해연도 해외계좌보유분에 대해 익년도 6월중 신고	○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① 국내 거주기간 :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기산 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 ※ 거주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② 재외국민 정의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 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 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개정이유

- 신고의무 면제 대상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2.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제도 및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 (국조법 §37, 국조령 §5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현행 과태료 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소(미) 신고금액</th><th>과태료 부과기준</th></tr> </thead> <tbody> <tr> <td>20억 이하</td><td>과소(미)신고금액 × 3%</td></tr> <tr> <td>20억 초과 50억 이하</td><td>6천만원 + 20억 초과금액 × 6%</td></tr> <tr> <td>50억 초과</td><td>2억 4천만원 + 50억 초과금액 × 9%</td></tr> </tbody> </table> *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 가능(단, 가중하는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10% 한도 적용)	과소(미) 신고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 이하	과소(미)신고금액 × 3%	20억 초과 50억 이하	6천만원 + 20억 초과금액 × 6%	50억 초과	2억 4천만원 + 50억 초과금액 × 9%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제도 신설 ○ 수정신고 요건(①~③ 모두 충족) ①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 ②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신고한 경우 ③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 제출 ○ 기한 후 신고 요건 : 신고기한내 미신고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서 제출 □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 감면) ○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 6개월 이내 : 100분의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20 - 1년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10 ○ 신고기한 후 신고 - 1개월 이내 : 100분의 50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과소(미) 신고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 이하	과소(미)신고금액 × 3%								
20억 초과 50억 이하	6천만원 + 20억 초과금액 × 6%								
50억 초과	2억 4천만원 + 50억 초과금액 × 9%								

(2) 개정이유

- 자기시정 기회 제공 및 과태료 감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로서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 기한 경과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3.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 상향 조정(국조령 §51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20억이하 : 3% ○ 20억 초과 50억 이하 : 6천만원 + 20억 초과금액 × 6% ○ 50억 초과 : 2.4억 + 50억 초과금액 × 9% ※ 과태료 한도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신고대상 연도별로 과태료 한도 계산)	☐ 과태료율 상향 조정 ○ 4% ○ 8천만원 + 20억 초과금액 × 7% ○ 2.9억 + 50억 초과금액 × 10%

(2) 개정이유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4.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국조령 §50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해외 금융계좌 신고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추 가>	□ 신고제외 대상에 다음을 추가 - (좌 동) -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 대상 계좌 :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 예탁결제원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2) 개정이유

-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에 투자한 경우 현행 상증법에 의해 보유내역이 파악 가능한 점을 감안

※ 국내에서 해외주식 거래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주식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상증법§82③)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5.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기본법 §84의2, 기본령 §65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 * 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급금액: 한도 1억원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납부금액의 2~5%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과태료금액</th><th>포상금 지급률*</th></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td><td>5%</td></tr> <tr> <td>2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td></tr> <tr> <td>5억원 초과</td><td>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td></tr> </tbody> </table> *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	과태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과태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2) 개정이유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적발가능성 제고를 통해 성실신고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개선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확대(국조법 §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용대상 지분보유 요건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 *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 중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경우로 적용대상 확대

(2) 개정이유

- 국제적 지분요건 기준*과 동일하게 제도운영

*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1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완화 (국조법 §18의2, 국조령 §3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세율 국가 소재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면제 요건 ○ 모든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지역*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로 제한 * EU, 중국과 홍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해외지주회사는 배당간주규정 적용 배제 ① 같은 지역 소재 자회사* 주식(4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배당기준일 현재) *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 ② 자회사로부터의 수동소득(이자, 배당)/소득금액* $\geq$ 90% * 능동적 사업소득 제외(도매업, 금융·보험업, 임대업 등 법§18 ①각호 사업의 소득은 포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면제 요건 완화 ○ 해외지주회사가 같은 지역 이외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 해외지주회사 소득금액 중 같은 지역 소재 자회사로부터의 수동적 소득금액(이자, 배당)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 예시 (화살표는 지배방향) > * (지배요건) 40% 이상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 <pre> graph TD A[한국 모회사] -- 특수 관계 --> B[아일랜드 지주회사] B --> C[모로코 판매자회사] B --> D[영국 판매자회사] B --> E[네덜란드 판매자회사] B --> F[폴란드 제조자회사] subgraph "유럽연합(= 같은지역)" B D E F end </pre> ※ (설명) 모로코에 판매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같은 지역내 자회사로부터 소득수취 요건(90% 이상 이자·배당) 충족시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합산과세 배제 가능

종 전	개 정
☐ 자회사 요건 ○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지역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 법 제17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	☐ 자회사 요건 중 “같은 지역 등” 요건 삭제 <삭 제> (좌 동)

(2) 개정이유

- 일부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해외 지주회사의 전체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 해소

* 저세율(실효세율 15%이하)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특정외국법인 지분 간접 보유시 익금불산입 기간제한 폐지 (국조령 §36의5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유보 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된 후, 실제 배당받은 경우 익금불산입 방법 ○ 특정외국법인 지분 직접보유시 - 기간제한없이 익금불산입 ○ 특정외국법인 지분 간접보유시 - 소급하여 10년내 배당간주금액 범위내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기간제한(10년) 폐지

(2) 개정이유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 지분을 직접 보유시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이 기 폐지('10.12.27. 국조법§20① 개정)된 것과 형평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라. 이전가격세제 관련 규정 보완

1. 이전가격 관련 신고자료 제출기한 연장허용(국조령 §7, §14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안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는 확정신고시 제출 <신 설>	☐ 제출기한 연장 허용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연장 승인 신청 - 1년 범위 내 제출기한 연장 승인 * 부득이한 사유: 화재·재난·도난, 사업상 중대위기, 장부·서류 압수 또는 영치 등 (국조령 §21)

(2) 개정이유

- 이전가격 관련 신고자료에 대하여도 국제거래명세서*와 동일하게 제출기한 연장 허용
- * 국조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한 연장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 관련 반환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 법령화(국조령 §15의2, 국조칙 §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현행 국세청장 고시와 동일한 이자율 적용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령화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경과조치) 2012.2.2.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이전가격 관련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규정 명확화(국조령 §5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 규정상 이전가격 자료를 기한 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조법§12) ○ 시행령에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만 과태료 부과(국조령 §51①) ☐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국조령 제51조 제1항 각 호(1~3호) 별로 일괄적용 하는지 개별 자료 별로 별도적용 하는지 불명확* * (예)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자료 중 2건 이상 미제출시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하는지 여부 ※ (과태료)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자료 미제출(5천만원), 제2호의 자료(3천 만원), 제3호의 자료(7천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불일치 해소 ○ 거짓의 자료 제출을 추가 ☐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 제51조 제1항 각 호 별로 일괄 적용* * 각 호에 열거된 자료를 2건 이상 미제출시에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

(2) 개정이유

- 법률 및 시행령 간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치시키고, 자료
미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상호합의 공표(국조법 §2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호합의)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국조법 §2①5) * 일반적 상호합의 ** 구체적 상호합의	□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반적 상호합의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공표 ※ OECD 상호합의 실무 매뉴얼의 권장사항 반영

(2) 개정이유

- 조약 적용의 세부지침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향후 분쟁여지를 사전에 예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 이후 최초로 하는 상호합의부터 적용

바.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국조법 §31의3, 국조령 §5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조법§31②) 정부는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에 거주자·내국법인 등의 조세와 관련된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종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금융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조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 OECD 정보교환 기준요건 반영

(2) 개정이유

- 금융정보 획득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 이후 최초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상황 보고서식 신설
 (국조령 §39③, 국조칙 §12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 매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분기별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 및 진행현황 보고서* 제출 * 보고서식 미비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음	○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 및 진행현황 보고서식 신설

(2) 개정이유

-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 및 진행현황 보고서를 신설하여 상호합의 업무 관련 절차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아. 금융정보 제공요구 방법 개선 및 조문정리(국조령 §47, §4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정보의 제공요구 방법 ○ 체약상대국의 정보교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 체약상대국이 제출한 금융정보 요청서 사본을 첨부(영§47)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세무조사 협력의 주체 ○ 법에서는 ‘권한 있는 당국*’으로 규정(법§31, §32**)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는 자 ** 금년도 개정법률안에 ‘권한 있는 당국’으로 반영 ○ 시행령에서는 ‘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규정(영§47, §48)	○ 금융정보요청서 사본 첨부 규정 삭제 ○ ‘권한 있는 당국’으로 일원화

(2) 개정이유

- 국가간 정보교환에 적용되는 비밀유지 기준에 부합되도록 금융정보 제공요구 방법 개선
 - OECD 글로벌포럼에서 실시중인 정보교환 관련 각국 국내법 평가와 관련하여 정보교환 요청 자료의 비밀유지 여부도 평가대상에 해당
 - OECD 글로벌포럼 Peer Review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체약상대국이 제출한 금융정보요청서 사본 첨부 규정 삭제

※ 체약상대국이 제출하는 금융정보요청서에는 정보요청 배경, 사실관계, 관련 납세자 및 과세문제와의 관련성이 상세히 기술

— * 글로벌포럼 Peer Review 평가기준(C.3.2) —

“피요청국이 요청국에 직접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도, 양국은 해당 정보에 대한 요청, 해당 정보 관련 배경문서 및 기타문서 (양국간 및 일방국내 세무당국간 의사소통내용 포함)도 동일하게 비밀유지할 것“

- 국조법과 시행령간의 용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으로 용어 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자. 과소자본세제 관련 인정배당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명확화(소득령 §19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 <추 가>	□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에 추가 ○ (좌 동) ○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 ※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지급보증 포함)이 국외 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함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배당처분, 지급보증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기타 사외유출 처분

(2) 개정이유

- 과소자본세제와 관련된 인정배당에 대하여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필요하다는 심판례 반영(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처분하는 소득부터 적용

Ⅱ.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1.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확대 (조특법§104의6, 법인법 §57, 조특령 §104의3, 법인령 §9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조세조약 체결* : 100% * 체결된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규정된 경우(19개국) ○ 조세조약 미체결** : 50% ** 조약 체결국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없는 국가(58개국) 포함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무관하게 100% 인정

(2)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조특법 §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화표시채권 이자 면세 ○ 발행주체: 국가·내국법인 등 ○ 발행물: 외화표시채권 * 국내발행 + 국외발행분 면세 ○ 적용배제: 거주자,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는 과세 ☐ 외화표시어음 등의 이자 면세 ○ 발행주체: 은행·산은·수은·기은·농협·수협·정책금융공사·중금사 ○ 발행물: 외화표시어음, 외화예금증서 * 국외발행물만 면세 ○ 적용배제: 거주자,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는 과세	○ 면세범위 축소: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은 과세전환 ○ 적용배제 대상 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적용배제 대상 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비거주자 등의 외화표시채권 등 이자소득 면세제도 개선방안

구 분	외화표시채권	외화표시어음 등
국내발행	면세→과세	과세유지
국외발행	면세유지	면세유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면세→과세	면세→과세

(2) 개정이유

-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발행 외화 표시채권에 대해 과세전환
- 국내은행 등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 과세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명확화

(법인법§98의6, 소득법§156의6, 법인령 §138의7, 소득령 §207의7)

(1) 개정내용

①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종 전	개 정
<신 설>	① 투자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3년 후 새로 제출, 3년 내 변동시 변동내역 제출 - 해외발행 예탁증서의 외국인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의무 면제 ○ 연금·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①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②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한·호주 개정 조세조약('10.10.8 가서명)에서는 90% 이상의 지분을 계약 당사국 거주자가 보유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 적용

②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종 전	개 정
<신 설>	① 국외투자기구*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 국외에서 설립되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행위를 하는 단체 ① 국외사모투자기구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실질귀속자 명세 작성 방법 - 국외투자기구(1차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 -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2차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 국외투자기구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1차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②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승인을 얻은 국외투자기구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종 전	개 정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 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절차 간소화 내용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거주지국 정보를 토대로 제한세율 적용

③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④ 자료보관 및 변동 내역 제출 의무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자료의 보관 의무(5년) 및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요구시 제출 의무 등 부담

⑤ 정상과세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관련 사항

종 전	개 정
<신 설>	☐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시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 경정청구 보정요구 ○ 세무서장은 청구내용의 보정필요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 요구 가능

(2) 개정이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 2012.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법인법 §98의2, 법인령 §13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소재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증여자가 수입금액의 20%를 원천징수(법인법 §98 ① 3호) <신 설>	○ 증여자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시 - 수증인이 수입금액의 20%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법인증여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 ※ 신고서 제출기관 -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기타) 해당 자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2) 개정이유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소재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증여한 후 원천징수 불이행시 조세채권 확보장치 마련
 - 증여자가 원천징수 불이행시 국내소재 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여자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
 - 따라서, 국내 소재 자산을 증여받은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신고·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권 확보 필요
 - * 수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증법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어 조세채권 확보 가능(상증법 §2①2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5.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양도 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법 §126, 법인법 §9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수입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조정 * 국조법 제5조, 국조령 제4조를 준용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범위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추 가>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은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 * 거주자 등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과 일치

※ 현행 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체계

구분	비거주자(소득법§126③)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법인법§92②2호)	거주자 (소득법§101, 소득령§167) 내국법인(법인법§52, 법인령§88)
부당행위 부인요건	정상가격 > 거래가격	(시가 - 거래가액) ≥ [3억원 OR 시가× 5%]

(2) 개정이유

- 비거주자에 대해 정상가격을 적용하는 요건이 거주자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자료제출 대상 해외현지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16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대상)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투자금액 1억원 이상)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 (제출자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자료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대상추가)실효세율 15% 이하인 국가·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이상 간접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 ※ 개정내용 도해 [현행] 자회사만 적용 ⇒ [개정] 손회사까지 확대 1억이상 투자 ⇒ 실효세율 15% 이하 ⇒ 직접소유 10% 추가 간접소유 10%

(2) 개정이유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집행의 실효성 제고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는 자회사·손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직간접 소유비율이 20% 이상('12년부터 10% 이상으로 확대)인 경우 적용되나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자회사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손회사에 대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 발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외화표시어음 등의 이자면세 대상 금융기관 명칭변경 (조특령 §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화표시어음 ·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 수수료 면세 ○ 발행주체 : 은행 · 산은 · 수은 · 기은 · 농협 · 수협 · 정책금융공사 · 중금사 ○ 발행물 :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	○ 발행주체 명칭변경 - 농협 → 농협은행

(2) 개정이유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현행 농업협동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농협은행으로 분할신설되는 점을 반영
- * 「농업협동조합법」 §134의4(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법률 제 10522호, 시행일 : '12.3.2.)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3.2.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부터 적용

8. 기타 인용조문정리(법인세법 시행령)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산림 소득이 삭제되었으나 ○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이를 계속 인용 □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가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변경되었으나 ○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여전히 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인용 □ 시행령 제68조 제3항이 제4항으로 변경(2010.12.30.)되었으나 ○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여전히 제68조 제3항을 인용 □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이 삭제(2002.12.30.)되었으나 ○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여전히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을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는 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시 지급시기에 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및 제192조** 준용하고 있으나 *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의 통지	○ 산림소득 삭제 ○ 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인용하도록 변경 ○ 제68조 제4항을 인용하도록 변경 ○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을 인용하도록 변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가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배당소득) 및 제145조의2(기타소득)로 수정·이관(2010.12.27.)되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를 준용(배당소득)하고 소득세법 제145조의2(기타소득)를 각각 준용하도록 변경
□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이 동조 동항 본문으로 이관('08.12.16.)되었으나 ○ 시행령 제138의3 제1항에서는 이를 계속 인용	○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인용하도록 변경
□ 법인세법 제98조 제6항이 제7항으로 변경('10.12.30.) ○ 시행령 제138조의4 제5항에서는 여전히 법 제 98조 제 6항을 인용	○ 법 제98조 제7항을 인용하도록 변경
□ 법인세법 제98조의3 제4항에서 '금융기관'이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09.12.31.) ○ 시행령 제138조의4 제4항에서는 여전히 '금융기관'으로 표기	○ '금융회사 등'으로 명칭 변경
□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변경('08.12.26.) ○ 시행령 제138조의4 제5항에서는 여전히 '증권회사'로 표기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명칭 변경

(2) 개정이유

- 조문정리 필요

9. 기타 인용조문정리(소득세법 시행령)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 제156조에서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이 각각 제6항, 제13항 및 제15항으로 변경되었으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3항에서는 여전히 법 제156조 제9항을 인용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법 제156조 제11항을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5항 및 제216조의2 제3항에서는 여전히 법 제156조 제5항을 인용 □ '07.2월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 추가하여 제8호의2가 신설되었으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3항 각호의 조문 인용에서는 이를 미반영 □ '09.2월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제2항이 제3항으로 변경되었으나 ○ 제4항에서는 여전히 제2항을 인용	○ 법 제156조 제13항 및 제15항을 인용하도록 변경 ○ 법 제156조 제6항을 인용하도록 변경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변경 ○ 제3항을 인용하도록 변경

(2) 개정이유

- 조문정리 필요

Ⅲ.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관련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일몰연장(조특법§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감면대상 -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연구원·전문기술인 등) -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감면혜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감면 *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 (일몰) '11.12.31.	○ (일몰연장) '14.12.31.

(2) 개정이유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유치를 통한 기술도입에 필수적이므로 존치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

(조특령 §116의2⑤)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이상 '03년 지정),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지정(이상 '08년 지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제자유구역內 외투기업의 조세 감면 (조특령 §116의2⑤) ○ (대상) 특정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이 투자되는 외투기업 ① 입주기업 <table><tr><th rowspan="2">업 종</th><th colspan="2">투자금액(천만불)</th></tr><tr><th>5년형*</th><th>7년형**</th></tr><tr><td>- 제 조 업</td><td>1</td><td>3</td></tr><tr><td>- 관 광 업</td><td>1</td><td>2</td></tr><tr><td>- 물 류 업</td><td>0.5</td><td>1</td></tr><tr><td>- R & D</td><td>0.1</td><td>0.2</td></tr><tr><td>- 의료기관</td><td>0.5</td><td>-</td></tr></table> * (5년형) 3년간 100%, 2년간 50% ** (7년형) 5년간 100%, 2년간 50% ② 개발사업자 (7년형 감면) *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투비율 50% + 개발사업비 5억불 이상 ○ 감면혜택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배당소득세 - 취득세, 재산세 - 관세* *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감면	업 종	투자금액(천만불)		5년형*	7년형**	- 제 조 업	1	3	- 관 광 업	1	2	- 물 류 업	0.5	1	- R & D	0.1	0.2	- 의료기관	0.5	-	○ 입주기업 감면대상에 ‘사업 서비스업 등’ 추가 ※ 투자금액기준 : 1천만불 이상(5년형 감면만 허용) * 사업서비스업 등 범위(기업도시 개발 구역 내 입주기업에게 적용되는 범위와 동일) - 엔지니어링사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 •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연시설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업 종		투자금액(천만불)																			
	5년형*	7년형**																			
- 제 조 업	1	3																			
- 관 광 업	1	2																			
- 물 류 업	0.5	1																			
- R & D	0.1	0.2																			
- 의료기관	0.5	-																			

(2)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목표*와 특성**상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업 등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조성이라는 목표와 세부목표로서 정보시스템·전략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유치 표방

** 경제자유구역은 산업용지 공급을 특징으로 하는 여타 산업단지와 달리 산업·상업·주거단지가 융합된 복합개발 방식을 취함

- 현행 제조업 중심의 감면으로는 서비스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9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 개선 방안으로 채택된 사항

- 추가대상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및 금액기준은 현행 기업도시 개발 구역의 감면범위 등 준용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감면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포함관계 비교

[8차 개정('00.3.1. 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사업서비스업(대분류 M)이 있었으나 9차 개정('08.2.1. 시행)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과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등으로 나뉨]

< 사업서비스업 >

- 광범위한 아웃소싱 활동 중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기능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가 되는 서비스산업으로서 부가가치 체계상 중간투입물로 활용(예.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리서치 등)

(출처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3. 증자의 조세감면 개선

1) 외국투자자가 배당받은 주식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제한 추가 (조특법 §121의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 (대상) 외측법상 외국인투자 (§2①[4]) - (투자유형) 내국법인 등에 투자하는 방법 •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 할 목적의 주식 등 취득 • 5년 이상의 차관 - (투자목적물) 주식 등 소유하기 위한 출자수단 • 대외지급수단 및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권리 • 국내 부동산 •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감면제한) 준비금·재평가 적립금 등 법정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외측법 §7①[1]) : 그 근거가 되는 소유주식 등 감면의 예에 따라 그 남은 기간만 감면 ※ 83.12.31. 도입(외자도입법 §16②)	□ 외국투자자가 배당받은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 제한 추가 ○ (감면제한 범위 확대) 외국 투자자가 이익처분에 의해 배당으로 받는 주식 추가 (외측법 §7①[4]) ※ (예) 5년형 감면사업의 3차년도에 주식배당 받아 재투자하는 경우 ⇒ 남은 기간(3년)간 감면부여 (1년 100% + 2년 50%) * (재투자) 다른 외투기업의 제2의 감면사업

(2) 개정이유

○ 외화도입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아닌 주식배당의 재투자에 대한 감면제한

- 배당받은 주식은 그 근거가 되는 주식에 대한 부종성을 감안하여 그 근거가 되는 주식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감면(감면제한)

* 배당받은 주식은 외투기업의 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감면을 제한(조특법 §121의4②)하고 있는 준비금·법정적립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유사

**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적립된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무상주교부),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주식배당

< 배당받은 주식의 재투자에 대한 감면제한 여부에 따른 효과비교 >

감면제한 ×	사업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외국인투자		100				100					
당초투자											
재투자											

감면제한 ○	사업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외국인투자		100				100					
당초투자											
재투자											

※ 만일, 동일 외국투자자가 감면기간 종료시점마다 배당받은 주식으로 다른 외투기업에 재투자하고 감면결정 받을 경우 외화도입 없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증자하여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감면종료사업의 자산을 증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범위 축소
(조특법 §121의4, 조특령 §116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자의 조세감면 ○ 감면혜택 - 감면기간 : 증자분에 대해 새로운 기간(5년·7년) 부여 - 감면세액 : $\textcircled{1} \times \textcircled{2} \times \textcircled{3}$ ① 법인세(산출세액) ② $\frac{\text{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text{총 과세표준}}$ ③ 감면비율 · 일반적인 경우 $\frac{\text{평균적인 감면비율}^*}{\text{총자본금}}$ * 증자전 외투자본금 × 감면율 + 증자시 외투자본금 × 감면율 · 증자 - 기타사업간 구분경리 $\frac{\text{증자분 외투자본금} \times \text{감면율}}{\text{증자분 총자본금}}$ ※ (문 제 점)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 감면종료 사업의 자산을 증자사업에 사용시 종료된 감면기간의 연장되는 효과 발생* * 종전 사업용 자산기여분만큼 감면 소득이 더 커져 감면세액 증가	-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정 : 일정한 사유 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자사업의 전체 사업용자산 중 증자시 새로 투자된 사업용 자산의 비중만큼만 감면부여 $\textcircled{1} \times \textcircled{2} \times \textcircled{3} \times \textcircled{4}^*$ 증자사업 개시일 이후 설치한 사업용자산 * $\frac{\text{증자사업의 총 사업용 자산}}$ 【주】 일정한 사유(①+②) (승) ① (대상감면의 종류)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감면 ② (종전사업의 자산 재사용) 종전 사업의 자산을 재활용한 경우로서 증자분사업의 총고정자산 중 재활된 종전사업자산의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2) 개정이유

- 최소 투자금액기준이 없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의 과도한 감면 배제
- 설비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종전 감면사업의 자산을 새로운 사업에 재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조세감면을 추가로 받는 사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증자하여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감면 한도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의 합리적 조정 (조특영 §116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 법인세액 × 총 과세표준 대비 감면소득률 × 감면비율* *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율(50%, 100%) □ 감면한도 (① + ②) ① 금액기준 : 외국인투자금액 × 50%* * 7년형 감면(대규모투자 ·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감면) : 70% ② 고용기준 : 상시고용인원 × 1천만원 (외국인투자금액 × 20%한도) ⇒ 감면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금액」의 범위: 자본금	○ 외국인투자금액의 범위조정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감자차익 - 감자차손)* * 외국인투자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한함

(2) 개정이유

- 실제 납입된 외국인투자금액 기준으로 감면한도 계산
 -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을 시가에 따라 발행(할증 또는 할인)하거나
외국투자자가 납입한 주식의 소각에 따라 감자차익 · 차손이 발생한
경우 감면한도를 자본금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납입된 외국인투자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판정기준 보완
(조특령 §116의2②, 조특칙 별지 제80호서식)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요건 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 ② 진부화 되지 않았을 것 - 국내 도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기산일 [i) • ii) 중 빠른 날] i)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 신고일 ii)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일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후 7일 이내 신고(외측령 §31①[1]) * 동 제도가 폐지('10.1.1.)됨에 따라 死文化 -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기도입 기술보다 진보된 것일 것 ③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 질 것	ii) 기술도입에 대한 사용료를 최초로 지급한 날 (=기술도입계약상 지급일)

(2) 개정이유

- 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판정기준 보완 필요
- 감면대상사업의 고도기술 등의 진부화 판단을 위한 기준 중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일’은 동 감면제도의 폐지*로 死文化
- * 과세권의 외국이양, 기술간 불형평을 이유로 2010.1.1. 폐지됨

- 고도기술 등의 국내도입 후 고도기술 등의 습득이 가능한 때인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최초로 사용료를 지급한 날*”을 새로운 판단기준일로 설정

* 기술도입계약상 최초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

(이유 : 내국인이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여 기술습득이 가능한 상태)

※ 감면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기재사항 추가

- (첨부서류) 해당 고도기술에 대한 사용 및 기술이전 계약서
- (기재사항) 외국인투자신고일 및 사용료의 최초 지급일*
- * 감면사유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인 경우에 한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령) 2012.2.2. 이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서식)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분야

[양도소득세분야]

【개정 한 주요내용】

I. 중산·서민층,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1.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2.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3.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4.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
5.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
6.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간(2년) 적용예외 경우 추가
7.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과세특례 보완
8.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시 재촌·경작 개념 명확화
9.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명확화
10. 대토농지 경작기간 계산 방법 명확화
1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12.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3.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택지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II. 부동산 거래활성화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3.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III.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1.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2.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4.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 비과세 의무보유기간 완화

5.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6.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7.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IV.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대상에서 ‘해외주식’ 제외
2. 「특별법」에 의한 수용시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사업용 인정 범위 조정
3. 농지의 환지처분시, 양도세 감면시 예외규정 신설
4.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세제지원
5.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의 매수청구·수용시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

V. 기타 제도개선

1.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
2. 환지처분에 입체환지처분 개념 도입
3.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기재가액 결정근거 마련
4.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
5. 자경농지, 농지대토 및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 등의 거주지 요건 명확화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제11146호(2012.1.1.)
- 대통령령 : 제23590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65호(2012.2.28.)

I. 중산·서민층,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1.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소득령 §167의3, 법인령 §9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 임대호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주택규모 : 149 m ² 이하 ○ 임대기간 : 5년 이상 ○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 1호] (좌 동)

(2) 개정이유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세·법인세) 2011.10.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령 §1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요건 :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 ※ 거주주택 비과세후, 임대주택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추가로 비과세 받는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2) 개정이유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0.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시 비과세제도 보완 (소득령§155②, 소득령§167의3⑤, 소득령§167의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양도세 지원대상)외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일반주택 : 양도세 중과배제 └ 거주주택* : 비과세 * 2년이상 거주 ☐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전, 일반주택 및 거주주택 양도시 사후관리 ○ 원칙 : 임대주택을 6월을 초과 하여 임대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비과세세액 등 납부 ○ 예외 : 공익사업용 수용 및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사용하는 것으로 봄 ※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 사후관리 규정 보완 ○ (좌 동) ○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예외 추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前6월부터 준공일 後6월까지의 기간은 6월초과여부 계산시 미포함

(2) 개정이유

- 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사실상 임대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재개발·재건축되는 분(시행일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중인 경우도 포함)부터 적용

4.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개선(소득령 §1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추 가>	○ (좌 동) ○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5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2) 개정이유

-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 (소득령§16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 양도시 ○ 중과세율(60%) 적용	□ 혼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제도 특례 신설 ○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이 된 경우 - 합가일로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주택수에 따른 세율 적용 * (1주택)일반세율(6~35%) 적용, (2주택) 2주택 중과세율(50%) 적용, (3주택 이상) 3주택 중과세율(60%) 적용 ** 단, 혼인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일 이후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 안됨

(2) 개정이유

- 헌법불합치 결정*('11.11.24.)을 반영하여 혼인에 대한 조세중립성 유지
- * (2009헌바146 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등 위헌소원)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헌법불합치 결정('11.11.24.)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6.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기간(2년) 적용예외 경우 추가(소득칙§7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 기존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의 경우로 그에 따라 양도된 경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②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신 설>	□ 2년 양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 추가 (좌 동) ④ 재개발·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 요청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2) 개정이유

-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7.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과세특례 보완(소득령 §155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밖 주택 과세특례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 실수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 양도시기 : 제한 없음	○ (좌 동) ○ 양도시기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2) 개정이유

- 실수요 목적의 주택 취득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가 해소된 이후에는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없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

8.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시 재촌·경작 개념 명확화 (조특영 §66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경작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

(2) 개정이유

- 경작기간 계산시 “재촌” 요건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9.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명확화 (조특영 §66⑪1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개정이유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대토농지 경작기간 계산 방법 명확화(조특영 §67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서의 경작기간이 각각 3년 이상임	☐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서의 경작기간을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로 명확화

(2) 개정이유

-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대토시 비과세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69의2, 조특영 §6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조특법 §69의2 ☐ 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감면대상 : 8년이상 재촌(在村)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단,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 면적한도 : 990 m² 이내 감면(한도 초과시 한도까지 감면) ○ 적용기한 : 3년간('14.12.31.까지) 조특영 §66의2 ☐ 축산종사 여부 및 폐업확인 ○ 축산에 종사 : 가축의 개량·증식 등에 상시 종사 또는 축산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개량 또는 증식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함 ○ 폐업 등 확인 : 축사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8년이상 축산에 종사, 폐업 등을 확인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 감면세액 및 감면신청 $\begin{array}{l} \text{■ 감면} \\ \text{세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양도소득세} \\ \text{산출세액} \end{array} \times \frac{\text{축사용지면적 (다만, 990 m}^2\text{를 초과하는} \\ \text{경우 990 m}^2\text{로 한다)}}{\text{총 양도면적}}$ ○ (감면신청)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및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 그 밖의 사항은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원용

(2) 개정이유

-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구조조정 지원

(3) 적용시기

- 2011.7.2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 적용기한 : '11.12.31.까지 취득	☐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 농어촌주택 : 읍·면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전용면적 116㎡ 이내

고향주택 : 인구 20만명이하 시지역(10년이상 거주)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전용면적 116㎡ 이내

(2) 개정이유

-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택지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 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 1억원 이하) 양도시 단기양도(1년 또는 2년내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제외 ○ 적용기한 : '11.12.31.	○ 적용기한 : '12.12.31.(1년 연장)

(2) 개정이유

-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Ⅱ. 부동산 거래활성화

1.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법 §9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 연 3%, 최대 30% ○ 1세대2주택 이상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 양도자산	<삭 제>] (좌 동)

(2) 개정이유

-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소득령 §15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 * 5대 신도시 :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 거주요건 폐지

(2) 개정이유

-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6.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98의6, 조특영§98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조특법§98의6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대상주택) '11.3.29.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대상자) ①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대상주택을 취득한 자 ② 대상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자 ○ (임대요건) '11.3.29.~'11.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분 ○ (감면적용) -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 :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50%) -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위 대상자 중 ①만 해당) : (양도소득세액) × 50% 조특영§98의5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 : '11.3.29. 현재 미분양으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 다만, 기준시가 6억원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주택 제외 □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text{소법§95①상 양도소득 금액} \times \frac{\text{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 \text{취득당시 기준시가}}$

종 전	개 정
<신 설>	□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①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제출 - 사업주체 등은 '11.9.30.까지 준공후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현황을 '11.10.31.까지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 및 제출 - 사업주체 등은 매매계약 체결후 다음 서류*를 매매계약자(양도세 감면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내용을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 ·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후미분양주택현황 등을 확인후 날인하며, 동 사항을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 · 임대기간 확인을 위한 '임대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양도세 감면신청자는 감면신청시 동 서류들을 증빙서류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작성한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12.6.30.까지 전자매체(디스켓 등)형태로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개정이유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에 사용하도록 유도

(3) 적용시기

- 2011.3.29.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Ⅲ.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1.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소득령§167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 매각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판정일을 양도일로 함 ☐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여부를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일 현재 기업의 실질을 정확히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등(조특법 §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등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 확대 ○ “농식품투자조합” 추가

(2) 개정이유

- 농식품투자조합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등 ** 벤처기업, 창업자, 신기술금융업자 등	☐ 벤처기업 등의 범위확대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추가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출자(20%이상)하여 만든 회사

(2) 개정이유

-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학재원 확충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4. 벤처기업 주식 양도세 비과세 의무보유기간 완화 (조특영§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또는 출자지분) 중 출자 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의무보유기간 완화 ○ 5년 → 3년

(2) 개정이유

- 투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 (조특법 §3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할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양도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적용기한 : '12.12.31. <추 가>	☐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마련 ○ 법인전환 후 5년이내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법인전환당시 자본금의 50%이상으로 한정)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

(2) 개정이유

-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이월과세규정이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규정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사업폐지 또는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조특영 §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월과세에 대한 추정금액 ○ 사업폐지시 : 이월과세대상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 유상감자시 : $\frac{\text{유상감자액}}{\text{법인전환 당시 자본금}} \times \text{이월과세대상세액 중 해당 법인 미납부 금액}$

(2) 개정이유

-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 시행일 이후 유상감자 또는 사업의 폐지분부터 적용

7.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5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 '11.12.31.	 ○ 기한연장 : '14.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IV.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대상에서 ‘해외주식’ 제외 (소득법§118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 주식*(해외주식 포함), 부동산 등 * 국내주식의 경우 :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주식	○ 해외주식*을 대상에서 제외 * 소법 §118의2 제3호에 따른 주식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국내 증권시장상장 주식 등은 제외)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2) 개정이유

- 해외주식 양도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특별법」에 의한 수용시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사업용 인정범위 조정(소득령§168의8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농지 ○ 재촌* · 자경하지 않는 농지 *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 km 이내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한 농지의 경우 ○ 재촌요건을 20 km 이내 → 80 km* 이내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단서

(2) 개정이유

- 특별법에 의한 수용으로 대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요건을 완화하여 수용농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농지의 환지처분시, 양도세 감면시 예외규정 신설 (조특령 §66④2호, §67⑦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경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내 권리면적(또는 환지면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신 설>	□ 예외인정 ○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 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

(2) 개정이유

-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있는 경우에도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세 감면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건의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영 §66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농지 (원칙) 양도일 현재 농지 (예외) ① 매매계약에 따른 형질변경 등 →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 ② 환지에 따른 토지조성공사 → 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	☐ 광해방지사업* 예외인정 * 광산피해 예방·원상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③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휴경 → 휴경계약일 현재 농지

(2) 개정이유

- 광해방지사업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의 매수청구·수용시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 (조특법§7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매수청구·협의매수, 공익사업목적 수용·협의매수시 양도세 감면* * 감면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지정일 이후 취득하여 20년 이상 보유 30% ○ 적용기한 : '11.12.31.	○ 기한연장 : '14.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보금자리주택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V. 기타 제도개선

1. 임대주택 가액기준 개인·법인 사업자 통일 (소득령 §167의3, 법인령 §9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 가액기준 ○ 매입임대 - (개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법인사업자) 가액기준 없음 ○ 건설임대 - (개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법인사업자)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임대주택 등록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임대주택 등록후, 최초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 개정이유

- 임대주택 가액기준을 통일시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0.14.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2. 환지처분에 입체환지처분 개념 도입(소득령§15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지처분의 정의 ○ 도시개발사업등의 사업완료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 토 지 ↔ 토 지	☐ 환지처분에 입체환지의 개념도 포함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완료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 토지 · 건축물 ↔ 토지 · 건축물

(2) 개정이유

- 「도시개발법」에서 입체환지도 환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환지처분 개념에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기재가액 결정근거 마련 (소득법§114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은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가능 ○ 대상 : 확정신고 무신고자	○ 대상 추가 : 확정신고 무신고자, 예정신고 무신고자

(2) 개정이유

-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무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를 결정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결정보분부터 적용

4.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소득법§88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 * “체비지”의 개념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사업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는 토지(보류지를 포함)	○ 체비지 → 보류지(保留地) * ‘보류지’의 개념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류한 토지 ※ 도시개발법 §34

(2) 개정이유

-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용어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자경농지, 농지대토 및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 등의
거주지 요건 명확화(조특영 §66①·④, §67①·⑦, §7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경농지(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거주자의 거주지 요건 ☐ 개발제한구역 토지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거주지 요건	☐ 거주지 요건의 ‘시’ 및 제외조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반영 ☐ 거주지 요건의 ‘구’를 자치구로 명확히 함

(2) 개정이유

- 거주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개정된 주요내용】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제도 신설
2. 가업상속공제 확대
3.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
4. 영농상속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범위 합리화
5.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6.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7.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개선
8.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개선
9.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규정 신설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료 : 제11130호(2011.12.31.)
- 대통령령 : 제23591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67호(2012.2.28.)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제도 신설
(상증법 §45의3, 상증령§3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①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② 과세대상자 :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간접보유비율 포함)이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대주주(개인) ○ 지배주주 : ① 또는 ②의 자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상증령 §19②) ②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개인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출자비율 ※ 지배주주 판정시에는 모든 간접보유비율을 포함 ※ ① 또는 ②의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1인 *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 친족 :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종 전	개 정
	③ 과세요건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세법 시행령 §12의2 ① 3호~8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 다만, 다음의 법인은 제외함* * 수혜법인별로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여부를 판단 ·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 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 §8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수혜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 수혜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거래 -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 ④ 증여의제이익 : ① + ② $\text{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3\%)$ ①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직접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 : $\text{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 \times (\text{직접보유비율} - 3\%)$ * 3%는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비율을 직접보유비율에서 차감

종 전	개 정
	② 지배주주 등이 하나 이상의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출자한 경우(간접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 : $\text{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비율} - 30\%) \times (\text{간접보유비율}^* - 3\%)$ - 간접보유비율 : 지배주주 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times$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보유비율이 2 이상인 경우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모두 합하여 계산함 - 간접출자법인* :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다음의 법인(다만 지배주주와 친족이 50%미만으로 출자한 지주회사는 제외) ① 지배주주와 친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② 지배주주와 친족 및 ①의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③ ① 및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보유한 경우만 과세하면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되 지배주주 등이 소수의 지분을 출자한 간접출자법인까지 확대하는 경우 과세실익은 미비하면서 계산만 복잡해지므로 일정 범위로 제한 - 수혜법인이 간접출자법인에 매출한 경우에는 간접출자법인이 기여한 비율에 상당하는 이익은 해당 간접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서 제외

종 전	개 정
	$(가) \times \frac{[\text{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 - \text{간접출자법인의 거래비율}]}{\text{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 (가) : 간접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한 세법상 영업손익에 관련 법인세**를 차감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 $** \frac{\text{법인세액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 차감)}}{\text{세법상 영업손익}} \times \frac{\text{각 사업연도 소득금액}}{\text{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⑤ 증여의제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⑥ 신고납부시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⑦ 기타 : 합산배제증여재산(§47)에 포함, 증여공제(§54)는 없음

(2)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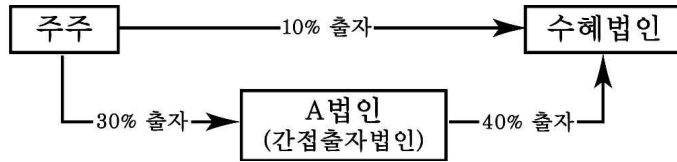
- 세금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과세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

[사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주인 A법인에 출자(간접출자)한 경우

1. 출자관계 :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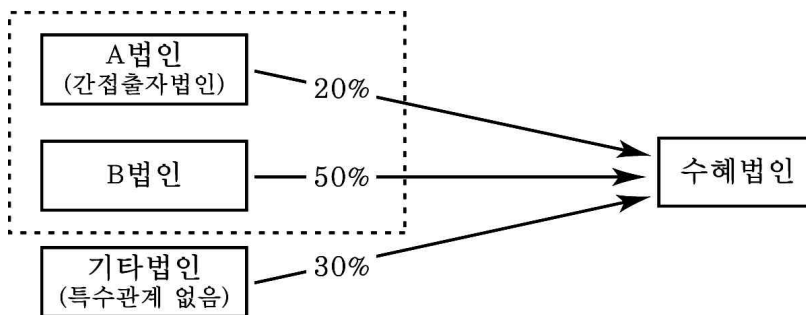
주식보유비율(22%) = 직접출자(10%) + 간접출자(12%)

* 간접출자 = $30\% \times 40\% = 12\%$

* 수혜법인과 A법인과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

2. 특수관계법인(A·B법인)과의 거래비율 : 70%

특수관계법인(A, B법인) 거래비율



3. 증여의제이익(직접출자와 간접출자를 각각 계산하여 합함) : ① + ②

① 직접출자: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70\% - 30\%) \times 10\%$ (직접보유비율)

② 간접출자: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70\% - 30\%) \times [12\%^* - 3\%^{**}] \times \frac{70\% - 20\%^{***}}{70\%}$

*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 간접출자비율에서 3%(한계보유비율)를 먼저 차감

*** 수혜법인에 출자한 A법인(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과와의 거래비율

2.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증법§18②·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 공제율: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 공제한도: 피상속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60~100억원 한도 * 10년이상: 60억원, 15년이상: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 ☐ 사후관리 ○ 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할 것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요건* *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2배이상	☐ 가업상속공제 확대 ○ 40% → 70% ○ 60~100억원 → 100~300억원 * 10년이상: 100억원 15년이상: 150억원 20년이상: 300억원 ☐ 사후관리 보완 ○ (현행과 같음) ○ 상속 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 (중견기업의 경우 1.2배) 유지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상증령 §15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재산 범위 ○ 「소득세법」 적용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 「법인세법」 적용 가업 - 법인의 주식	☐ 가업상속재산 범위 합리화 ○ (좌 동) - 상증법상 법인 주식평가액 × (1 -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 *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 비사업용 토지, 임대용부동산 - 대여금 -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 법인의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2) 개정이유

-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 범위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4. 영농상속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범위 합리화

(상증법§18②, 상증령 §16①·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 영농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 2억원 □ 영농상속공제 요건 ○ 영농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재산 - 농지, 초지, 5년이상 조림한 산림지, 어선, 어업권 ○ 피상속인 요건 :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2억원 → 5억원 ○ 영농상속재산 범위 합리화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재산 * 거주지요건 확대 ① 동일 또는 연결 시·군·구 ② 직선거리 20 km(추가)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2) 개정이유

-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제도를 보완

(3) 적용시기

- 공제금액 확대 : 2012.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상속재산범위 합리화 :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5.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상증령 §20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지 못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 징집, 취학·근무상 형편 등 ○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주택, 혼인합가* *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추 가>	□ 동거주택 대상 확대 ○ (현행과 같음) ○ 직계존속 동거분양, 피상속인의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 이후 5년 이내 1주택 양도한 경우만 해당) *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2) 개정이유

- 동거분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지원하고 혼인에 대한 조세중립성 유지

(3)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6.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상증영§38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 다음의 사용금액 제외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외에 소요되는 관리비(則§10의6①) <추 가>	☐ 과다인건비 제한 ○ 시행령에 직접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 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 *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지급한 연간 1인당 인건비(개인 기준)가 8천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다만, 주무관청 승인을 얻은 경우 제외)

(2)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익성 강화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개선 (상증령 §49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 3개월) 이내의 기간 ○ 다음은 시가에서 제외 -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 가>	- (좌 동) -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다만, 평가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래 금액보다 작은 경우 MIN{발행주식총액(액면가액 기준)의 1%, 3억원}

(2) 개정이유

-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

(3)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8.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개선(상증령§54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 (원칙)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50%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 (예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철자 중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추 가>	□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 (좌 동) -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2)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9.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규정 신설 (상증령 §58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규정 신설 ○ 외화자산·부채 ×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상증령§58의3) ① 상증법 평가규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재산 소재지 국가에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 평가액이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 ※ 평가등의 원칙(상증규칙§15) ② 국외재산의 가액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

(2) 개정이유

- 외화자산·부채의 원화환산 평가방법 신설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된 주요내용】

1. 지방소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폐지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4.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보완
5.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확대
6.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식 명확화
7.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8.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9.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대통령령 : 제23594호(2012.2.2.)
제23219호(2011.10.14.)
제22952호(2011.6.3.)
제22813호(2011.3.31.)
- 기획재정부령 : 제286호(2012.2.28.)

1. 지방소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폐지
(중부세법 §8②2, 중부령 §2의3②, §4①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1주택 과세특례 ○ 지방1주택* 비과세 *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1세대1주택자* 여부 판정시 지방1주택은 소유주택수 계산 에서 제외 * 9억원공제(일반 6억원공제), 장기 보유 및 고령자 공제 적용	○ 지방 1주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 '09.1.1.~'11.12.31. <삭 제> * 단순 조문정리

(2) 개정이유

- 지방소재 주택은 1호 이상 임대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적용을 종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중부령 §3①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 임대호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 주택규모 : 149 m ² 이하 ○ 임대기간 : 5년 이상 ○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수도권 3호 → 1호]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중부령 §2의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중부세 특례* * 1세대1주택 특례 : 9억원공제, 장기보유·고령자 세액 공제 적용 ○ 요건 :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 거주

(2) 개정이유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4.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보완(중부령 §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 등록요건 ○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합산배제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

(2) 개정이유

- 사업자등록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허용하여 납세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확대

(종부령 §4①5호 단서, 종부칙 §4제2호 단서)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 주택법·건축법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다만, 건축법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시공자가 건축법상 사업자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1년 이상 타인이 거주한 경우는 제외	- 1년 이상 타인이 거주한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허용

(2) 개정이유

-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300세대 이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300세대 미만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
-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한 미분양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에 따라 종부세가 달리 적용되는 문제 해소
 -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주택 20호 이상
 - ** 주택법상 사업자, 건축법상 사업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3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6.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식 명확화 (종부령 §4의2, 5의3①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 공제산식 중 (주택·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공제산식 : $\frac{\text{(주택·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text{(주택·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times \frac{\text{(주택·토지)를 합산하여 (주택·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text{(주택·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지방세법§112①1 : 舊 재산세 지방세법§112①2 : 舊 도시계획세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3.3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7.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중부세 합산 배제 (법인령 §92의2② 및 중부령 §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분양주택 투자 리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 리츠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펀드 : 「자금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11.4.30.까지 취득한 '10.2.11.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지정 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이고 - 그 중 50% 이상이 지방에 소재 ☐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리츠·펀드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매입하여 3년 내에 양도하는 미분양주택	☐ 세제지원 요건 완화 ☐ '12.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인세) 2011.6.3.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중부세)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8.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중부세 합산 배제 (법인령 §92의2② 및 중부령 §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 자산유동화방식(P-CBO)*에 따를 것 *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①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② 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분양 ○ '11.4.30.까지 취득한 '10.2.11.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지정 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 - 그 중 50% 이상이 지방에 소재할 것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세제지원 요건 완화 (현행과 같음) ○ '12.12.3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3) 적용시기

- (법인세) 2011.6.3.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중부세)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9.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중부령 §3⑦4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차인 퇴거후 1년 이내의 공가 기간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 임대주택이 공가(空家)가 된 경우에도 종부세 비과세	☐ “1년” → “2년”

(2) 개정이유

-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간주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주택자의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분야

[부가가치세 분야]

【개정된 주요내용】

I. 과·면세 및 영세율 범위 조정

1.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2.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4. 채수입 재화 VAT 면세 범위 보완
5.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에 사업양수 재화가 포함됨을 명확화
6.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면세
7.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VAT 면제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확대
10. 장애인용 보장구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11. 조달청 민관비축공동사업에 대한 VAT 지원
12. VAT 면제되는 금융용역 범위 명확화
13. 군 골프연습장 등 사용 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14.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공동배달사업 면세 종료

II.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의 합리화

1.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2. 예정신고·납부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허용
3. 금전외의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 보완
4.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5.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

6. 매출할인액 정의규정 정비
7. 2개 과세기간 이상 용역대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규정 명확화
8.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 조정

Ⅲ. 농·어민 및 중소기업인 등 지원

1.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2.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3.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4.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
5.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일몰 삭제
6.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7.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8.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
9.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범위 조정 등
10.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11. 의제매입세액 공제관련 농어민 범위 보완

Ⅳ.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도 보완

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2.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3.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조정
4.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매입세액 공제범위 명확화
5. 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적 인정
6. 공인인증서 발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제도 보완
7. 영수증 발급대상에 주거용 건물 수리업 등 추가

8. 영수증 발급 대상(시행령) 업종 보완
9. 집단에너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편의 지원

V. 납세편의 제고 및 기타 과세제도 보완

1. 매입세액 불공제 자동차 범위 조정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 범위 조정
3.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
4.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 관리제도 보완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가산세 명확화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
7.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8.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간 연장
9. 외화획득용역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정비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료 : 제11129호(2011.12.31.)
- 대통령령 : 제23595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69호(2012.2.28.)

I. 과·면세 및 영세율 범위 조정

1.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법 §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대상에서 제외 ※ 특수관계자간 용역의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 중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등

(2) 개정이유

-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및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가가치세 면제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2) 개정이유

- 출산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특법§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 '14.12.31(3년)

(2) 개정이유

-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촉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4. 재수입 재화 VAT 면제 범위 보완(부가령 §4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모든 재수입 재화	○ 수출시 영세율 적용받지 않은 재수입 재화

(2) 개정이유

- 일반 수입재화와와의 과세형평 제고 및 부가가치세 단순화 기여
 - ※ 일반 수입재화와 같이 수입시 납부 후 세무서에서 공제받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재수입분부터 적용

5.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에 사업양수 재화가 포함됨을 명확화(부가령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해당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사업양도로 양수한 자산으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10.12.개정)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해당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신 설>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범위 조정 ☐ (좌 동) ☐ 사업양도로 양수한 자산으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2) 개정이유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간 주공급의 적용대상인 재화에
 - 사업양수도로 양수받은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해석사항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개정 이전분은 해석에 따라 적용)

6.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면세(부가령 §29, §64, §7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VAT 과세전환 ○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 - 가축·어패류 진료용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발급 받은 장애인보조견의 진료용역 <추 가> <신 설>	-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면세 ☐ 면세대상 동물 진료용역 제공 사업자의 의무 ○ 매출 명세서 제출 ○ 매출대장 작성·보관 ※ 서식 시행규칙 위임

(2) 개정이유

- 동물진료용역 과세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 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매출명세서·대장 작성부분은 4.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 의사 등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 용역 ○ 응급환자이송용역 등 <추 가>	○ 산후조리원 용역

(2) 개정이유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 용역을 면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VAT 면제(부가령 §3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 ○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등 <신 설>	○ 투자전문기관,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투자모태조합·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 다만,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

(2) 개정이유

- 농식품투자조합·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업 Fund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저작권 신탁관리용역 확대(부가규칙 §11의5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이하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한국방송작가협회 ○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추 가>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영상산업협회

(2) 개정이유

-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은 단체 중 면세 사업자로 규정되지 않은 사업자를 면제대상 단체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애인용 보장구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105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 의수족, 휠체어 등 23종 <추 가>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자체 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	☐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변경

(2) 개정이유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1. 조달청 민관비축공동사업에 대한 VAT 지원(부가령 §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 런던귀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는 임치물이 지정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	☐ 조달청 창고를 LME창고와 동일수준으로 규정 <괄호 신설>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조달청 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 조달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는 임치물이 조달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 (현행 유지)

(2) 개정이유

- 민간자금 활용으로 비축 원자재를 확대*하여 비상시 위기대응 능력(특히,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 및 물가 등)을 향상시키려는 조달청의 민관공동비축사업** 지원
 - 활성화될 경우 조달청 창고가 아시아 지역 물류허브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다른 보세구역(LME)으로 물품 이동시에도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실물기반 ETF 거래를 통한 민관공동비축사업 활성화 가능
- 조달청 창고증권과 런던귀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증권과의 과세 형평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양도되는 조달창고증권부터 적용

12. VAT 면제되는 금융용역 범위 명확화(부가령 §3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33①) ○ 은행업 ○ 보험업 ○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집합 투자업, 신탁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업무 포함) ○ 여신전문금융업 등	○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의 열거범위 추가(§33①) -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업무 ○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 위임받아 제공하는 업무 포함)

(2)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한 최근 유권해석의 법령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3. 군 골프연습장 등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조특령 §105①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군 면세유 공급 제외대상 범위 ○ 군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2) 개정이유

- 군 면세유를 지원하는 목적이 작전, 훈련 등 군 고유목적 업무 수행 지원임을 감안하여 기타 부문은 과세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4.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공동배달사업 면세 종료(조특령 §106⑦4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5개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한국언론진흥재단 - 적용기한 : '11.12.31.	<삭 제>

(2) 개정이유

- 신문유통지원사업이 예산지원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문사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는 공동배달사업이 종료('11.1.)

Ⅱ.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의 합리화

1.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부가법 §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① - ②)세액의 1/2 고지 ①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② 신용카드 등 공제세액*, 전자 신고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1.3%, 2.6% 세액공제 ** 전자신고시 1만원 세액공제 <추 가>	- ②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 액공제(건당 200원) 포함

(2) 개정이유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2. 예정신고·납부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허용(영 §6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허용 대상 공제세액 제도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추 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2) 개정이유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부담 완화
 - 예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와 달리 차별할 이유 없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년 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3. 금전외의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 보완(부가령 §5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환거래 등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순서 (①→②) ①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신 설> ②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부당 행위계산부인시 적용가격* * 원가+(원가×수익율)	☐ ① → ② → ③ 순차 적용 ① (좌 동)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③ (좌 동)

(2) 개정이유

- 부가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및 편리성 증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4.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 물품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과 관련된 증여(사업상 증여)는 과세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견본품 및 광고선전물 등 <추 가>	○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공급하는 물품

(2) 개정이유

- 국가적 재난 복구사업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부가령 §4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범위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포함 *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등	○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제외

(2) 개정이유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부가가치세가 초과 과세되는 문제
해소
- ※ 구입시는 취득세 등이 제외된 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6. 매출할인액 정의규정 정비(부가령 §4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출할인액의 정의 ○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할인한 금액 ○ 외상판매에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한 금액	☐ 정의규정 정비 <삭 제> (현행 유지)

(2) 개정이유

- 약정기일 전 미수금 영수시 할인하는 경우만 매출할인에 해당됨을 명확화하여 회계기준 및 법인세와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부터 적용

7. 2개 과세기간 이상 용역대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규정 명확화(부가령 §4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동산 임대용역을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공급하고 대금을 선·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기준으로 과세표준 안분(영§49의2)	□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스포츠 센터·노인복지시설 이용대금 및 상표권 사용대금 등을 선불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 방법 ○ 선불대금을 월수로 안분 * 과세표준 $\text{선불대금} \div \text{계약기간의 월수} \times \text{과세기간의 해당월수}$

(2) 개정이유

-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용역대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 선불대금을 월수로 안분함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8.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 이자율 조정(부가규칙 §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주임대료 이자율 : 3.7%	☐ 이자율 조정(4.0%)

(2) 개정이유

- 간주임대료 이자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은행권 1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이 2011년 설정 당시보다 인상(3.7%→ 4.0%) 된 것을 감안

(3) 적용시기

- 2012.2.2. 이후 신고분(4.25 예정신고분) 부터 적용

Ⅲ. 농·어민 및 중소기업인 등 지원

1.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유류 면세(조특법 §106의2) ○ 적용기한 : '12.6.30.까지 100% 감면, '12.7.1.~12.31.까지 75% 감면	○ 100% 감면으로 통일 ○ 적용기한 : '15.12.31.(3년 연장)
☐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조특법 §105) ○ 적용기한 : '11.12.31.	○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 적용기한 : '11.12.31.	○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특법 §105의2) ○ (적용 범위) 농·어민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 가>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2) 개정이유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정 별표1,5,6, 농림특례규칙 별표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 등 (39종) <추 가>	○ 농용굴삭기(1톤 미만) ○ 사료배합기[화식(火食)사료용]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32종) ○ 동력이앙기	○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 버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 제초기, 약제살포기
☐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등 42종 <신 설>	○ 농산물 수확용 상자 (플라스틱 재질) ○ 화훼재배용 배지 ○ 화훼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
☐ 사후환급 어업용 기자재 ○ 양어장용 필름, 양어장용 파이프, 어상자 등 23종 <신 설>	○ 젓갈용 숙성용기 (플라스틱, 철재 재질) ○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2) 개정이유

- 농·어민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구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2012.2.28. 이후 구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부가령 §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래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의무화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자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폐 지> <예정고지로 전환>

(2) 개정이유

-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 완화
 - * 63만명이 예정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4.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령 §74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 20%('11.12.31.까지 15%) - 음식업 · 숙박업 : 40%('11.12.31.까지 30%)	☐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5.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일몰 삭제(부가령 §62·§74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음식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음식업자가 농수산물 구입시 구입액의 일정율 세액공제 ○ 공제율 : 3/103 (단, '12.12.까지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 일몰기한 폐지 ○ 개인 8/108, 법인 6/106, 유흥주점 4/104

(2) 개정이유

- 음식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지원

6.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회사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경감 ○ 적용기한 : '11.12.31. ○ 사후관리(경감세액 등 추정) - 추정사유 : 지급기한(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경감세액을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우 - 추정절차 : 국토부장관은 미지급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 통보받은 국세청장이 추정 · 추정액 : 경감세액 + 이자상당액 + 가산세(20%) ※ 지급기한 경과후 지급시에도 경감세액 추정	○ 적용기한 : '13.12.31.(2년 연장) ○ 지급기한 경과 후 국토부장관이 통보한 날까지 경감세액 지급 여부에 따라 추정액 추정 i) 지급시 : 이자상당액 + 가산세(20%) 추정 ※ 경감세액 추정 제외 ii) 미지급시 :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 + 이자상당액 + 가산세(40%) 추정 ※ 가산세율 상향 (20%→40%)

(2) 개정이유

- 회사택시 기사의 근로여건 개선
 - 경감세액이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

7.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조특법 §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적용기한 : '11.12.31.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계속 면세 ○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 지원

8.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연장(조특법 §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 '11.12.31.	○ 적용기한 : '14.12.31.(3년 연장)

(2) 개정이유

- 출산 지원 및 양육의 부담 완화

9.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범위 조정 등(부가령 §24①, §6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의 수출 ○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 위탁판매수출 -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이하를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범위에 포함 ·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 양수한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 외국인도수출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 첨부서류 추가 ○ 외국인도수출 사업자로써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 매입계약서

(2) 개정이유

- 국내사업자 간 종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06의8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원산지확인서를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재화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한정 ○ 공제방법 : 발급건당* 일정액(1만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연간 30만원 한도) ○ 적용기한 : '13.12.31.(2년)

(2) 개정이유

-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의제매입세액 공제관련 농어민 범위 보완(부가령 §62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민 중 어민의 범위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 소금채취업 포함

(2) 개정 이유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농수산물 등에 포함되는 소금의 생산자인 소금채취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에 해당하지 않고 광업(소금채취업)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부터 적용

IV.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도 보완

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부가령 §5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된 경우 <추 가> <추 가> <추 가>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 발급	☐ 수정발급 사유 확대 ○ 세율적용을 잘못*한 경우 * 영세율 ↔ 10%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 ○ 잘못 적힌 경우는 착오여부 관계 없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 거래당사자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발급한 경우 제외

(2)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 확대를 통한 사업자의 납세부담 완화 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수정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2.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부가령 §5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약해제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수정 발급 ※ 당초 거래일자로 수정발급함에 따라 과거 신고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수정신고	○ 당초 거래일자 → 계약해제일 ※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불필요

(2) 개정이유

-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3.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조정(부가령 §53의2, §5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급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 ☐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자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 ☐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단서 신설> ○ 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연장 ○ 전송기한 조정 (공급일의 다음달 15일 → 발급일의 다음 날)

(2) 개정이유

- 사업자 납세협력부담 경감 및 전송기한 단축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발급특례기한 단서) 2012.2.2.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전송기한 조정) 2012.7.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4.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매입세액 공제범위 명확화(부가령 §60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연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 공제범위 명확화 ☐ 특례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월 10일내 발급받은 경우* 포함 * 부가령 §54 ① 1호~3호

(2) 개정이유

- 특례세금계산서의 경우 과세기간 익월 10일까지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입법으로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수증 발급 후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적 인정(부가령 §5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동차 판매시 세금계산서 · 영수증 발급 여부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 세금계산서 발급 ② ①외의 경우 : 영수증 발급 ※ 영수증 발급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① (현행 유지) ② 영수증 발급 후라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2)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을 통한 자영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구입한 자동차로서 2012.2.2.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분부터 적용

6. 공인인증서 발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제도 보완 (부가령 §57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인인증서 발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여부 ① 법인 범용용 공인인증서 : 세금계산서 발급 ② 법인 용도제한용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 : 영수증 발급	① (현행 유지) ② 법인 용도제한용 및 개인용 : 영수증. 단 사업자 요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2) 개정이유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4.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영수증 발급대상에 주거용 건물 수리업 등 추가(규칙 §2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 · 양장점업 · 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 (주거용 건물 자영 건설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등 <신 설>	☐ 대상 추가 ○ 주거용 건물 수리 · 보수 및 개량용역

(2) 개정 이유

-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로 사업자 편의 제고 및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당공제 방지 등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영수증 발급 대상(시행령) 업종 보완 (영 §79의2 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 목욕·이발·미용업 <신 설> <신 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좌 동) ○ (좌 동) ○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 (좌 동)

(2) 개정이유

- 2011년 7월 과세된 일부 의료·교육용역은 최종 소비자상대 업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집단에너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편의 지원(부가령 §53, §7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 발급 업종 ☐ 영수증 발급 업종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사업	☐ 대상 확대 ☐ 한국지역난방공사 → 집단에너지사업자(25) ☐ 열 → 열 + 전기

(2) 개정이유

- 동일 물품을 매월 다량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용이 불편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 지로영수증 발급을 허용하여 사업자 편의 지원
 - 집단에너지사업자도 집단에너지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 현재 동일·유사물품을 공급하는 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세금계산서로 갈음되는 지로영수증만 발급 중
-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에는 열 외에 전기도 포함되므로 열 외에 전기 공급을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V. 납세편의 제고 및 기타 과세제도 보완

1. 매입세액 불공제 자동차 범위 조정(부가법 §17②4)

(1) 개정내용

증 전	개 정
□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대상 차량 범위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 「개별소비세법」 §1②3호의 자동차 － 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용 차량	○ 개별소비세법 §1②3호의 자동차 (영업용인 것을 제외) ※ 영업용 범위는 현행과 동일

(2) 개정이유

- 법령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
 -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세법상의 일반적 분류인 자동차 분류기준에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부터 적용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 범위 조정(부가법 §17②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공제 매입세액 범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추 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사업

(2) 개정이유

-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일원화(부가법 §18·§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정신고기한 ○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25일 (외국법인은 50일) 이내 ☐ 확정신고기한 ○ 과세기간 말일부터 25일 (외국법인은 50일) 이내	○ 외국법인도 25일로 통일

(2) 개정이유

- 내국인 등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형평 도모

*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 관리제도 보완(부가법 §20의2, 부가령 §7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연간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세액 계산 편리, 기장의무 완화, 신고·납부 편의 제공 등 혜택 부여 ○ 변호사업, 회계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직 영위 사업 <추 가>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 사회서비스업* 등 * 변호사, 회계사 등 (수의사 제외) <추 가>	○ (좌 동) ○ 보건업(병·의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보건업(병·의원)

(2) 개정이유

-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
 -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 사회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 적용시기

-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가산세 명확화(부가법 §2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발급위반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2%) - 법 §16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연발급 가산세 (1%) - 발급시기(익월 10일)를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 명확화 -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 특례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익월 10일까지 발급 -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이내 발급한 경우

(2) 개정이유

-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미발급인지, 지연발급인지를 명확히하여 가산세 부과시 조세마찰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개선(부가법 §3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사업장과 무관한 용역공급시 ○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대리납부) -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 추가 ○ (현행과 같음) - 공급받은 용역 및 무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 공급받은 용역 및 무체물이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포함

(2) 개정이유

- 용역 및 무체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 형평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부가법 §34의2, 부가령58⑮)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시 ○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봄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공급으로 봄(부가법 §6⑤) <신 설>	<특례 신설>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해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등의 공급으로 봄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등의 공급시 ○ 세금계산서 발급시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등의 상호, 주소를 부기

(2) 개정이유

- 국외사업자의 위탁매매인 등을 통한 용역 등 공급시 위탁매매인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동 거래에 대한 신고·납부가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8.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간 연장(부가령 §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제출기한 ○ 임시사업장 사업 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	○ 사업 개시일 이후 10일 이내 제출

(2) 개정이유

- 국제행사 등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편의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개설하는 임시사업장부터 적용
(다만, 2012.2.2. 전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일
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시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

9. 외화획득용역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정비(부가령 §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 사업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 재산권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 제외) ○ 컨테이너수리업 ○ 보세구역의 창고업 ○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제외)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중 -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임대업 ○ 통신업(소포송달업은 통신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제) ○ (좌 동) ○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 (좌 동)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제외) ○ (좌 동)

(2) 개정이유

- 표준산업분류의 변경 반영 및 일부 세부업종 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일몰 연장(부가법 §32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공제세액 : 건당 2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일몰기한 : 2011.12.31.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일몰 2년 연장('11.12.→'13.12.)

(2) 개정이유

- 사업자 협력부담 완화 및 탈세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 특히, 2012.1.1.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 발급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개정된 주요내용】

1.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
2.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3.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4.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5.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명확화
6. 폐업신고, 공제·환급신청기한 조정 및 폐업신고 사유 추가
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 확대 및 재경정 사유 신설
8. 추계결정사유 명확화
9.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감면한도 설정
10. 조건부면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기한 조정
11.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개선
12. 미납세반출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규정 보완
13. 저유소의 제조행위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신설
14. 저유소에서 발생한 ‘혼유등’에 대해 제조자등이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15.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에 대해 2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유예
16. 수탁가공의 요건 명확화
17.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명확화
18.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을 미납세 반출자가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 | |
|---|
| <p>19.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기간 계산방법 명확화</p> <p>20. 프로판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p> |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료 : 제11120호(2011.12.31.)
- 대통령령 : 제23597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70호(2012.2.28.)

1.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개소법§1②3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승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 배기량 2천cc초과 : 10% 배기량 1천cc~2천cc : 5% 배기량 1천cc이하 : 면제	* 배기량 2천cc초과 : <table border="1"> <tr> <td>~ '12.3.14.</td><td>10%</td></tr> <tr> <td>'12.3.15. ~ '12.12.31.</td><td>8%</td></tr> <tr> <td>'13.1.1. ~ '13.12.31.</td><td>7%</td></tr> <tr> <td>'14.1.1. ~ '14.12.31.</td><td>6%</td></tr> <tr> <td>'15.1.1. ~</td><td>5%</td></tr> </table> 배기량 1천cc~2천cc : 5% 배기량 1천cc이하 : 면제	~ '12.3.14.	10%	'12.3.15. ~ '12.12.31.	8%	'13.1.1. ~ '13.12.31.	7%	'14.1.1. ~ '14.12.31.	6%	'15.1.1. ~	5%
~ '12.3.14.	10%										
'12.3.15. ~ '12.12.31.	8%										
'13.1.1. ~ '13.12.31.	7%										
'14.1.1. ~ '14.12.31.	6%										
'15.1.1. ~	5%										

(2) 개정이유

- 한미FTA 체결에 따라 자동차 세율이 효력 발생연도 8%, 3년 이내에 연차적으로 5%로 인하

< 참고 > 관련 협정문 내용 (한미 FTA 제2.12조 제1항 가)

1. 대한민국은

가. 다음을 규정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설정된 특별 소비세를 개정한다.

- 1) 1000cc 이하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1001cc와 2000cc 사이의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되며, 2000cc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8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 2)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1000cc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차량은 5퍼센트 이하의 단일의 율로 과세된다.

2.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개소법§1②3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승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 배기량 2천cc초과 : 10% 배기량 1천cc~2천cc : 5% 배기량 1천cc이하 : 면세 ** 전기승용차는 과세제도 미비 <신 설>	○ 전기승용자동차* 세율 : 5% - 다만, 경형 전기승용자동차**는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것 ** 길이 3.6미터, 폭 1.6미터 이하

(2)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개발·양산 추이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과세 형평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 전기자동차에 대해 5% 단일 세율 적용
 - 한미FTA 체결에 따라 효력 발생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자동차 세율이 5%로 낮아지게 됨을 감안
- 다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형승용차와 동일하게 경형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세
 -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규격기준을 고려하여 경형전기자동차 면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경형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반출·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10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기승용차는 '12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 100%(한도 200만원) ○ 일몰: '14.12.31.(3년)

(2) 개정이유

-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을 위해 전기승용차 세제지원
 - 일몰기한 : 2014.12.31. (3년간 감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2014.12.31.까지 반출·수입하는 분에 대해 적용

4.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개소령 별표1 제5호 라목 신설)

<개정내용(개소법 §1②3호)>

-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신설)
 - 과세대상 : 전기승용자동차(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 세율 : 5%
 - 적용시기 : '12.1.1. 이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세부기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과세제외 규격 규정 ○ 길이 3.6미터, 폭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2) 개정이유

- 전기승용자동차 과세 신설에 따라 전기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에 최초로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명확화(개소법§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및 그 외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과세표준 ○ 수입신고할 때의 가격 및 관세를 징수할 때의 가격 * 시행령에서, 상기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 물품에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규정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2)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에 반영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 ※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련 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법에서 규정(부가가치세법§13④)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폐업신고, 공제·환급신청기한 조정 및 폐업신고 사유 추가
(개소법§9⑦, §20④, §20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폐업 등 신고기한: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5일 이내 ○ 신고사유: ① 과세물품이 경매·공매로 환가되거나 사실상 제조를 폐지한 경우, ②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등을 폐업하는 경우 □ 제조장 환입 등에 따른 공제·환급 신청기한: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환급 신청기한 ○ 가정용부탄: 다음달 말일까지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해당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5일 이내 → 신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신고사유 추가: ③ 과세물품 제조·판매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현행과 같음) ○ 45일 이내 →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 개정이유

- 폐업 등 신고, 공제·환급 신청기한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신청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 확대 및 재경정 사유 신설 (개소법§11①, ③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자 ○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추 가> ☐ 재경정 관련 규정 미비	 ○ 관할지방국세청장 ☐ 재경정 사유 신설 ○ 결정 및 경정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 가능

(2) 개정이유

-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결정·경정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부과처분 절차상의 불편 해소
 -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관할지방국세청장에 결정 및 경정권한을 부여
- 부가가치세법 등과 마찬가지로 결정·경정권자의 재경정 사유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 재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추계결정사유 명확화(개소법§1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결정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 * 시행령§18 추계결정 사유 : 장부 기타 증빙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한 경우 또는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시행령상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

(2) 개정이유

- 추계결정 사유는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
이므로 법률에서 규정
- ※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부가가치세법§21②)

9.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감면한도 설정(개소법§18①3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전용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면제 ☐ 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 <신 설>	☐ 감면한도: 500만원 * 장애인 승차를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2) 개정이유

-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까지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 과세불형평 해소
- ※ 본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이고 특수장비 설치비용이 추가로 2,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을 4,000만원으로 하여 감면한도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개별소비세 감면분부터 적용

10. 조건부면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기한 조정
(개소법§18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건부면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 유류: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 유류를 제외한 기타 과세물품 : 현행과 같음(분기 다음달 25일까지)

(2) 개정이유

- 조건부면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다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기한과 일치
- * 법 제9조제1항 :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
 - 유류 :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 유류를 제외한 기타 과세물품 :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11.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제도개선 (개소법§2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정용 LPG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 환급신청자 : LPG부탄 공급자* * LPG부탄 제조자 및 수입자 ○ 환급사유: LPG부탄을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 ** 가스라이터, 이동식 부탄연료 등 제조자 ○ 환급액: 232원/kg * LPG부탄(252원/kg)과 LPG프로판(20원/kg)의 세액차이 □ 부정환급시 초과환급세액 및 가산액 징수 ○ 추정대상 : 공급자(환급신청자) ○ 가산액의 가산율 : 1일 1만분의 5 (개소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6항)	○ 귀책사유별 세액추징 ● 공급자 귀책사유시 → 공급자 추징 ● 사업자 귀책사유시 → 사업자 추징 ○ 가산세 40%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10%)

(2) 개정이유

- 귀책사유별로 세액추징대상자를 달리 함으로써 현행제도의 불합리 개선
- 부정환급시의 가산세 규정을 놓여민 면세유의 사후관리 규정 등과 일치
 - * 조특법 106조의2(면세유), 111조의3(택시연료 면세) 규정에서도 초과환급시 40%의 가산세를 부과
 - 다만,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는 10%를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미납세반출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규정 보완 (신설, 개소법§10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납세반출에 따라 과세물품이 반입지로 반입된 후 판매 등의 사유로 재반출되는 경우 ○ 반입자가 해당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함 <신 설>	○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한 반출자가 신고·납부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2) 개정이유

-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재판매·재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저유소의 제조행위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신설(신설, 개소법§10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종유류의 혼합 등 저유소의 제조행위(혼유등)에 대한 신고·납부 ○ 당초 혼유를 반출한 정유소와 저유소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정유소가 저유소의 혼유등에 대해 신고·납부함 ○ 과세표준은 혼유등의 수량, 과세시기는 혼유등이 발생한 때 ○ 혼유등의 유형 및 개별소비세 신고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2) 개정이유

- 정유소에서 저유소까지 같은 송유관을 이용하여 이종(異種) 유류 송유시에 저유소에서 혼유가 발생
 - 그 동안 저유소에서 발생하는 혼유에 대해 정유소에서 정산 하여 신고·납부함
 - * 등유가 경유에 혼합되어 경유로 판매되므로 등유(개소세 90원/ℓ, 교육세 14원/ℓ)와 경유(교통세 368원/ℓ, 교육세 55원/ℓ) 세금차액을 추가 납부
- 대법원은 혼유를 저유소에서 새로이 제조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할세무서 등을 저유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시(2010두4452, 2011.4.14.)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저유소가 혼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발생

* 납세절차 : 저유소 납세시 정유소의 기납부 개소세 환급 및 교통세·교육세를 추가징수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

- 따라서 과세표준 명확화·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저유소 혼유 및 첨가제에 대해 정유소에서의 신고·납부를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저유소에 반입되는 혼유 및 혼합되는 첨가제 분부터 적용

14. 저유소에서 발생한 ‘혼유등’에 대해 제조자등이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개소령§16의5 신설)

<개정내용(개소법 §10의5 신설)>

- ☐ 저유소에서 이종유류 혼합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신설
- 송유관을 이용해 제조자등(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거쳐 반출하는 경우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혼유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납세의무자: 저유소 대신 제조자등
 - 과세시기: 혼유등이 발생한 때
 - 과세표준: 혼유등이 발생한 때의 수량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혼유등’의 범위 ○ 송유관을 거쳐 저유소에서 다시 반출할 때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 저유소에서 첨가제 등을 혼합하는 경우 * 첨가제 등: 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 착색제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제조자의 필요에 의해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총칭함 ☐ 혼유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신고절차, 신고사항 등 구체화 ○ 제조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시 혼유등특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저유소 변경시 포함) * 신고서의 내용 : 사업자의 인적사항, 저유소 관련 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기 사항(신고, 변경)에 대하여 통지 ○ 제조자등은 과세표준 신고시 저유소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개정이유

- 송유관을 이용해 제조자의 저유소를 거쳐 반출하는 경우 혼유 등에 대해 제조자등이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
 - 신고절차·신고사항 등 구체화
 - 특례 적용자의 신고서 제출관련 사항 및 관할 세무서간 통지의무 규정 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에 최초로 혼유 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5.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에 대해 2년간 개별소비세 과세 유예
(법률 제9259호 부칙 제1조, 제3조, 법률 제9909호 부칙 제1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 ○ 세율 : 총매출액 기준(고객에게 받은 총금액 -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연간 총매출액	세율	
500억원 이하	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의 2%	
1천억원 초과	10억원 + 1천억원 초과금액의 4%	
○ 과세시기: '12.1.1.부터		○ 과세시기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강원랜드): '12.1.1.부터 - 외국인전용 카지노: '14.1.1.부터

(2) 개정이유

- 카지노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해 과세 유예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16. 수탁가공의 요건 명확화 (개소령§8-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탁가공 물품에 대해 수탁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수탁가공 요건 미비	○ 수탁가공 요건 명확화 -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 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 해당 제품을 위탁자의 명의로 제조할 것 -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 개정이유

- 수탁가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화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를 고려하여 수탁가공 요건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에 최초로 수탁가공하여 수탁자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17.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 명확화(개소령§12②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하는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액 ○ 물품의 가격 － 용도변경시의 신고납부 가격 ：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세율 규정: 없음 * 면세 당시 세율인지 신고납부당시 세율인지 불명확	○ 세율 규정 신설 － 용도변경시의 신고납부 세율 ： 용도변경한 때의 세율(다만, 면세시 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2) 개정이유

- 조건부면세된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신고납부할 때 적용세율은 용도변경시 세율을 적용
- － 다만, 용도변경시 세율이 당초 면세시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세시 세율을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에 최초로 용도변경 등으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18.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을 미납세
반출자가 신고·납부하는 특례 신설에 따른 절차 구체화
(개소령§16의4 신설)

<개정내용(개소법 §10의4)>

- ☐ 미납세반출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특례 신설
 - 미납세반출에 따라 과세물품이 반입지로 반입된 후 판매 등의 사유로 재반출되는 경우
 - (원칙: 현행) 반입자가 해당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
 - (특례: 개정)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자가 대신 신고·납부 가능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미납세반출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 절차, 신고사항 등을 구체화 ○ 미납세반출자가 과세표준 신고시에 신청서를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청서 내용 : 사업자의 인적사항, 반입지 관련 사항, 미납세 반출한 물품 및 그 밖의 참고사항 ○ 반입지를 변경하거나 특례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기 사항(신청, 변경, 포기)에 대하여 통지 ○ 반출자는 과세표준 신고시 반입지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개정이유

-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절차·신고사항 등을 구체화
 - 특례 적용자의 신청서 제출관련 사항 및 관할 세무서간 통지의무 규정 등을 통해 세원관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에 최초로 미납세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기간 계산방법 명확화(개소령§3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건부면세 물품의 사후관리기간 계산 ○ 반입한 날부터 5년 ○ 다만,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하는 경우 재반입자의 기간 계산 방법 불명확 (예)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에게 양도	○ 재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에는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을 포함

(2) 개정이유

- 조건부면세 물품을 조건부면세 사유로 재반출하는 경우,
 - 재반입자의 사후관리기간에 당초 반입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현재 재반입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

20. 프로판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개소령§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추 가> ○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275원	○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14원 ○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275원

(2) 개정이유

- 고유가와 동절기 등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들이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법정세율의 100분의 30만큼 인하

(3) 적용시기

- 2012.1.1.부터 2012.4.30.까지 제조장에서 반출 하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개정한 주요내용】

1. 경매 · 구매 · 제조폐지 등, 공제 · 환급신청 등의 기한 조정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권 확대 및 재경정 사유 신설
3. 추계결정사유 명확화
4. 조건부면세 반입 후 정해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5. 저유소의 제조행위에 대한 신고 · 납부 특례 신설
6.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7. 바이오디젤 면세 적용기간 종료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료 : 제11123호(2012.1.1.)
- 대통령령 : 제23599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71호(2012.2.28.)

1. 경매·공매·제조폐지 등, 공제·환급신청 등의 기한 조정
(교통세법§7④, §17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매·공매·제조폐지 등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과세물품 등의 수출, 제조장 환입 등을 이유로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교통세를 공제·환급 받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삭 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2) 개정이유

- 경매·공매·제조폐지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신고기한(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
 - * 제조장 폐업시에도 별도 규정이 없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있음
- 공제·환급신청 기한을 조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신청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 확대 및 재경정 사유 신설 (교통세법§9①, ③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권자 ○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추 가> ☐ 재경정 관련 규정 미비 <추 가>	 ○ 관할지방국세청장 ☐ 재경정 사유 신설 ○ 결정 및 경정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 가능

(2) 개정이유

-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결정·경정 권한이 없어 발생하는 부과처분 절차상의 불편 해소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관할지방국세청장에 결정 및 경정권한을 부여
- 부가가치세법 등과 마찬가지로 결정·경정권자의 재경정 사유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 재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추계결정사유 명확화(교통세법§9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결정 사유를 시행령에서 규정 * 시행령§18 추계결정 사유 : 장부 기타 증빙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한 경우 또는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사용량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시행령상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

(2) 개정이유

- 추계결정 사유는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 이므로 법률에서 규정
- ※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부가가치세법§21②)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조건부면세 반입 후 정해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에게 신고의무 부여(교통세법§15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건부면세 물품 반입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에게 교통세 징수 * 타용도 사용시 신고규정 없음	☐ 타용도 사용시 반입자의 신고·납부 의무 신설 ○ 신고·납부기한: 사유 발생일 다음달 말일까지 * 무신고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

(2) 개정이유

- 조건부면세 물품을 타용도로 사용 후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당국은 해당 교통세만을 추징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 해소
 - 타용도 사용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세만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는 가산세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5. 저유소의 제조행위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신설(신설, 교통세법§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종유류의 혼합 등 저유소의 제조행위(혼유등)에 대한 신고·납부 ○ 당초 혼유를 반출한 정유소와 저유소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정유소가 저유소의 혼유등에 대해 신고·납부함 ○ 과세표준은 혼유등의 수량, 과세시기는 혼유등이 발생한 때 ○ 혼유등의 유형 및 개별소비세 신고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2) 개정이유

- 정유소에서 저유소까지 같은 송유관을 이용하여 이종(異種) 유류 송유시에 저유소에서 혼유가 발생
 - 그 동안 저유소에서 발생하는 혼유에 대해 정유소에서 정산 하여 신고·납부함
 - * 등유가 경유에 혼합되어 경유로 판매되므로 등유(개소세 90원/ℓ, 교육세 14원/ℓ)와 경유(교통세 368원/ℓ, 교육세 55원/ℓ) 세금차액을 추가 납부
- 대법원은 혼유를 저유소에서 새로이 제조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할세무서 등을 저유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시(2010두4452, 2011.4.14.)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저유소가 혼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발생
 - * 납세절차 : 저유소 납세시 정유소의 기납부 개소세 환급 및 교통세·교육세를 추가징수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

- 따라서 과세표준 명확화·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저유소 혼유 및 첨가제에 대해 정유소에서의 신고·납부를 허용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최초로 저유소에 반입되는 혼유 및 혼합되는 첨가제 분부터 적용

6.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신설, 교통세법§8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 대해서도 휘발유 및 경유와 동일하게 과세 ○ 납세의무자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자 ○ 세율 유사휘발유: 529원/ℓ 유사경유: 375원/ℓ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 납세의무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 ○ 과세물품 : 유사석유제품(유사휘발유, 유사경유) ○ 과세표준 : 보관 또는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의 수량 ○ 세율 : 현행 휘발유·경유 세율과 동일 유사휘발유 529원/ℓ, 유사경유 375원/ℓ ○ 세액공제 : 유사석유제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기부과된 경우

(2) 개정이유

- 유사석유가 대부분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현행 “제조자과세 방식”으로는 세금 부과·징수의 실효성 미흡
 -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제조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석유제품과 정상 석유제품간 과세상 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판매자가 판매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분부터 적용

7. 바이오디젤 면세 적용기간 종료(조특법§11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식물성 유지(대두유, 폐식용유 등)를 알코올과 반응시켜 제조한 것으로, 경유와 특성이 유사한 석유대체연료 ○ 적용기간: '11.12.31까지	○ 적용기간 종료

(2) 개정이유

- 바이오디젤 면세에 대한 일몰 종료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

주 세

[주 세]

【개정 한 주요내용】

1. 주류 제조·판매업면허 제도 개선
2.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설치허가 정지처분 기준 조정
3.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명확화
4.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조정
5.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대상 확대
6. 주류수입업면허 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
7.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 조정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료 : 제11134호(2012.1.1.)
- 대통령령 : 제23598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199호(2011.4.1.)

1. 주류 제조·판매업면허 제도 개선(법§6, 법§7, 법§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면허승계 ○ 판매업면허 :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 면허취득으로 간주 ○ 제조면허 : 규정 없음	○ 판매업면허 :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포괄승계만 면허 취득으로 간주 ○ 제조면허 :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포괄승계만 면허취득으로 간주 (판매업면허 규정과 일치)

(2) 개정이유

- 법인전환 신청자 등이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득 간주 규정이 배제됨을 명확히 규정
- 개인사업자인 주류·밀술·술덧제조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현행은 판매업면허의 경우에만 법인전환에 따른 면허승계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

2.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설치허가 정지처분 기준 조정(법§17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직매장면허 행정처분 기준 ○ 면허취소 : 기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 5%이상 ○ 면허정지 : 기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 1%이상 10%미만	○ (현행과 같음) ○ 1%이상 10%미만 → 1%이상 5%미만

(2) 개정이유

- 직매장 면허정지 처분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해당 직매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명확화(법§2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하는 주류의 과세표준 :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 시행령에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 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 으로 규정	☐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2)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에 반영하여,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 ※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련 세금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부가가치세법§13④)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4.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조정(법§2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 신고 －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된 경우 * 공매 등으로 환가된 수량 또는 면허취소시 제조장에 남아있는 수량만 적용, 정상출고분은 본래의 신고기한이 적용	○ 사유발생일부터 10일 이내 → 다음달 말일까지 ※ 주세의 신고기한 : 출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2) 개정이유

-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다음달 말일로 변경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출고된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

5.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대상 확대(법§5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문대상 ○ 제13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취소 ○ 제14조에 따른 밀술 또는 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 제1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 제19조 제5항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의 취소	○ 제12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13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취소 ○ 제14조에 따른 밀술·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밀술·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 제15조에 따른 주류 판매정지 및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 청문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주류·밀술·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와 주류 판매 정지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

6. 주류수입업면허 요건 중 전업요건 폐지(주세령 별표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수입업 면허요건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 66 m ² 이상 ○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의 제조·수출·수출입중개업 제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 제>

(2) 개정이유

- 주류수입업자의 ‘전업’요건 폐지 및 최종소비자에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등 주류수입업면허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 2012.2.2. 당시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 및 2012.2.2.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7.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 조정(주세령 §2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맥주제조자 생산 맥주의 과세표준 ○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부원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 중 당해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	○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2) 개정이유

- 소규모 맥주제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세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에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개정된 주요내용】

1. 연결납세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방법 개선
2.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3.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5. 「지특법」 개정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대상 조정
6.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법·시행령 개정일자】

- 법 료 : 제11127호(2011.12.31.)
- 대통령령 : 제23603호(2012.2.2.)

1. 연결납세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방법 개선(법§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특세 신고납부 ○ 개별법인이 신고납부	○ 연결모법인이 일괄신고 납부

(2) 개정이유

- 연결납세 적용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법§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대상 ☐ 농어민 <신 설>	☐ 비과세 대상 ☐ (좌 동) ☐ 임업인

(2) 개정이유

- 농어업인과 임업인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2.31.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3.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영§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 중 농특세 비과세 대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 * 2hr 미만 농지, 20t 미만 어선 보유 <신 설>	□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 추가 ○ (좌 동) ○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

(2) 개정이유

- 농·어업인과 임업인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영§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특세 비과세 대상 ○ 국가·지자체 등에 대한 감면 ○ 농어민·농어민 단체 및 서민저축 등에 대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R&D 세액공제 ○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 등 <신 설>	☐ 농특세 비과세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2) 개정이유

-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8.3.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최초로 소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5. 「지특법」 개정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대상 조정(영§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세 감면규정 변경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대상 조정 <신 설> * 행안부장관이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은 농특세 비과세 중 <신 설> ○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 근거규정 : 「지특법」 §42⑤	○ 지식산업센터 · 한센정착농원 · 지방공사 ·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 지자체 조례에 따른 상기 4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특법」으로 이관 ○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 (좌 동) - 근거규정 : 「지특법」 §19

(2) 개정이유

- ①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 등록면허세 감면 중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일부 항목*(총11개 중 4개)이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
 - * 지식산업센터 감면, 한센정착농원지원 감면, 지방공사 감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감면
 - 동 비과세항목의 근거법령이 ‘조례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특세 비과세 규정도 농특세법 시행령에 규정
- ②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현재 감면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농특세 비과세
필요

- ③ 「지특법」 조문정리에 따른 농특세법 시행령상 인용조문 변경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유치원에 대한 감면이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통합*됨
- * 지특법 제42조 제5항 → 지특법 제19조

(3) 적용시기

- 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012.1.1.) 이후
지방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 ②, ③ : 2012.2.2.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6. 농협 구조개편 관련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영§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에 부과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2) 개정이유

-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농협사업구조 개편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3.2.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세무사법

[세무사법]

【개정 한 주요내용】

1.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폐지
2.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조정
3.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료 : 제11209호(2012.1.26.)
- 대통령령 : 제23604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75호(2012.3.9.)

1.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폐지(세무사법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공인회계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 ☐ (좌 동) <삭 제> ☐ (좌 동)

(2) 개정이유

-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시행일 이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부터 적용

2.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조정 (세무사령 §16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총 9인 (공무원 6인, 민간위원 3인) ○ 위원장(기획재정부 공무원) ○ 부위원장(기획재정부 공무원) ○ 법제처 공무원 1인 ○ 국세청 공무원 2인 ○ 기획재정부 공무원 1인 ○ 세무사 1인 ○ 공인회계사 1인 ○ 변호사 1인 <신 설>	□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총 9인 (공무원 5인, 민간위원 4인)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1인

(2) 개정이유

-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수 확대

(3) 적용시기

- 이 영 시행일 이후 적용

3.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 (세무사령 §2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

(2) 개정이유

- 징계위원 활동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 안건에 대해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일로 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개정 한 주 요 내 용】

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3. 과세권 강화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료 : 제11124호(2011.12.31.)
- 대통령령 : 제23592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62호(2012.2.28.)

1.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정비

1)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기본법 §2 20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특수관계인” 정의 ○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어느 일방이 타방(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본인)도 그 일방(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

(2) 개정이유

-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세법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쌍방 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
- * 개별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범위 조정이 필요한 부분만 추가 규정

2) 친족관계 범위 조정(기본영 §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혈족 ○ (父系) 6촌 이내 부계혈족 · 3촌 이내 부계혈족의 자녀(4촌) ○ (母系) 3촌 이내 모계혈족 · 그 자녀(4촌)	○ 6촌 이내 혈족(父系 · 母系 불문)
☐ 인척 ○ (夫族) 4촌 이내 부계혈족의 아내 ·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 3촌 이내 모계혈족의 배우자 ○ (妻族) 아내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4촌 이내 인척(夫族 · 妻族 불문)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좌 동)
☐ 기타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 그 배우자 ·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삭 제> ○ (좌 동) <삭 제>
☐ 기혼여성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 판단	<삭 제>

(2) 개정이유

-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민법 및 다른 경제관련 법령(상법 · 공정거래법 등)과의 통일성 도모

3) 경영지배관계 범위 조정(기본영 §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i) 본인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 법인 (ii) 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개인 □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 ①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자로서 ② 20% 이상 출자한 비영리법인 ※ 소득세법(본인이 개인인 경우) (i)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본인이 대표자인 (영리)법인 (ii) 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관계)이 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5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iii) 특수관계인((i)·(ii))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 본인이 개인인 경우 (i)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ii)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 + (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i)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개인·법인 * 본인이 어느 개인·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개인·법정도 쌍방관계로서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됨 (ii) 본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i))의 특수관계인(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 (iii)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경제적연관관계·(i)·(i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iv) 본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경제적연관관계·(i)·(ii) + (iii))을 통해 경영을 지배하는 법인

종 전	개 정
※ 법인세법(본인이 법인인 경우) (i) 본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그 친족 (ii) 본인에게 1% 이상 출자한 자·그 친족 (iii) 본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게 50% 이상 출자한 개인·법인 (iv) 특수관계인((i)·(ii)·경제적연관관계)이 3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 (v) 특수관계인((i)·(ii)·경제적연관관계)이 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5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vi) 특수관계인((iv)·(v))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vii)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및 그 임원	(v)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경영지배의 기준 통일 ○ 영리법인 : ① 30%* 이상 출자 또는 ② 사실상 지배**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판정시에는 50% 기준 적용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 비영리법인 : ① 이사 과반수 또는 ② 30% 이상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

(2) 개정이유

- 개인과 법인의 경영지배의 기준 통일화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자 명확화
(기본법 §47의2①·§47의3①·§47의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자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세자* * ① 납세의무자 ② 연대·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 ③ 국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세자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

(2) 개정이유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2) 예정신고납부 등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명확화
(법 §47의2①·§47의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정·중간신고납부 및 중간예납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불명확* * 예정신고납부에 관해서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을 간접 규정(예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기부과분은 확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47의2⑥)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명확화 ○ 예정 신고납부 *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양도세 과세표준·부가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적용 ○ 중간신고납부** *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중간신고납부(잔여 자산가액 확정 전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 시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간 잔여자산가액 미확정시)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적용 ○ 중간예납* * 종합소득세·법인세 중간예납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 -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

(2) 개정이유

- 확정신고납부 전 중간정산 성격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3) 손익귀속시기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기본법 §47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 ①과세기간분(과소납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 · 납세고지일) × 연 10.95%(1일 0.03%) ○ ②과세기간분(초과납부) : 환급 및 환급가산금* 가산 * (납부일 · 감면결정일 등 익일 ~ 총당일 · 지급결정일) × 연 3.7%	○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먼저 납부(②) → ①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②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 당초 과세기간(①)보다 늦게 납부(②) → ①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납부일까지 부과하고 ②과세기간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음 - 단, 부당 무신고 · 과소신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간주 제외

(2) 개정이유

-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
(기본법 §47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세를 ②사업장분 부가세로 신고납부시 ○ ①사업장분(과소납부):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연 10.95%) ○ ②사업장분(초과납부): 환급 + 환급가산금 가산(연 3.7%)	○ ①사업장분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 ①사업장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②사업장분에 대한 환급 + 환급가산금 모두 적용하지 않음

(2) 개정이유

- 실질적으로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과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명확화
(기본법 §47의2①·§47의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명확화 ☐ 무신고가산세 : 적용 배제 ☐ 과소신고가산세 : 적용* * 부과기준 : 산출세액 - 재산세 기부과분 - 세부담상한 초과분 ☐ 납부불성실가산세 : 적용

(2)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세목으로서 무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배제하되, 납세자가 신고납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인하 등
(기본법 §47의2① · §47의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 과세표준 관련 : 기본법에 규정(법§47의2·3) ☐ 영세율 과세표준 관련 :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법§22⑧) - 무신고·과소신고 과세표준 × 1%	☐ (좌 동) ☐ 기본법으로 이관 - 무신고·과소신고 과세표준 × 0.5%

(2)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 일반·영세율 과세표준신고는 동일한 신고서에 함께 신고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신고의무라고 볼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의 일반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통합하여 일관되게 규정
- 현행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율(1%)이 부가가치세 수입과 관련이 없음을 감안 시 과도한 측면이 있어 가산세율을 현재의 1/2 수준(0.5%)으로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7) 교육세·농특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기본법 §47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세·농특세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 교육세·농특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 (좌 동)

(2) 개정이유

-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8) 무신고가산세 제도 개선(기본법 §4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등* × 20% * 원칙: 산출세액 예외: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 부당 무신고가산세** : ① + ② ** 장부조작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 ① 부당무신고분 : 산출세액등 × (부당 무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② 일반무신고분 : 산출세액등 × (일반 무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20%	○ (좌 동)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증권 거래세 · 종부세 : 산출세액 부가가치세 · 개소세 · 주세 · 교통세 : 납부세액 or 산출세액 - 공제 · 환급세액 ○ 부당 무신고가산세 : 전체 산출세액등 × 40%

(2) 개정이유

- 무신고가산세 제도의 단순 · 합리화
 - 현실적으로 부당무신고분과 일반무신고분을 구분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9)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조정
(기본법 §47의2⑤ · §47의3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 원칙 : 산출세액 기준 가산세율 적용 ○ 예외 :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 - 해당 세액” 기준 가산세율 적용 - 단, 부당 무신고 · 과소신고시 적용 제한 · 일반 무신고 · 과소신고분 가산세액만 “산출세액 - 해당 세액” 기준 · 부당 무신고 · 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은 산출세액 기준 ○ 합산신고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 -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기준 가산세율 적용	○ 공제대상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산출세액 - 해당 세액” 기준 가산세율 적용 * 중간예납 · 수시부과 · 예정신고납부(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제외) · 중간신고 납부 · 원천징수납부 · 납세조합징수납부세액 · 합산신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 등(시행령에 위임) - 부당 무신고 · 부당 과소신고 구분 · 부당 무신고의 경우 : 일반 무신고분 · 부당 무신고분 구분없이 항상 산출세액 기준 · 부당 과소신고의 경우 : 일반 과소신고분 · 부당 과소 신고분을 구분하여 적용 ○ 기납부세액 규정에 통합

(2) 개정이유

- 중간예납·수시부과세액 등 다른 공제대상 기납부세액도 이미 납부된 세액으로 무신고·과소신고에 따른 탈루세액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동일하므로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부과기준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여 가산세 부과 합리화
 - * 다만,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에서도 제외되므로 (영§65①1호단서) 차감 불필요
- 다만, 악의적 조세포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에서는 기납부세액 차감을 배제
 - 부당 과소신고의 경우 과세표준을 부당 과소신고분과 일반 과소신고분으로 구분하여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액 계산시에만 기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
 - 부당 무신고의 경우 전체 산출세액을 포탈한 것으로서 부당·일반 무신고분의 구분은 쉽지 않으므로 공제대상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에서 차감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0) 중간신고·납부 등 관련 가산세 기 부과분은 확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기본법 §47의2⑥·§47의3⑥·§47의4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기 부과분에 대해서는 *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양도소득세 과세표준·부가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 ○ 확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 중간신고·납부*, 중간예납** 관련 가산세 기 부과분에 대해서도 * 법인세 청산소득 과세표준 중간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법인세 중간예납 ○ 확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2) 개정이유

- 중간정산 성격의 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를 모두 누락한 경우 실질적인 탈루세액은 최종적인 확정신고·납부세액인 점을 감안하여
 - 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1) 과소신고가산세 등 부과기준 합리화(기본법 §4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소신고가산세 ○ 부과사유 : 과세표준 과소신고 -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과소신고 ○ 부과기준 : 과소신고분 산출세액 - 부가가치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부과기준 ×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 ① + ② ① 부과기준 × (부당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② 부과기준 × (일반 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부과사유 : 환급세액 초과신고 또는 신고납부할 세액을 환급 받을 세액으로 신고 ○ 부과기준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통합 ○ 과소신고가산세만 규정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원거래세, 종부세 - 부과사유 : 과세표준 과소신고 - 부과기준 : 과소신고분 산출세액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통합 규정 : 부가세, 개소세, 주세, 교통세 - 부과사유 : 납부세액* 과소신고 또는 환급세액 초과신고 * 부가세 :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개소세·주세·교통세 : 산출세액 - 공제·환급세액 - 부과기준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2) 개정이유

- 세목별 가산세 부과기준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12)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개선(기본령 §27의2④ 삭제)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가산세 계산방법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은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 다음 비율이 1보다 큰 경우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함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과소신고분과세표준 - 부정과소 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결손신고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현행 유지) <삭 제> <삭 제>

(2) 개정이유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은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면서 과세표준은 결손신고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
 - 가산세 계산을 합리화하고 부정과소신고시 가산세를 보다 엄격하게 부과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결손신고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이 바람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13) 신고불성실가산세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 명확화(기본령 §27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 ○ 개인 - 「소득세법」 §24~§26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 ○ 법인 - 「법인세법」 §60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할 수입금액	□ 수입금액의 범위 명확화 ○ 거주자 · 비거주자 - 「소득세법」 §24~§26 · §122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법인세법」 §60 · §76의17 · §9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할 수입금액 · 연결수입금액

(2) 개정이유

- 비거주자 · 외국법인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
-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아니라 연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

14) 부정행위의 구체적 유형 명확화(기본령 §12의2①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정 행위”의 구체적 유형 ○ 조세범처벌법 §3⑥ 각 호(조세포탈 성립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거짓 증빙·문서 작성·수취 장부·기록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 조작·은폐 등

(2) 개정이유

- 부과제척기간 연장사유·신고불성실가산세 중과사유(국세기본법)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성립요건(조세범처벌법)인 부정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통일적으로 규정

15) 초과환급신고 등 부과대상자 보완(기본법 §47의3·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자 : 납세자	☐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자 : 납세자	☐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도 포함

(2)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당하게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더라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분부터 적용

16)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통합·개선(기본법 §47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납부불성실·납세조합 불납·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개별 세법에 각각 규정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등): Max (① or ②) ① 미납세액의 0.03%/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 납세조합불납가산세(소득세법) : 미납세액의 5% ○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세법) : 미납세액의 10%	□ 국세기본법에 통합하고 가산세율 통일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1일 - 미납세액의 10% 한도

(2) 개정이유

- 국가·납세의무자를 대신한 징수·납부의무에 관한 가산세를 통합·단순화하고 의무이행 장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원천징수납부 등 의무발생분부터 적용

3. 과세권 강화

1)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명시(기본법 §26의2①1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 10년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 부과제척기간 : 명문규정 없음* * 유권해석으로 해결 · 귀속자에 대한 배당·상여 등(귀속자 불명) : 10년 ·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귀속자 불분명) : 5년	○ (좌 동) ○ 10년으로 명시

(2) 개정이유

- 사기 등으로 법인세 포탈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해당 법인세와 같이 10년으로 명시하여 과세권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 (기본법 §3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담 ○ 대상 과점주주: 과점주주 중 (i)(ii)(iii)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i) 50%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 행사하는 자 (ii)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iii) (i)·(ii)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과점주주: 주주 1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들	○ 대상 과점주주: (i)로 일원화 하되 복수임을 명확화 -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으로서 ·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2) 개정이유

- 대법원·조세심판원의 해석*을 반영하여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동시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있음(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 조세심판원 역시 대법원과 같은 입장임(조심2011서362, 2011.6.30. 등)

- 과점주주의 판단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규정을 단순화·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수정신고기한을 부과제척기한 내로 제한 (기본법 §4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신고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관할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2) 개정이유

-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수정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국세 관련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허용할 실익도 크지 않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고액채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기본법 §85의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액채납자 명단공개 ○ 공개대상 고액채납자 범위 - 채납금액 : 7억원 이상 - 채납기간 : 2년 이상 ○ 공개방법 - 관보 또는 국세정보통신망 ·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 성명(상호) · 나이 · 직업(업종) ·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채납액의 세목 · 납부기한 · 채납요지 등	○ 범위 확대 - 채납금액 : 5억원 이상 - 채납기간 : 1년 이상 ○ (좌 동)

(2) 개정이유

- 고액채납자 관리와 납부유도를 위해 관보 ·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채납자 범위를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관세간 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추가
(기본법 §26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과제척기간 특례 ○ 조세불복청구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결정·판결 확정일 또는 상호합의 종결일 부터 1년 ○ 후발적 경정청구, 유보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간주배당금액의 실제배당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신 설>	☐ 특례 추가 ○ 국세·관세간 과세조정을 위한 경정청구(국조법 §10의2) 또는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국조법 §10의3)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 부터 2개월

(2) 개정이유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제도 신설에 따라, 경정청구·조정권고에 따른 경정결정 등 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경정청구·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
(기본법 §5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복청구기간 계산의 특례* * 불복청구기간에 불산입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시(국조법 §24①) <신 설>	☐ 특례 추가 ○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절차 진행시(국조법 §10의3③)

(2) 개정이유

-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절차 진행기간은 불복청구기간에 불산입 하여 납세의무자의 불복청구권 보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기본법 §8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포상금 지급대상(1억원 한도) ○ 탈루세액, 부당 환급·공제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 <신 설>	☐ 지급대상 추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적발에 중요한 자료* 제공 * 국조법 §35의 과태로 부과된 근거로 활용되는 자료 ☐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 납부금액의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도 1억원) ※ 단,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한하며, 과태료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금액</th><th style="text-align: center;">지 급 률</th></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td><td>5%</td></tr> <tr> <td>2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1천만원+2억원 초과액×3%</td></tr> <tr> <td>5억원 초과</td><td>1.9천만원+5억원 초과액×2%</td></tr> </tbody> </table>	과태료금액	지 급 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2억원 초과액×3%	5억원 초과	1.9천만원+5억원 초과액×2%
과태료금액	지 급 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2억원 초과액×3%								
5억원 초과	1.9천만원+5억원 초과액×2%								

(2) 개정이유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적발가능성 제고를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일원화(기본법 §8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 이원적으로 규정 ○ 「조세범처벌절차법」(§16)상 포상금 -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 포탈세액의 5 ~ 15% (1억원 한도, 시행령§8 및 훈령) ○ 「국세기본법」(§84의2)상 포상금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단,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포상금 수령자 제외) ※ 탈루세액의 2 ~ 5% (1억원 한도, 시행령§65의4)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 ○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포상금 규정(§16) 삭제 ○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규정 (§84의2) 단서 삭제 - 조세탈루에는 조세포탈(‘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탈루)이 포함되므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국세기본법」으로 포상금 규정 일원화

(2) 개정이유

- 현재 탈세제보포상금 제도가 「조세범처벌절차법」(§16)과 「국세기본법」(§84의2)에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 포상금 기준금액·지급시기 등이 달라 각종 민원 및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10)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요건 개선(기본령 §66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요건 * 국세청장이 명단 공개 가능(법 §85의5①) ○ 명단공개일 기준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국세 추징 또는 추징세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 -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未작성·보관 - 최근 3년 이내 거짓영수증 5회 이상 발급 또는 발급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	☐ 요건 개선 ○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2년 이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 *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주식 5% 초과보유 등 - (좌 동) - (좌 동)

(2) 개정이유

- 명단 공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대상 선정 기준일을 조정
 * 전산추출·확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소명기간(6월) 등
- 현행 공개요건인 ‘국세 추징’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세법 적용 오류 등으로 기부금 수령·지출과 관계없이 국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부금 수령과 관련성이 큰 상증법상 추징으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개정된 주요내용】

I.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1.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근거 마련
2. 위탁 방법
3. 위탁 대상 체납액 범위
4. 위탁 수수료

II. 기타사항

1. 시·군·구 위탁징수 규정 삭제
2. 고지 유예 및 징수 유예 신청에 대한 통지 기간·기각 통지 신설
3.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권한 신설
4. 체납처분 유예 제도 개선
5. 결손처분 규정 삭제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률 : 제11125호(2011.12.31.)
- 대통령령 : 제23593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63호(2012.2.28.)

I.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1.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근거 마련(국징법 §2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 (위탁대상 업무) 체납자의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촉구(우편, 전화, 방문 등) ○ (수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탁 방법·위탁 대상 체납액·위탁 수수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2) 개정이유

-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도피 등을 통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
- 업무량이 많고 고질적인 체납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업무를 효율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

2. 위탁 방법(국정령 §27, §27의4, §27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위탁 절차 ○ 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의 내용 등 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위탁의뢰서」 송부 ○ 국세청은 징수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 통지할 의무 ☐ 위탁 해지 ○ 납부, 부과 취소 등으로 해당 체납액의 납부 의무가 소멸되거나 담보 제공 등으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할 경우 위탁 해지 ☐ 관리·감독 ○ 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기타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2) 개정이유

- 법률 개정에 따라 체납국세액 징수업무의 위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

3. 위탁 대상 체납액 범위(국징령 §2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위탁대상 체납액 범위 ○ ① 또는 ② 체납액으로 함 ① 체납자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2) 개정이유

- 체납액 정리의 난이도, 국세청 업무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체납액의 범위를 국세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함
 - 사업 실패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고액체납액에 대해 위탁
 - 국세청은 세무조사, 세원 발굴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체납 처분이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위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

4. 위탁 수수료(국정령 §27의3, 국징규칙 §16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위탁수수료는 위탁기간 동안 자산관리공사가 징수에 성공한 금액*에 수수료율(상한 : 25%)을 곱한 값 *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 수수료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건별 징수금액</th><th>수수료율</th></tr> </thead> <tbody> <tr> <td>1백만원 이하</td><td>징수금액의 100분의 10</td></tr> <tr> <td>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td><td>10만원+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td></tr> <tr> <td>1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td><td>82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td></tr> <tr> <td>1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td>532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td></tr> <tr> <td>5억원 초과</td><td>1,332만원</td></tr> </tbody> </table>	건별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82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건별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82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2) 개정이유

- (상한선) 위탁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위탁 수수료의 상한선을 설정
 - 미국과 자산관리공사의 위탁 사례를 참고하여 25%를 상한선으로 규정
- (수수료율) 현행 세율 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징수금액 구간별 수수료율을 설정하고, 누진으로 적용
 - 다만, 세금 납부와는 달리 수수료 지급은 세출이므로 징수금액이 증가할수록 수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징수금액 대비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설정

<현행 위탁 사례>

- ① 미국(국세, '06~'09) : 고용창출법상 위탁 징수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결정
 - 실제로 국세청은 징수금액이 \$1,500 미만인 경우 24%, \$10,000 초과하는 경우 21%의 수수료를 적용
- ② 자산관리공사→신용정보회사(민사채권) : 위탁 회수금액의 기본 22%의 수수료율을 적용(회수 실적에 따라 16~28%의 수수료율을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

Ⅱ. 기타사항

1. 시·군·구 위탁징수 규정 삭제(국징법 §8, 국징령 §11~§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관할지역의 국세징수 위탁가능 ☐ 징수비용으로 교부금 지급	<삭 제>

(2) 개정이유

- 과거 교통시설 등이 낙후되었을 때 징수사무 편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동 제도가 70년대 이후로 사문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적용

2. 고지 유예 및 징수 유예 신청에 대한 통지 기간·기각 통지 신설 (국징법 §15④,⑤·§17④,⑤, 국징령 §2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은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직권)할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납세자는 납기 3일전*까지 고지 및 징수유예 신청 가능 *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기 만료일 <신 설>	☐ (좌 동) ☐ (좌 동)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신청한 고지 유예 또는 징수유예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 * 승인할 경우 징수유예 직권 결정시 통지하는 사항을 준용하여 통지하고, 기각할 경우 그 사유를 통지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 할 뿐 아니라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 특히, 납부기한 등 만료일의 10일 전까지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로 통지기한 설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고지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3.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 권한 신설(국징법 §24, 국징령 §2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압류, 공매, 청산 등 체납처분은 세무서장이 행함 <신 설>	☐ (좌 동) ☐ 지방국세청장에게 고액채납자 관리 등을 위해 체납처분 집행 권한 부여 ○ 체납발생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채납자가 대상 * 국세청이 고액채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청 단위로 신설한 「체납처분 특별 전담반」의 대상자

(2) 개정이유

-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액채납자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
 - 현재는 지방청이 채납자의 재산 등을 발견하더라도 법적 권한 미비로
세무서가 다시 체납처분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적용

4. 체납처분 유예 제도 개선(국징법 §85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체납처분 유예 요건 ○ ①과 ②를 모두 충족 - ①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 - ②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체납처분 유예 요건 완화 ○ ①과 ② 중 하나 충족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적용

5. 결손처분 규정 삭제(국징법 §86, 국징령 §8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결손처분 가능 i)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ii) 체납처분 중지 iii)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iv)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 등 ☐ 결손처분 취소 ○ i), ii), iv)로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 속행	<삭 제>

(2)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97.1.1일부터 결손처분의 납부의무 소멸 효과가 사라지고,
 - * 납부의무 소멸사유(§26) : 납부·충당되거나 부과 취소 또는 결손처분된 때
 →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게 되어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적용



교 육 세

[교 육 세]

【개정 한 주요내용】

1.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산정시 파생상품 등의 손익통산
범위 개선

【법·시행령 개정일자】

- 법 료 : 제11122호(2011.12.31.)
- 대통령령 : 제23022호(2011.7.14.)

1.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산정시 파생상품 등의 손익통산범위 개선 (영§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계산시 파생상품거래손익 등 통산범위 ○ 외환매매익* * 현물환, 선물환, 스왑금융 등 외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이익에서 총손실 차감('91.5.24, 재무부 예규) ○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이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 파생상품거래손익 등 통산범위 확대 ○ 다음의 금액을 통산한 금액 ① 외환매매익 * 외환의 범위에서 외화파생상품·외화파생결합증권 제외 ②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 위험회피 목적의 금융투자상품 통산규정은 삭제

(2) 개정이유

- 금융보험업자의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손익과 외환 매매익의 손익은 서로 통산이 가능함을 명확화
- 위험회피 목적의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규정 삭제
 - 파생상품 등의 거래목적은 위험회피 또는 투기(매매) 목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실무상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 고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 한 주요내용】

1. 조세범 처벌 관련 정의 규정
2.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법제화
4.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
5.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
7.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8. 기타 개정사항

【법·시행령 개정일자】

- 법 료 : 2011.12.31. 전면개정(2012.7.1. 시행)
- 대통령령 : 2012.2.2. 전면개정(2012.7.1. 시행)

1. 조세범 처벌 관련 정의 규정(처벌절차법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범 처벌 관련 정의 규정 ○ (조세범칙행위)「조세범처벌법」 (§3 ~ §14)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조세범칙사건)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 ○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세무조사

(2) 개정이유

- 조세범 처벌 관련 정의가 없어 발생하는 법 해석·적용상의 문제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적용

2.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처벌절차법 §3, 영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거의 관할 및 인계 (§6) ○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증거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 ○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은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동일한 범칙사건에 관한 증거가 여러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 각 발견장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최초의 발견장소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에게 인계 □ 범칙사건 조사의 지역관할 (§7) ○ 세무공무원의 심문, 압수, 수색 등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에서만 함 - 다만, 이미 착수한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외에서 심문, 압수, 수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조세범칙사건의 관할 ○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함 ○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음 -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 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 조세범칙사건의 관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종 전	개 정
○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2) 개정이유

- 현행 조세범칙조사 실무와 맞도록 관할 규정 수정 및 조문 단순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적용

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법제화(처벌절차법 §5, 영 §3~5, 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기능 ○ 조세범칙조사 집행 관련 중요사항 심의 - ㉠ 「조세범처벌법」 §3(조세포탈 등)*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 일반 조세범칙행위와 달리 조세포탈은 그 해당여부(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유무) 판단 및 포탈세액 산정 등이 복잡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 ㉠에 관한 조세범칙사건으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의 결정 * 면세유 부정유통(§4), 주류 불법 제조·유통(§6) 등의 조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처분을 함 - ㉢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 ㉣ 「조세범처벌법」 §18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지방국세청장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리

종 전	개 정
	○ 위원 : ① 위원장, ②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내부위원), ③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민간위원)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위원 제척·회피 -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배제* * 위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기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 규정은 두지 않음 □ (위원회 운영) ○ 매 회의는 위원장,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조세포탈 이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둠 · 조사 기간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 양벌규정(「조세범 처벌법」 §18)의 적용 ○ 회의는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에 지정된 위원에게 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종 전	개 정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 가능 ○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가능 ○ 조세범칙처분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은 조세범칙처분 대상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 가능

(2) 개정이유

-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법치주의 실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적용

4.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처벌절차법 §7, 영 §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 ○ (선정기준) 아래의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 연간 포탈 혐의금액 등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① 조세포탈 혐의비율(조세포탈 혐의금액/신고수입금액) 또는 혐의금액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연간 신고수입금액</th><th>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또는 혐의금액</th></tr> </thead> <tbody> <tr> <td>100억원 이상</td><td>15%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td></tr> <tr> <td>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td><td>20%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td></tr> <tr> <td>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td><td>2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td></tr> <tr> <td>20억원 미만</td><td>5억원 이상</td></tr> </tbody> </table> ※ 다음의 경우로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포함 · 「국세기본법」 §2 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29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5 또는 「소득세법」 §168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세포탈 예상세액 기준 : 연간 5억원 이상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또는 혐의금액	100억원 이상	15%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20%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또는 혐의금액										
100억원 이상	15%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20%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종 전	개 정
	☐ 신고수입금액 등의 정의 ○ 신고수입금액 :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45의3)한 수입금액 ○ 조세포탈 혐의금액 : 「조세범 처벌법」 §3⑥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금액 ○ 조세포탈 예상세액 :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 (가산세는 제외) ☐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절차 ○ 조세포탈범(조세범처벌법 §3) 관련 조세범칙사건의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 다만,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 범칙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2) 개정이유

-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법치주의 실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적용

5.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처벌절차법 §15, 영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처벌절차법 §9①) 국세청장 등은 범칙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함	☐ 통고처분 양정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을 시행령(별표1)에 입법화하되, ○ 벌금상당액 감면은 「국세기본법」(§48②)상 가산세 감면(50, 20, 10%)과 동일하게 조정 <table><tr><th>수정신고</th><th>기한후 신고</th><th>감면률</th></tr><tr><td>6개월 이내</td><td>1개월 이내</td><td>50%</td></tr><tr><td>6개월~1년</td><td>1~6개월</td><td>20%</td></tr><tr><td>1~2년</td><td>-</td><td>10%</td></tr></table> ☐ 통고처분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별로 통고서를 작성·통고함 * 조세범칙 행위자, 「조세범처벌법」 §18(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 ☐ 통고서 등 문서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감면률	6개월 이내	1개월 이내	50%	6개월~1년	1~6개월	20%	1~2년	-	10%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감면률											
6개월 이내	1개월 이내	50%											
6개월~1년	1~6개월	20%											
1~2년	-	10%											

(2) 개정이유

-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법치주의 실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적용

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중전 법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 이원적으로 규정 ○ 「조세범처벌 절차법」(§16)상 포상금 －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 포탈세액의 5 ~ 15% (1억원 한도, 시행령§8 및 훈령) ○ 「국세기본법」(§84의2)상 포상금 －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단,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포상금 수령자 제외) ※ 탈루세액의 2 ~ 5% (1억원 한도, 시행령§65의4) □ 「조세범처벌절차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영 §8①) ○ 조세포탈 및 부정환급·공제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일원화 ○ 「조세범처벌 절차법」상 포상금 규정(§16) 삭제 ○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규정 (§84의2) 단서 삭제 － 조세탈루에는 조세포탈(‘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탈루)이 포함되므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국세기본법」으로 포상금 규정 일원화 □ 현재 시행 중인 포상금만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체납처분면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관련 명령사항 위반, 명의대여 ○ 개별 세법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 장부소각 파기 등	○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삭 제*> * 「국세기본법」상 포상금과 내용 중복 <삭 제*> * 실무상 운영하지 않거나, 발생빈도·포상금액 등으로 보아 실효성이 적음

(2) 개정이유

- 조문 단순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적용

7.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 §7,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압수·수색시 참여자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② 조세범칙행위 관련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③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20의 2①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①의 대리인 ④ ①, ②의 동거인 또는 사용인,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인(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 ⑤ 관할 시·군·구의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①~④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

(2) 개정이유

- 압수·수색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적용

8. 기타 개정사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할 때에는 그 소속관서의 관할구역에서만 할 수 있음	☐ 영치* 규정 삭제 * 압수의 일종이지만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 영장 없이 압수하는 점에서 보통의 압수와는 구별됨
☐ '10.1.1. 「조세범처벌법」 개정 시 과료 규정 삭제	☐ 과료 규정 삭제
☐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기한 : 압수·수색을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	☐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적용



관 세

[관 세]

【개정 한 주요내용】

1. 독과점 품목, 서민밀집 품목 등에 대해 기본관세율 인하
2. 관세평가시 납세의무자 의견제출기회 부여
3. 과세가격 사전심사 관련 가산세 면제
4.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개선
5.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6.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
7. 관세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 신설
8. 관세청장에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
9. 과세전통지에 대한 조기경정 신청 허용
10. 관세 부과제척기간 보완
11. 관세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신설
12. 관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 인하
13. 등록 취소 등 불이익처분시 청문 확대
14. 수출입신고필증 미보관시 벌칙 완화
15. 잠정가격 신고시 가산금 면제
16.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정비
17.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18. 국제대회 관련 수입물품 관세경감 신설
19.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조직위에 출품물 무상양도시
관세 면제
20.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허용
21.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정비
22. 해외 입출국시 국제공항 환승 절차 간소화

23. 관세 신고납부세액 과부족시 보정제도 개선
24. 감면규정 오적용 등으로 과소신고시 이자상당 가산세 부과
25.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여
26. 미국산 원산지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27.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자 긴급관세조치
28. 미국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29. 관세법 제68조의 특별긴급관세 부과특례
30. 원산지 등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
31.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화물 특별 통관
32. 원산지증명제도 보완
3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34. 원산지증명서 서식
35. 원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범위 확대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 료 : 제11121호(2011.12.31.)
- 대통령령 : 제23602호(2012.2.2.)
- 기획재정부령 : 제273호(2012.2.28.)

1. 독과점 품목, 서민밀집 품목 등에 대해 기본관세율 인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1) 개정내용

품 명	종 전	개 정
□ 독과점 품목 (23개)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5%	3%
○ 타이어, 면류(라면, 스파게티 등)	8%	5%
○ 식물성 유지(대두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겨자유 등)	5.4, 8, 10, 30%	5%
○ 설탕	35%	30%
□ 서민밀집 품목 (7개)		
○ 밀가루	4.2%	3%
○ 세제원료	5%	3%
○ 유모차, 두발용품, 세제, 스낵과자	8%	5%
○ 유아용 의류	13%	8%
□ 장기할당관세 적용 품목 등 (7개)		
○ 면실(목화씨)(사료용)	3%	2%
○ 양조박(사료용), 면양 원피, 산양 원피	5%	3%
○ 향료,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등	8%	5%

(2) 개정이유

- 독과점 산업의 국내외 경쟁촉진 및 서민생활 물가안정 지원
(총 37개 품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2. 관세평가시 납세의무자 의견제출기회 부여(관세법 §3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의무자의 소명기회 없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	□ 특수관계 영향 등으로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세관장은 그 판단근거를 사전에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

(2) 개정이유

- 과세가격 결정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가격 사전심사 관련 가산세 면제(관세영 §3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입신고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제도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시 그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 가산세 면제 요건 - 증명자료의 보관·비치 - 거래의 조작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2) 개정이유

- 심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종전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으로 납세자들이 신청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3)에 의한 정상가격 사전승인시에도 가산세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3.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개선(관세영 §2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 · 일반경비의 비율 ○ 업종별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관세청장이 정한 비율(기준비율) 적용 * 관세평가 제4방법 과세가격(적정 수입가격) =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판매가격 - 이윤 · 일반경비 등	○ 기준비율 제도 폐지 ○ 동종 · 동류물품 수입업체들의 이윤 · 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 ○ 해당 물품의 이윤 · 일반경비 비율이 동종 · 동류물품 비율의 110% 이내이면 해당 물품의 비율 인정

(2) 개정이유

- 수입업체에 적합한 이윤 · 일반경비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 가격의 정확성 및 납세자편의 제고 (WTO 평가협정 반영)
- ※ 현행 기준비율은 동종 · 동류의 수입물품이 아닌 해당 업종 전체(내수업체도 포함)의 매출총이익률 자료를 기초로 산출하는 등 불합리하여 납세자의 이익 제기가 빈번한 상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 이전 수입신고된 분의 경우에도 세액심사 단계에서 개정규정 적용으로 과세 가격이 감소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

5.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의 과세가격 상호조정 근거 마련 (관세법 §38의4, 국조법§1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관세청 또는 국세청이 특수관계자 간 물품수입에 대해 과세가격 변경처분을 하고, 이를 이유로 납세자가 상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그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변경된 가격이 각각 관세법 또는 내국세법 상으로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 또는 국세의 과세가격을 조정 (요건) 거래형태, 물품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입물품 가격조정 방법 및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 관세청과 국세청은 과세가격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 WCO-OECD 간 합동회의('06, '07년)에서도 국세-관세 간 단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양 과세관청간 협조를 강조

(2) 개정이유

-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함으로써 수입 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관세 또는 국세를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관세경정청구 절차(관세영 §35)

증 전	개 정
<신 설>	☐ 국세청의 국세거래가격 조정에 따라 납세자가 관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서류 규정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 물품의 수입신고내역 - 국세청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내역 및 계산근거 자료 등 ☐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사항 중에서 관세법상 인정하여 경정가능한 기준 마련 ○ 국세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조정방법 및 계산근거가 관세법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정이유

- 법에서 위임한 경정청구 절차 및 경정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국세를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금번 법령 개정시 내국세 이전가격조사 결과로 아래의 예시와 같은 경우 관세환급 가능

① 내국세에서 로열티의 금액이 과다하다고 결정하여 로열티를 하향 조정

⇒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관세의 가산요소인 로열티의 금액이 조정되는 바, 로열티 조정 내역 중 관세법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관세 환급

② 내국세에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수입물품가격을 하향 조정

⇒ 비교대상업체가 관세법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관세 환급

③ 내국세에서 수출자(생산자)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가격을 하향 조정

⇒ 내국세에서 조정한 가격이 관세법상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 환급

3) 관세·국세 간 과세가격 조정심의 신청

(관세법 §38의4④, 국조법 §10의3, 국조령 §17의3)

종 전	개 정
<신 설>	☐ 세관장의 경정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납세자는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세와 국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 ※ 국조령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개최 -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및 민간위원 구성 - 과세당국에 거래가격 조정을 권고

(2) 개정이유

- 국세와 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7.1. 이후 시행

4) 국제거래 관련 과세관청 간 상호 정보교환
(관세법 §37의2, 국조법 §11의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세·관세의 부과·징수, 국세와 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국세청·관세청 간 정보를 상호 제공

(2) 개정이유

- 과세정보 교환을 통해 국세 및 관세부과 징수의 원활화와 과세가격조정의 정확성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시행

5) 과세 당국간 정보교환 대상 범위 규정(관세영 §3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관세청이 국세청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제거래 관련 과세표준·세액 결정·경정 자료 (국제거래명세서 등) ○ 기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에 필요한 자료

(2) 개정이유

- 법에서 위임한 과세관청간 정보교환 대상범위를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일 이후 시행 (법 부칙)

6.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관세법 §1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 관세포탈 등 범칙조사하는 경우 ○ 관세부과 처분을 위해 납세자를 방문조사 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압류, 보세판매장 조사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확대 ○ (좌 동) ○ 관세부과 처분을 위해 납세자를 ‘서면조사 하는 경우’를 추가 ○ (좌 동)

(2) 개정이유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을 방문조사를 대신하여 서면조사하는 경우까지 확대, 납세자 권익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 신설 (관세영 §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에 관련규정 旣 신설('09.2)	☐ 관세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 ○ (1차질의) 관세법령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경우 관세청에 우선 질의 ○ (2차질의) 민원인이 관세청 회신에 불복하거나 관세청이 관세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에 질의

(2) 개정이유

- 관세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및 관세법령의 합리적 운용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3.1.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청장에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관세영 §14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원칙) 세관장에게 청구 ○ (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시 관세청장에 청구 가능 - 관세청장의 새로운 해석 필요시 - 관세청장 지시, 관세평가분류원 해석에 따라 추정시 - 둘 이상의 세관장에 관련된 사안인 경우 <신 설>	☐ 관세청장 청구 사유 확대 -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개정이유

- 고액 사건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개정령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전통지에 대한 조기경정 신청 허용(관세법 §1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관장이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하여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 납세의무자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 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로부터 30일내에 경정처분을 하여야 함	☐ 조기경정 신청 제도 신설 ○ (좌 동) - 납세의무자는 과세전통지받은 내용대로 ‘즉시’ 처분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바로 경정처분을 하도록 함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 *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지연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과세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0. 관세 부과제척기간 보완(관세법 §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 부과제척기간 ○ 특별제척기간 -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신 설> ○ 일반제척기간 - 원칙 : 2년 - 예외 : 5년 · 관세포탈, 부정환급 · 가격신고 누락으로 부족세액 발생	○ 특별제척기간 사유 추가 -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내 청구 ○ 일반제척기간 예외사유 명확화 · 부정감면 추가

(2) 개정이유

- 경정청구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예외적 부과제척기간 사유 명확화
- * 부과제척기간 종료에 임박하여 경정청구시 경정처분이 불가능해지는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신설(관세법 §38의3, 관세영 §3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다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내 경정청구 가능 <신 설> ※ 일반적 부과제척기간 : 2년	□ 후발적 경정청구 신설 ○ 좌 동 ○ 소송판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내 경정청구 허용 ⑦ 최초 신고 등의 근거가 된 거래 · 행위 등을 변경시키는 소송판결 ㉠ 장부 · 서류 압수 등으로 과세 표준을 결정할 수 없었으나 이후 해당사유 소멸 ※ 후발적 경정청구시 부과제척기간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내로 연장

(2) 개정이유

- 부과제척기간 종료 후에도 소송판결 등으로 과세관계에 변동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3.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2. 관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 인하(관세규칙 §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한도 ○ 납부세액의 1.5% * 실제 수수료율 : '12.1월 현재 1.2% (관세청장이 고시)	☐ 수수료율 한도 인하 ○ 납부세액의 1.0%

(2) 개정이유

-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편의 제고
 - * 내국세도 동일하게 개정 예정(국세기본법시행규칙 §12의3②)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4.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13. 등록 취소 등 불이익처분시 청문 확대(관세법 §32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문 대상 ○ 보세구역 지정·특허 취소 및 기능수행 중지 ○ 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취소 <신 설> <신 설> <신 설>	☐ 청문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보세구역 화물관리인 지정 취소 ○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등 등록취소·영업정지 ○ 특허보세구역 물품 반입정지, 보세건설·판매·전시 정지

(2) 개정이유

- 불이익처분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처분(취소·정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수출입신고필증 미보관시 벌칙 완화(관세법 §276, §27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출입 신고시 관련서류 보관 ○ 보관*대상 : 신고필증, 계약서, 가격결정 관련자료 등 * 기간 : 수입 5년, 수출·반송 3년, 기타 2년 ○ 보관의무 불이행시 벌칙 - 2천만원이하 벌금 (과실로 인한 경우는 3백만원이하 벌금)	○ (좌 동) ○ 신고필증 미보관시 벌칙 완화 - (좌 동) - 단, 신고필증 미보관의 경우는 1백만원이하 과태료

(2) 개정이유

- 신고필증은 세관이 발급하는 서류임을 감안하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완화

(3) 적용시기

- 201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15. 잠정가격 신고시 가산금 면제(관세등환급특례법 §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수출환급 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하는 경우 * 수입시점에서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원유등)에 대해 적용 ○ (잠정가격<확정가격)수출시 과소환급한 금액 환급시 환급가산금 미지급 ○ (잠정가격>확정가격)수출시 과다환급한 금액 징수시 가산금 부과	<관세등환급특례법> 관세법에 따라 수입시 부과한 관세등을 수출시 환급하는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 (좌 동) ○ 가산금 면제

(2) 개정이유

- 잠정가격 신고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금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16.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정비(관세규칙 §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관세감면 ○ 감면율 : 대기업 10% 중소기업 30% ○ 적용기한 : '11.12.31	☐ 폐지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율 : 대기업은 폐지 중소기업은 현행 유지 ○ 적용기한 : '13.12.31(2년 연장)

(2) 개정이유

- 공장자동화시설은 세제지원이 없어도 설치하는 범용화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은 폐지
 - 다만,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은 현행 유지
 - * '07년 세제개편시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既발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17.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관세규칙§46, 조특법§118 · §121의10 · §121의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감면 물품 (적용기한: '11.12.31) ○ 환경오염방지물품 : 감면율 30%(관세규칙) ○ 고속철도건설용품 : 감면율 30%(조특법)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 감면율 50%(조특법)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 : 감면율 100%(조특법)	☐ 적용기한 연장] 2년 연장 ('13.12.31까지)] 1년 연장* ('12.12.31까지)

(2)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및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12년말)과 일치시킴

18. 국제대회 관련 수입물품 관세경감 신설(조특법 §1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제대회 관련 수입물품 관세 50% 경감 ○ 대상 국제대회 -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 대상 물품 -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 개정이유

- 국제대회의 원활한 개최·운영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19.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조직위에 출품물 무상양도시 관세 면제(관세규칙 §4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참가자가 출품물을 조직위원회 등에 무상 양도하는 경우 관세면제

(2) 개정이유

-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운영 지원 및 국제협력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20.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허용(관세영 §1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감면 신청 ○ 수입신고 수리 이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단서 신설>	☐ 감면신청 보완 허용 - 단, 신고수리일부터 15일내 감면신청서 제출시 감면 허용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개정이유

- 착오 등으로 감면신청 누락시 사후보완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개정령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21.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정비(관세법 §10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법 이외 다른 법령에 따른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 기간 : 5년 ○ 사후관리 -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용도 사용자에게 양도시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사전에 세관장 확인 받으면 미부과) * 무단 양도하더라도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양도하면 벌칙 없음	☐ 사후관리 정비 ○ 기간 : 3년 ○ 사후관리 - (좌 동) - 무단으로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양도시 2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사전에 세관장 확인 받으면 미부과)

(2) 개정이유

- 관세감면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되, 무단 양도 벌칙 강화
 - * 현재 관세법상 감면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이고, 감면 물품을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무단양도하면 2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22. 해외 입출국시 국제공항 환승 절차 간소화(관세법 §1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한 규정 신설 ○ 환승전용내항기 의의 - 외국 여행자와 이들의 휴대품 등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내항기 ○ 환승전용내항기 감독 - 환승전용내항기에 대해서는 외국무역기 감시·감독 규정을 준용* (단, 면세 규정은 비적용) * 입항보고, 출항신고, 수입물품의 적재·하역, 세관의 감시·감독 등 - 기타 환승전용내항기의 효율적 통관·감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개정이유

- 해외여행자가 비행기를 통해 인천공항 ↔ 지방을 이동하는 경우 환승 절차를 간소화하여 여행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3.1부터 시행

23. 관세 신고납부세액 과부족시 보정제도 개선(관세법 §3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 신고납부세액 부족으로 6월내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 부족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함 ☐ 가산세 및 향후 세액심사 면제* * 보정 後 부족세액이 추가로 발견 되더라도 추징 불가능	☐ (좌 동) ☐ 보정 후에도 세액심사 가능 (가산세 면제는 유지)

(2) 개정이유

- 보정 후에도 세액심사를 통해 부족세액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 이후 보정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4. 감면규정 오적용 등으로 과소신고시 이자상당 가산세 부과
(관세법 §42, 관세영§39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 ○ (원칙) 부족세액의 10% 및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을 가산세로 부과 ○ (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시 가산세 전액 면제 - 국가·지자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	○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한 경우는 부족세액의 10%는 면제하되 이자상당액은 부과

(2) 개정이유

- 성실신고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3.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여(관세영 §23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미비 * 원산지사전확인제도 : 수입자가 수입물품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 사전에 확인 신청	☐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조사결과 통지일부터 30일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서 접수 후 30일내에 심의결과 통보

(2) 개정이유

-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
- * FTA관세특례법령의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바(영§18), 관세법에서도 이를 도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개정령 시행 후 이의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26. 미국산 원산지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FTA관세특례령 §3⑨,별표6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한·미 FTA협정세율 * 총 12,232개 품목 중 쌀 관련제품(16개)을 제외한 12,216개 품목 양허

(2) 개정이유

- 한·미 FTA(제2.3조) 및 동 부속서(2-나)에서 정하는 관세철폐 계획에 따라 미국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각 품목별·연도별 협정세율을 정함
 - * 한·미 FTA 양허현황: 즉시철폐 9,061개, 5년 이내 1,274개, 10년 이내 1,704개, 기타 193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3.15.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27.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자 긴급관세조치 (FTA관세특례령 §8의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한·미 FTA 제10.1조~10.4조 반영	☐ 미국산 물품 수입 급증시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긴급관세조치 가능 ○ 연차적인 관세인하적용 중지 또는 최혜국 실행세율까지 세율인상 ○ 이행기간(협정발효후 10년+a) 동안 조치 가능 ○ 최장 3년 부과 가능 (2년+1년) ○ 잠정긴급관세조치기간 (200일) ○ 동일물품 재발동금지 ○ 조사 시작일부터 45일 경과전까지 잠정 긴급관세조치 제한

(2) 개정이유

- 미국산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절차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3.15. 이후 최초 긴급관세 조치 분부터 적용

28. 미국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FTA관세특례령 §8의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한·미 FTA 3.3조 및 부속서 3-가	☐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물품*·기준물량 및 세율을 규정 <별표7의3>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등 30개 농산물(HSK 기준 81개) ☐ 특별긴급관세 세율은 현행 최혜국세율 또는 협정 발효일 직전 일의 최혜국 세율 중 낮은 것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후 60일 이내 미국측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대국 서면 요청시 상호협의를 의무 ☐ 양자간 긴급관세조치 또는 관세범상 긴급관세(관세법 §65) 등과 동시 적용 금지

(2) 개정이유

- 농림축산물관련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대한 한-미 FTA 협정
내용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한-미 FTA 발효후 최초 특별긴급관세 부과 분부터 적용

29. 관세법 제68조의 특별긴급관세 부과특례 (FTA관세특례법 §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한·미 FTA 제3.3조 제8항 반영	☐ 관세법 제68조의 특별긴급관세 부과특례 대상 국가 ○ 미국

(2) 개정이유

- 미국산 물품은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한-미 FTA 발효후 최초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30. 원산지 등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 (FTA관세특례령 §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전심사 대상 ○ 당해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 ○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 ○ 부가가치의 산정	☐ (좌 동)
<신 설> ※ 한·미 FTA 제7.10조 제1항 반영	○ 관세의 감면·환급 ○ 원산지의 표시 ○ 쿼타대상물품 및 그 세율
<신 설> ※ 한·미 FTA 제7.10조 제6항 반영	☐ 사전심사내용의 공개 ○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관세청 정보통신망에 게시 ○ 단, 비밀취급정보는 제외가능

(2) 개정이유

- 한-미 FTA 제7.10조에 따라 사전심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전심사내용의 주요 결과를 공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협정발효 후 최초 사전심사 신청분부터 적용

31.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화물 특별 통관 (FTA관세특례령 §2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한·미 FTA 제7.7조	☐ 미국에서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면세기준 상향 (100 → 200 US\$) ○ 물품가격이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수입신고 생략 가능

(2) 개정이유

- 한·미 FTA 제7.7조에 따른 특송화물 면세기준 상향 특례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한-미 FTA 발효후 최초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32. 원산지증명제도 보완 (FTA관세특례령 §2②, 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산지자율증명대상자 ○ 수출자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원칙 : 1년 ○ 한·아세안(6개월), 한·칠레(2년)	☐ 원산지자율증명대상자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한·미 FTA : 4년

(2) 개정이유

- 한·미 FTA 협정문(제6.15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자율증명대상자 및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반영

(3) 적용시기

- 한·미 FTA 발효 후 수출입되는 분부터 적용

33.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관세특례규칙 §4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한-미 FTA 협정 제6.15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자율증명방식

(2) 개정이유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관한 한-미 FTA 협정내용 반영

(3) 적용시기

- 한-미 FTA 발효후 최초 수출입신고分から 적용

34. 원산지증명서 서식(FTA관세특례규칙 §9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한-미 FTA 협정 제6.15조	□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다음 서식 선택 사용) ○ 별지 제6호의9서식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증명서 작성자 - 수출자/생산자/수입자 - 품목번호 · 품명 · 수량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작성일자

(2) 개정이유

- 한 · 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사항을 수용
 - 수출입업체들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서식 샘플 병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한-미 FTA 발효후 최초 수출입신고 분부터 적용

35. 원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범위 확대 (FTA관세특례규칙 §6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 ○ 원산지 원재료에 한하여 확인서 작성 가능	○ 비원산지 원재료에 대하여도 제조사실 확인서로 작성 가능

(2) 개정이유

- 원산지 결정시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료 등에 대하여도 국내 부가가치 증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적용

2011간추린 改正稅法

印 刷 2012年 7月 日

發 行 2012年 7月 日

發 行 處 企劃財政部 稅制室 租稅政策課

印 刷 處 신진기획(503-6688, 6691)

* 본 冊子를 複寫出版하고자 하거나 본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企劃財政部 稅制室 租稅政策課(2150-4116)에 事前問議 바랍니다.

* 본 冊子是 改正된 稅法內容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중 改正法令과 상이한 내용이 包含되는 경우에 法令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